

研究報告 128
1986. 12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李 弘 烈 (責任研究員)

梁 正 默 (臨時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研究報告 128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要 約

1. 研究의 體系

이 研究는 現 地方行政의 行政組織을 強化하는 方案을 모색하고자, 地方行政의 理念・主體・手段이라는 세 가지 變數의 關係性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음.

改善方案은 일차적으로 地方行政 手段面의 現實的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地方行政 主體 및 地方行政理念의 전환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研究에서 地方行政의 범위는 農村地域 定住生活圏과 가장 근접한 基礎自治團體인 郡 行政으로 한정하였음.

2. 地方政府 行政組織의 強化方案

① 地方行政事務의 再配分

현재 郡의 事務配分 現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固有事務가 전체의 37.7 %, 團體委任事務는 15.9 %, 그리고 機關委任事務는 46.4 %로 나타났다.

郡 單位 事務의 再配分 方案은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하였음. 먼저 郡 單

II

位 地方公務員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固有事務가 46.6 %, 團體委任事務는 3.3 %, 그리고 機關委任事務는 50.1 %로 나타남. 다음으로 地方公務員들의 의견과 地方自治法 改正案 제 8 조 내지 제 11 조(地方自治 團體의 機能과 事務)의 취지에 입각하여 再配分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즉, 固有事務는 65.4 %, 團體委任事務는 0.8 %, 그리고 機關委任事務는 33.8 %임.

② 地方政府的 機構 改編

地方行政의 事務再配分 結果에 입각해 볼 때, 새로운 行政機能의 증가에 따라, 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計劃樹立機能을 강화한 企劃體制와 地方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合理的 執行體制로의 조화된 改編方案을 모색함.

먼저 企劃體制의 개편에 있어서는 첫째 綜合企劃室의 설치 방안임. 이의 특징은 企劃專擔機構로서 企劃室을 신설하고 企劃室에 企劃係, 豫算係, 評價係 및 統計係를 編制하며 室長은 地方事務官으로 임용하는 것 등임. 이의 장점으로서는 郡의 全般的 機能에 대해 企劃, 豫算, 評價 및 統計 등의 업무가 연계됨으로써 합리적인 計劃樹立 및 효율적인 行政遂行이 가능해진다는 점임.

둘째는 副郡守室 活用方案임. 이의 특징은 企劃室을 신설하되 副郡守의 직속으로 운영한다는 점과 企劃室안에 係編制를 첫째방안과 같이 구성한다는 점 등임. 이의 장점으로서는 副郡守의 系線的 地位에 힘입어 行政의 추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임. 다만 年老한 副郡守들이 상당수에 있어 이들의 경우, 의욕을 가지고 부가되는 업무에 임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됨.

세째는 企劃系와 豫算系의 분리방안임. 이의 특징은 郡行政의 전반적 기획·조정기능을 內務課안의 한 係(企劃豫算係에서 분리한 企劃係)에 부여한다는 것임. 이의 長點으로서는 企劃係의 분리강화로 기존 체제에 큰 변화없이 개편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반해 短點으로서는 郡의 전반적 長期計劃의 수립, 조정 및 추진에 있어 1개 係單位 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執行機構改編의 기본적 관점은 과거의 統制中心 내지 管理中心의 機構에서 住民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事業中心 내지 實質的 機能中心의 機構로의 전환에 둠. 이는 원칙적으로 地域의 실정에 따라 郡에서 自律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확대가 중점이 됨. 먼저 內務課는 지원중심의 체제로 축소조정함. 그리고 현재의 새마을課는 다른 課와 중복되는 기능을 관련 課로 분리 통합 이양함. 社會課는 地域住民의 복리증진을 위한 行政需要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醫療・保健機能을 담당할 課를 신설하여 확대 개편함. 그리고 商工, 流通機能과 土木・建設機能의 확대 강화도 요청됨에 따라 담당체제를 개편함.

③ 地方行政의 人力強化

基礎自治團體인 郡을 중심으로 한 人力強化方案은, 첫째 郡行政의 주도자로서의 郡守의 지위안정화방안과, 둘째 專門企劃人力의 강화방안 및 셋째로 郡의 각 부서별 執行人力의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먼저 郡守의 地位安定化方案으로서, 첫째 郡守의 選任方法에 관한 개선으로 현재의 임명제에서 選舉制로의 轉換方案을 제시함. 選舉制의 시행 전에는 郡守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이며 일관성있는 郡行政의 추진을 위해 任期保障의 방안을 제시함.

專門企劃人力의 강화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計劃樹立과 執行 및 計量的分析에 관한 기본적 전문지식과 郡事務에 관한 실무지식이 많은 사람이 企劃業務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함. 이를 위하여는 학력과 경력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방안과 함께 적극적이고 차원 높은 企劃能力의 향상을 위해 處遇改善, 昇進에 대한 배려 등의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教育強化方案을 강조함. 특히 地方大學의 地域開發學科 출신자들에 대한 채용기회의 확대와 함께 이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함.

部署別 人力調整方案으로는 담당업무량에 따른 人力配分の 적정화의 관점에서 郡의 1人當 業務量現況을 분석하여 합리적 人力配分方案을 제시함.

Ⅳ

④ 地方行政主體의 轉換

地方政府의 自治立法權의 강화방안과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의 강화방안을 제시함. 自治立法權의 강화방안으로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의 制定 및 改廢節次를 분석하고 이의 조정방안을 제시함.

自治組織權의 강화방안으로는 郡의 組織機構, 定員規定 및 任用節次 등을 분석,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⑤ 地方行政理念의 轉換

地方行政의 다원화된 行政需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地方行政理念은 民主性을 대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상황에서는 效果性 내지 合法性 理念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地方行政의 自治에 관한 형태면에서도 과거의 團體自治의 原理보다는 住民自治를 原則으로 하고 여기에 團體自治의 長點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와 같은 轉換은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일관성 있게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임.

머 리 말

이 연구는 본 研究院이 1982년 이후 계속 연구하여 온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農漁村地域綜合開發의 실질적 推進體인 地方政府行政組織이 지역 실정에 맞게 自律的이며 合理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行政改革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地方政府의 實質的 機能回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여, 아직도 行政의 逆機能이 반복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이 연구는 國家 전체적인 관심 내지 國家發展目標의 達成뿐 아니라, 地域開發 내지 住民福祉의 목표를 조화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巨視的이고 綜合的인 시각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즉, 과거와 같은 指示와 統制 위주의 行政體制에서, 앞으로는 住民의 實質的 需要와 國家 전체적 目標을 조화시킬 수 있는 自律的 行政體制로 나아갈 수 있는 根本的 改善方案을 모색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地方政府(郡單位)에서 수행되고 있는 實質的 機能들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再配分하는 방안과 그 再配分된 機能에 의거한 地方行政推進體制의 設計方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는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行政研究領域에서도 주변적 위치로 소외되고 있는 분야로서, 後續的 研究로 많은 補完이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가, 地方行政의 發展을 위한 實質的 研究가 不足한 상태에서, 우리 나라 農漁村地域의 行政推進을 위한 研究 및 政策資料로서 쌀알만한 기여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하여, 실무적 資料調査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康津郡·靑松郡·公州郡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研究擔當者들의 견해이며, 본연구원의 公式意見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아울러 밝혀 둔다.

1986.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第1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對象 및 方法	2
3. 研究体系의 設定	3

第2章 地方政府의 行政組織體制와 問題點

1. 地方行政의 理念과 主体	11
2. 地方行政의 手段	21
3. 問題點의 綜合的 檢討	47

第3章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強化를 위한 體制의 改編

1. 地方行政手段의 轉換	51
2. 地方行政主体 및 理念의 轉換	76

第4章 結 論

1. 研究의 要約	80
2. 研究의 限界點	82

附錄：地方政府의 事務配分 實態 및 再配分 分析表	85
----------------------------------	----

表 目 次

第 2 章

表 2- 1	郡單位 企劃部署의 分掌業務	25
表 2- 2	郡單位 企劃部署의 業務處理 現況	26
表 2- 3	3 個郡 (青松郡, 康津郡, 公州郡) 의 機構比較	28
表 2- 4	3 個郡 (青松郡, 康津郡, 公州郡) 郡守 在任期間 現況	32
表 2- 5	康津郡 企劃人力 現況	33
表 2- 6	青松郡 企劃人力 現況	34
表 2- 7	公州郡 企劃人力 現況	35
表 2- 8	青松郡의 業務量과 人力現況, 1985	37
表 2- 9	康津郡의 業務量과 人力現況, 1985	38
表 2-10	公州郡의 業務量과 人力現況, 1985	39
表 2-11	地方政府의 事務配分現況 (康津郡), 1985	45
表 2-12	地方政府의 業務處理現況, 1985	47

第 3 章

表 3- 1	地方政府 (郡單位) 事務의 再配分 方案	53
表 3- 2	地方政府 (郡單位) 事務再配分에 따른 部署別 事務現況	62
表 3- 3	公州郡의 現實的 執行機構 改編의 概要	69
表 3- 4	康津郡의 現實的 執行機構 改編의 概要	71
表 3- 5	青松郡의 現實的 執行機構 改編의 概要	72
表 3- 6	3 個郡의 部署別 1 人當 業務量 現況	75

圖 目 次

第 1 章

圖 1- 1	組織改編의 主要 相關變數	6
圖 1- 2	地方行政組織体制의 主要 相關變數	8
圖 1- 3	研究의 体系	10

第 2 章

圖 2- 1	從來의 行政体制와 主要 行政理念의 關係	13
圖 2- 2	地方政府의 自治立法 節次	16
圖 2- 3	地方政府의 自治組織 節次(1)	18
圖 2- 4	地方政府의 自治組織 節次(2)	19
圖 2- 5	地方政府의 自治組織 節次(3)	20
圖 2- 6	青松郡 機構表	22
圖 2- 7	康津郡 機構表	23
圖 2- 8	公州郡 機構表	24

第 3 章

圖 3- 1	郡單位 企劃機構 改編案(I)	60
圖 3- 2	郡單位 企劃機構 改編案(II)	60
圖 3- 3	郡單位 企劃機構 改編案(III)	60
圖 3- 4	郡單位執行機構의 基本的 整備方向	67
圖 3- 5	公州郡의 現實的 執行機構 改編案	69
圖 3- 6	康津郡의 現實的 執行機構 改編案	70
圖 3- 7	青松郡의 現實的 執行機構 改編案	72
圖 3- 8	行政体制와 主要 行政理念의 關係	79

第 1 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地方政府行政組織의 존립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特定地方政府 자체의 고유한 사무의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國家施策의 구체화이다. 즉, 地域的 차원의 이익과 國家的 차원의 이익을 조화 있게 추구하는 것이 地方政府行政의 基本目的이다(朴東緒 1986a, 314).

이 두 가지는 上下의 關係라든가 主從의 관계와 같이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國家 전체적 입장을 무시한 地域特性만의 강조라든가 地域特性을 무시한 國家的 입장만의 강조는 실질적으로 均衡과 衡平을 깨뜨리고 불합리와 비능율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후자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만 나타나고 있다. 즉, 地域的 특성을 살리기 위한 機能보다는 國家施策의 具體化機能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中央政府의 地方政府에 대한 강력한 지시와 간섭으로 나타나고, 地方政府를 엄청난 業務量에 시달리게 하고 있으나 自己地域住民의 需要反映을 위해서 보다는 中央政府意思를 받들기 위한 맹목적 行政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地方政府는 自己地域住民의 기본적 수요에 대한 자체적 解

決能力을 상실했고, 中央政府의 결정이나 지시만 따라가는 피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地方政府가 이미 진정한 의미의 地方政府가 아니며 地方에 실질적인 地方行政은 없고 中央行政만이 관류하고 있음을 뜻한다.

地方의 住民들이 바라는 地方行政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란, 地方行政에 있어서 확실히 하나의 限界狀況임에 틀림없다. 이는 地方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國家 전체적 입장에서조차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地方行政의 마비라는 것이 中央과 地方의 衡平性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國家 전체적 效率性의 관점에서조차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中央政府는 地方政府를 맹종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는가? 왜 地方政府는 또 그와 같은 行政不能狀態에 빠져버렸는가? 수차례에 걸쳐 行政改革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地方政府行政組織의 地方固有機能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中央政府行政의 충실한 추진체로서 고질적인 逆機能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어떻게 하면 地方政府의 行政組織을 실질적인 地方行政需要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최소한의 해답이라도 찾아보자는 것이 본연구의 출발이며 問題意識이라 하겠다.

2. 研究의 對象 및 方法

앞의 문제의 제기에서 언급된 「地方行政組織」이란 中央政府組織에 연관된 特別市, 直轄市, 道, 市·郡 및 邑·面組織 등 일련의 下位組織들이 모두 해당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地方行政區域中 農漁村綜合開發計劃에서 주장하는 定住生活圈과 가장 근접하는 基礎自治團體로서의 郡의 行政組織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農漁村綜合開發計劃의 3個實驗地域인 靑松郡, 康津郡 및 公州郡을 사례지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 利用된 研究方法은 먼저 關聯研究著書

및 기타 研究事例에 관한 文獻調査와 郡單位 地方公務員들의 지방행정실무에서 체득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面接調査方法에 의하였다.

3. 研究體系 設定

가. 組織改編에 관한 理論背景

여기서는 組織改編의 基本的 意義, 目的과 함께 과연 무엇을 개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즉 組織改編의 對象變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① 組織改編의 意義

먼저 組織이란 일정한 環境속에서 특정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分業體制라고 할 수 있다(朴東緒 1984, 213). 이러한 組織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組織은 하나의 體制(system)로서 그것이 놓여 있는 環境과 언제나 영향을 주고 받는 相互作用을 한다는 것, 둘째 組織은 어떤 특정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의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 셋째 그 目標을 합리적으로 이룩하고자 分業의 原則에 따라 편성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組織이 변동하는 環境의 諸條件에 대하여 신속성 있게 적응 내지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組織은 엄청난 葛藤과 逆機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組織이란 人間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만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 내지 정비하여 자체의 存續・發展을 도모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와같은 組織變動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을 組織改編이라고 할 때, 이 概念에 대한 定義 또한 다양하나,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예컨대, 組織改編을 創造(Creativity)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E. Hagen, R. Lapiere), 새로운 아이디어의 創出과 그 實踐이라고 보는 견해(V.A. Thompson), 새로운 目的 또는 手段의 도입이라고 보는 견해

(L.B. Mohr) 등이 그것이다(朴東緒 外 1984, 276).

여기서는 狀況適應의 組織變動에 있어서 새로운 目的 또는 手段의 도입 과정으로서 이해하기로 한다.

② 組織改編의 目的

組織改編의 目的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관해 여기서는 프렌치(W. French)와 골렘비우스키(R. T. Golembiewski)의 견해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렌치는 組織改編의 공통적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를 들고 있다(朴東緒 1986b, 435).

- ① 組織成員의 信賴와 協同의 수준을 증대시킨다.
- ② 組織成員들이 組織에 당면한 문제들에 가급적이면 접할 수 있게 한다.
- ③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權限이 個人的인 權限(專門知識과 技術)에 의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水平, 垂直, 對角의 意思疏通을 할 수 있게 한다.
- ⑤ 組織內的 個人的 熱誠과 滿足度를 향상시킨다.
- ⑥ 問題解決方法에 共同解決方法(Synergistic Solutions)을 사용하게 한다.
- ⑦ 組織의 企劃과 執行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이 갖는 책임감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골렘비우스키(R. T. Golembiewski)는 組織改編의 目的에 관하여 9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朴東緒 1986b, 435 - 436).

- ① 組織內에 개방적 문제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組織內的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知識과 能力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과 관련되는 權限을 신장시킨다.
- ③ 政策決定과 問題解決의 책임이 情報源과 가까이 있게 한다.
- ④ 組織內的 개인이나 집단간의 책임감을 조성한다.
- ⑤ 組織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을 조장하고 협동적 노력을 극대

화 시킨다.

⑥組織의 課業과 組織의 발전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報償制度를 개발한다.

⑦組織構成員들이 組織目標을 잘 인식케 하여 그들이 스스로 組織의 管理者라는 의식을 갖게 한다.

⑧組織管理層이 관련있는 목적에 따라 지식을 관리하게 한다.

⑨組織의 구성원들이 自制(self-control)와 自我管理(self-direction)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볼 때 組織의 개편은 組織自體에 있어서의 主體性과 自發性 및 創意性を 높여 組織機能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組織改編의 變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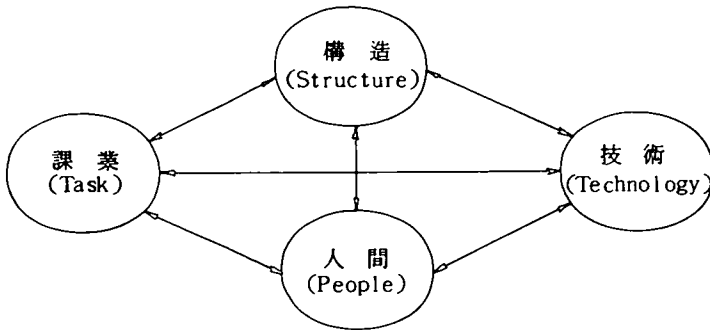
組織改編은 단기적 비전을 가지고 組織을 再構成하는 危機克服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비전하에 組織을 재구성하는 發展志向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組織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 對象變數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특히 리비트(H.J. Leavitt)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리비트는 組織內에는 적어도 4 가지의 主變數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組織改編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주변수란 ①課業(task), ②構造(structure), ③人間(people), ④技術(technology)을 말한다(朴東緒 外 1986 b, 441).

즉, 組織에는 반드시 組織의 전체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목표가 있으며, 個人的 最終單位는 업무이다. 이와같이 組織의 目標에 따른 業務(財貨 및 서비스의 生産)가 여기서 말하는 課業이다.

그리고 構造는 意思疏通의 體系, 權威의 體系 및 業務의 흐름체계를 말한다. 人間은 組織內의 행위자를 말하며, 技術이란 문제해결이나 目標達成의 도구로서 컴퓨터나 기타 사무도구뿐 아니라 방법적인 것 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相互關聯된 變數들로서 그 複合體系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1-1>과 같다.

圖 1 - 1 組織改組의 主要 相關變數



나. 우리나라 地方行政組織 體制의 主要 相關變數

그러면 우리나라의 地方行政組織에 있어서의 조직개편은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地方政府行政組織의 대내적 관점뿐만 아니라 대외적 관점에도 주의를 요한다. 특히 中央政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地方政府行政組織의 특성을 밝히고 이에 입각한 개편의 시각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강력한 中央集權의 전통 아래 住民에 의한 自律的 地方開發計劃의 수립과 執行機能에 관한 行政體制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開發途上國으로서의 공통적 현상인 經濟發展中心의 行政推進에 의해 地方行政의 거의 전범위에 대한 주도권이 中央政府에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地方行政은 中央政府의 統制下에 움직이는 他律的인 존재이상이 될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中央政府의 行政機能은 계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地方政府의 行政機能은 계속적으로 축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惡循環이 심화되고 있는 地方行政의 한계적 상황에서 地方政府의 실질적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地方行政組織의 內的 變數와 함께 특히 中央과 地方이라는 全體行政體制의 下位體制로서의 地方行政組織의 유기적 기능에 입각한 外的 變數를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즉, 地方政府의 行政組織을 개별적, 독자적 체제로 보고, 이에 대한 課業(事務), 構造(機構), 人間 및 技術 등에 관해 부분적, 단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地方行政組織의 구체적 手段(朴東緒 1984, 213)들을 가능케 하는 데 근본적 要素가 되는 中央 - 地方의 전체적 관계속에서의 地方行政의 기본골격인 理念과 이러한 理念의 바탕 위에서 地方行政을 실질적으로 누가 主導하는가에 관한 地方行政의 主體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조명되는 접근方法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地方行政의 理念, 主體 및 手段의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行政理念을 중심으로 볼 때 이는 地方行政主體와 手段에 영향을 주고, 또 역으로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地方行政理念이 무엇이냐에 따라 地方行政의 실질적 主體가 中央에 있게 되느냐, 地方에 있게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 地方行政手段도 幷목적 執行中心의 형태가 되느냐, 자발적 企劃體制의 특성을 가지게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地方行政主體와 手段의 특성여하에 따라 地方行政理念도 既存特性의 강화로 나타나느냐, 반대적 특성으로 변화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地方行政主體를 중심으로 볼 때 이는 地方行政理念과 手段에 영향을 주고 다시 역으로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地方行政의 주도권이 中央에 있느냐, 地方에 있느냐에 따라 地方行政理念이 集權性을 가지느냐, 分權性을 가지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 地方行政手段도 他律的 執行體制의 특성을 가지느냐, 自律的 企劃體制의 특성을 가지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地方行政理念과 手段의 특성여하에 따라 地方行政主體도 中央主導의 특성이냐, 地方主導의 특성이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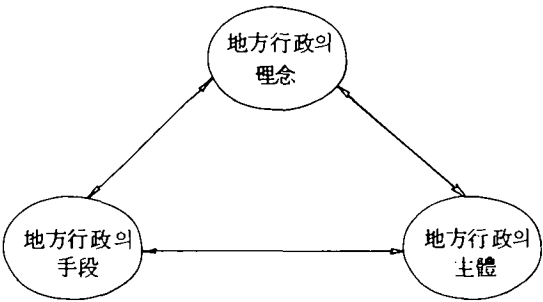
* 여기서 朴東緒 教授는 行政組織을 改編할 때 管理技術的인 것(組織의 規模, 事務의 복잡성, 技術 및 知識 등)뿐만이 아니라, 政治的인 것(地方自治의 문제, 獨立人事機關, 多數人의 需要 등) 및 行政人的인 것들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朴東緒 1984, 237 - 238).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째로, 地方行政手段을 중심으로 볼 때 이는 地方行政主體와 理念에 영향을 주고 역으로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地方行政手段이 自律的, 能動的 體制이나 혹은 他律的 受動的 體制이나에 따라 地方行政理念이 國家目標의 효과적 달성이냐 住民需要의 民主的 추구냐가 달라질 수 있고, 地方行政主體도 地方行政에서 당면하는 실제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能動的 主體가 되느냐, 中央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被動적, 수동적 주체가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여기서 地方行政主體와 理念의 특성에 따라 地方行政手段도 自發的 企劃體制中心이나, 他律的 執行體制中心이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地方行政의 理念과 主體 및 手段의 상호관계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1-2>와 같다.

圖 1 - 2 地方行政組織 體制의 主要 相關變數



다. 研究의 體系

본 연구의 체계는 전술한 地方行政理念과 主體 및 手段의 관계성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地方行政組織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圖 1-3 참조>.

첫째, 地方行政理念으로서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政治・行政의 體制維持의 특성에서 연유되는 合法性과 개발도상국의 특성으로서 行政의 經濟發展指向性에서 연유되는 效果性이 중심이 되어 고찰된다. 그리고 合法性과

效果性的 추구하고 地方行政의 실태와의 맥락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현재 地方行政의 실질적인 主體는 地方政府가 아니라 中央政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地方政府의 자치권이 어느 정도나 행사되고 있는지 또는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지, 中央政府의 地方政府行政權의 제약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세째, 地方行政手段으로서의 地方政府의 組織機構와 人力 및 事務로서 파악한다.*

이와같은 手段에 관한 사항들이 中央政府施策의 집행이라는 특성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地方行政은 地方的 현실과 유리되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먼저 組織機構 및 人力의 현황, 事務配分の 실태와 함께 이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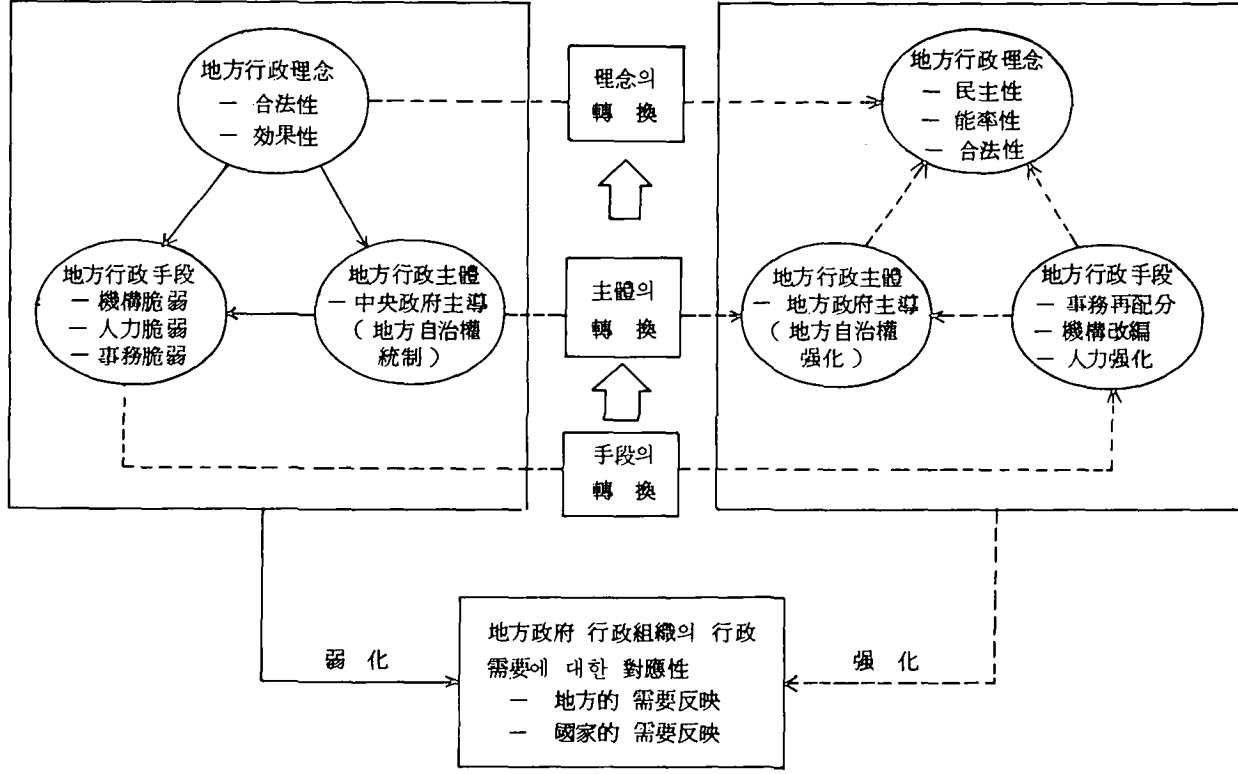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地方行政의 理念, 主體 및 手段의 관계성에 관한 現實的 상황은 理念에 主體 및 手段이 따르고, 手段은 다시 主體에 따르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내지 權威主義的 政治・社會의 오랜 풍토에서 統治爲主로 理念과 主體 및 手段이 정당화되고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地方行政組織體制의 종합적 개편의 궁극적인 目的은 地方政府行政組織의 실질적 행정수행에 있어 地方的 내지 國家的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의 강화라고 할 때 현재의 地方行政組織體制로서의 地方行政 理念, 主體 및 手段의 관계성이 많은 갈등과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地方行政組織體制의 전환의 방향은 이와같은 理念, 主體 및 手段의 전환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먼저 地方的 現實과 밀착되어 있는 地方行政의 手段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으로 地方行政主體 및 理念의 전환을 도모하는 방식이다〈圖 1-3〉.

* 이와 같은 手段에 관한 變數는, H.J.Leavitt가 제시한 것으로는 ①課業(Task), ②構造(Structure) ③人間(People) 및 ④技術(Technology)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技術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단계에서는 좀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되는 前3者에 限定하였다.

圖 1-3 研究的體系

—— 既存의 行政體制
 - - - - 行政體制的 轉換



第2章

地方政府의 行政組織體制와 問題點

1. 地方行政의 理念과 主體

가. 地方行政의 理念

地方行政의 理念이란 地方行政이 지향하고자 하는 最高價値 내지 理想을 의미한다 (鄭世煜 1985, 27; 朴東緒 1984, 96). 이것은 地方行政의 존립근거가 되는 철학적 요소인 동시에 地方行政의 질을 결정하는 重要變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地方行政의 理念이란 현실적으로 國家(中央政府)行政의 理念과의 불가피한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行政權이 中央에 집중된 나라에서는 地方行政理念이란, 中央行政理念의 下位概念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中央行政에 있어서의 主要理念은 무엇인가? 그것은 社會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行政體制가 어떤 유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시대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① 1960年代 이전과 ② 1960年代~1970年代 및 ③ 1980年

代 이후와 같은 구분이 제시되고 있다 (金雲泰 外 1982, 478 ; 서울대학교 行政論叢 1979, 320-336). 이와 같은 구분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行政体制은 상이한 특징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①의 기간은 體制維持的 行政体制, ②의 기간은 發展主導的 行政体制, ③의 기간은 앞으로 우리나라 行政体制의 나아갈 방향으로서 間接誘導的 行政体制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金雲泰 外 1982, 465). 여기서는 前2者에 관한 특성과 主要理念을 中心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① 體制維持型과 行政理念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第1共和國, 美軍政期, 日帝總督行政体制 및 李朝時代의 行政体制 등 까지 생각할 수 있다.

먼저 李朝時代의 行政은 봉사하는 목적이 政治理念上 궁극적으로는 백성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統制方法이 거의 없는 지배적인 君主를 통해서 行政이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있어서는 主權의 유지 및 이를 위한 統制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日帝와 美軍政期를 거쳐 第1共和國에 이르기까지 民主行政으로의 요구는 있었지만, 政府內外的 여건에 따라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 때 行政이 주로 하는 일이란 秩序維持와 租稅徵收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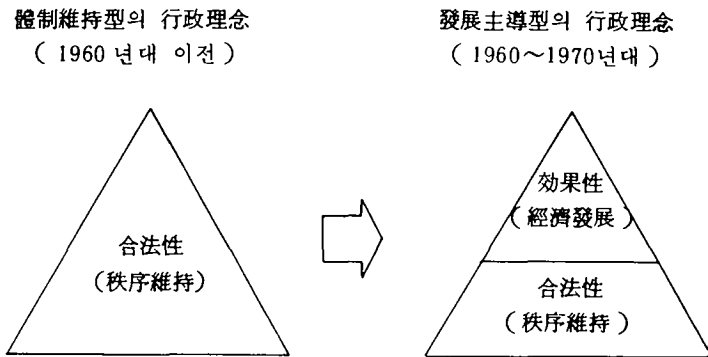
이와 같은 行政体制의 특성에 따라 이 기간에 강조된 行政理念이란 行政의 集權性 내지 合法性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② 發展主導型과 行政理念

이는 우리나라에서 近代化 내지 産業化의 작업이 왕성하게 추진되었던 1960 ~ 1970 年代에 있어서의 行政体制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基本立場은 行政이 變化의 主体로서 近代化 내지 産業化에 있어서의 주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行政体制의 특성에서 강조된 行政理念이란 行政의 目標達成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効果性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의 理念으로 效果性이 강조되었

圖 2 - 1 從來的 行政體制와 主要 行政理念의 關係



지만 그 밑바탕에 行政의 集權性 내지 合法性의 理念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行政體制가 體制維持型에서 發展主導型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行政의 主要理念도 合法性中心에서 効果性中心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金雲泰 外 1982, 477)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圖 2-1>과 같다.

[3] 行政의 理念과 地方自治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行政理念은 行政體制가 변화되어 오면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地方自治의 모습도 상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行政理念의 변화와 이에 따른 地方自治의 형태변화의 실태를 主要理念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行政의 集權性 내지 合法性理念과 地方自治와의 관계이다.

行政의 集權性 내지 合法性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政治・社會的 특성이며, 秩序維持行政 또는 統治者爲主行政의 특징적 理念이다. 이와 같은 行政에서는 中央과 地方과의 관계란 완전히 上・下의 主從關係의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地方自治의 유형도 住民自治의 形態보다는 官治行政方式

인 團體自治의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團體自治란 국가내의 일정한 公共 團體가 國家權力の 委任을 받아 그 地方團體의 行政事務를 처리하는 自治 行政方式이다 (鄭世煜 1984, 96-98). 그러므로 이와 같은 自治行政方式이란 國家가 필요로 할 때 地方自治도 실시하는 것이지, 만일 國家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地方自治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行政方式이다. 이를 大陸型地方自治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英美型인 住民自治方式과 비교하여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鄭世煜 1984, 98-101).

① 地方自治團體의 권한획득의 방식이 住民自治方式(個別的 指定)과 달리 包括的 委任方式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성 문제가 야기되며 결국 地方自治가 형식화될 可能性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中央政府의 監督方式이 立法 내지 司法의 統制가 특징인 住民自治主義에 비해 行政的 統制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中央政府의 간섭을 조장하며, 결국 地方政府를 中央政府의 一線 機關化하여 地方自治를 허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行政의 效果性理念과 地方自治와의 관계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들의 지향목표는 經濟開發이 주가 되고 있다. 특히 5·16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近代化問題 내지 經濟發展問題의 해결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經濟發展은 國家의 最優先 課題로 부각되었으며 이것은 당연히 行政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近代化作業과 經濟發展을 위한 行政은 效果性を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엇보다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制定하여, 마침내 團體自治의 형태마저 留保함으로써, 이후 우리나라의 行政全般은 國家主導의 經濟發展中心的 實績行政만이 관류할 뿐이었다. 그러다보니 地方政府의 行政도 經濟發展과 같은 부문의 지원만이 급증하였고, 또 지원해 준 만큼 中央政府의 간섭과 통제도 강화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地方行政이란 傳統의 政治·社會의 특성에 따라 團體自治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地方行政에 대한 주도권이 주로 中央政府에 集中되어 왔는데 여기에 開發途上國家로서의 經濟發展指向性 내지 效果性的

강조로 地方自治의 명분마저 유보되고 行政權의 中央集中現象만 노골화될 뿐 실질적 地方自治行政이란 존립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나. 地方行政의 主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行政理念的 특성에 따라, 中央政府에 行政權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地方政府의 行政力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地方政府는 地方行政의 主體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오히려 中央政府가 그 실질적 主體가 되어 왔다.

그러면 中央政府는 어느 정도 地方行政을 주도해 왔는가? 즉, 中央政府의 地方政府에 대한 統制의 실태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統制란 中央政府가 어느 정도 地方政府의 自治權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리하여 地方政府의 自治權으로서 自治立法權 自治組織權(自治財政側面은 별도 연구중이므로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함)에 있어서의 地方政府의 自律性的 제약실태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鄭世煜 1984, 132-154).

[1] 地方政府의 自治立法權

우리 憲法에는 自治團體가 「法令의 範圍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地方自治法이 條例와 規則이라는 두가지 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自治立法權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처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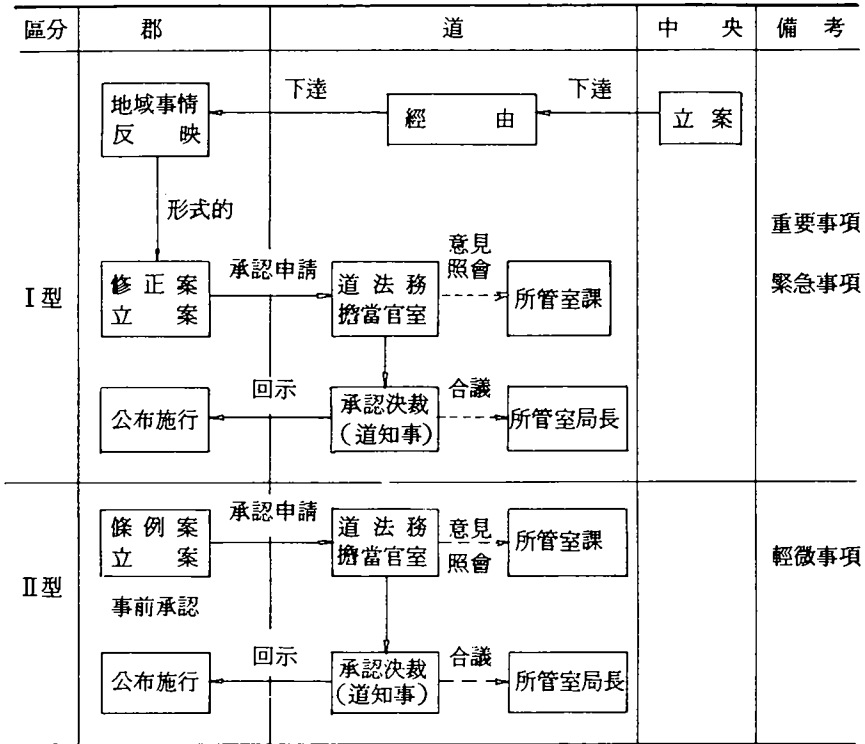
또한 基礎自治團體인 郡의 경우 실질적 自治立法權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地方自治法 第7條 내지 10條
- 同法 施行令 第8條 내지 10條
-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 第10條
- 市・郡條例, 規則 等 公布에 關한 條例 等

그러나 실제로는 그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과 같은 條例와 規則의 制定・改廢節次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圖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條例와 規則의 制定・改

圖 2 - 2 地方政府的 自治立法 節次



資料：內務部，地方行政業務 편람 및 道業務흐름圖.

廢의 경우 郡에서는 형식적인 立案・申請 및 이에 대한 施行 (承認된 경우) 이라는 극히 機械的이고 被動的인 事務만을 담당할 뿐이고, 실제적 權限이란 中央 및 道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郡의 自治立法權이란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立案自体가 中央에서 이루어지며, 지시적으로 이것이 道를 거쳐 郡에 하달되어진다.

여기에서 지역사정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다고 하나 실질적 수정・보완의 事例는 드물다. 그런 사례의 경우도 자구수정 정도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條例案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실제로 事前承認을 거치게 되어 있다.

規則의 경우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範圍 내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制定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條例(承認事項)와 달리 審査事項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自律性이 없기는 대동소이하다.

즉 規則으로서 실질적 중요성을 가지는 定員 및 機構에 관한 사항들은 條例와 마찬가지로 承認을 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

여기에서는 地方政府組織의 機構 및 人力에 관한 自律性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組織機構의 新設・改廢 및 定員의 增員, 調整과 公務員의 任用(新規・昇進) 등의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機構의 新設・改廢 및 定員의 增員・調整

먼저 郡機構의 新設・改廢 및 定員의 增員에 관한 것은 道를 거쳐 中央(內務部)에 진달되고, 中央의 결정이 다시 道를 경유 郡에 통보되면, 郡에서는 이에 대한 規則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한다.

또한 定員의 調整에 관한 사항은 郡에서 道로 신청할 때, 道와 郡의 관계, 市・郡・區와 邑・面・洞의 관계 및 市・郡・區간 관계 등의 경우, 定員配定措置 내지 定員調整에 관한 承認通報를 道에서 郡에 보내게 된다.

郡에서는 이에 따라 規則을 改正, 公布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圖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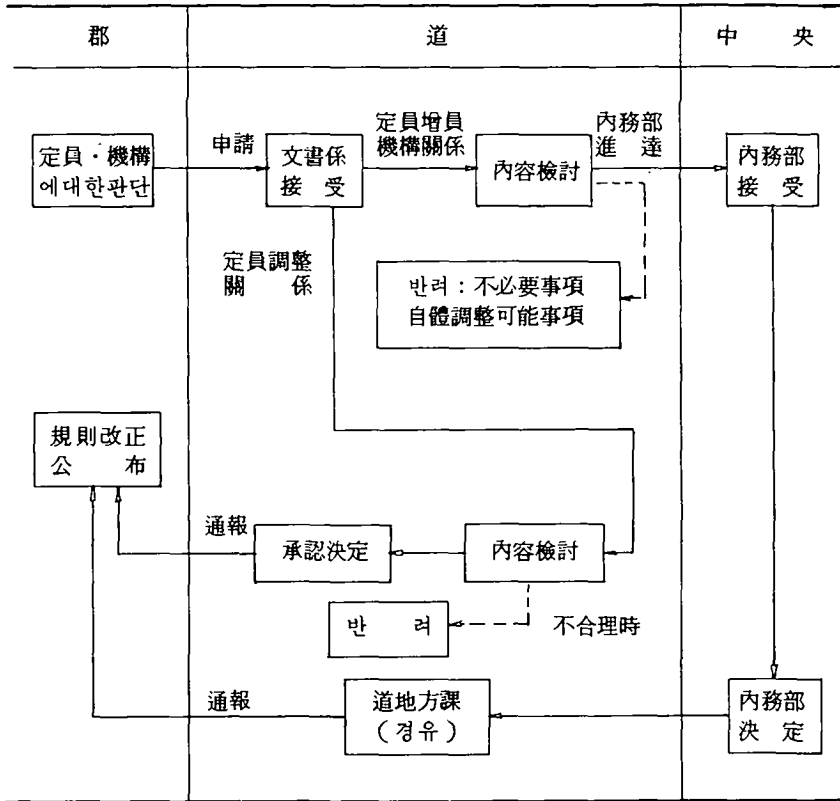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실질적인 權限은 中央(內務部) 및 道에 속함으로써, 郡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基礎自治團體로서의 郡의 경우, 機構와 定員에 관한 自治組織權이 극히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② 公務員任用

公務員任用은 여기에서 地方公務員의 新規任用, 昇進任用, 등의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이의 根據法規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圖 2 - 3 地方政府的自治組織 節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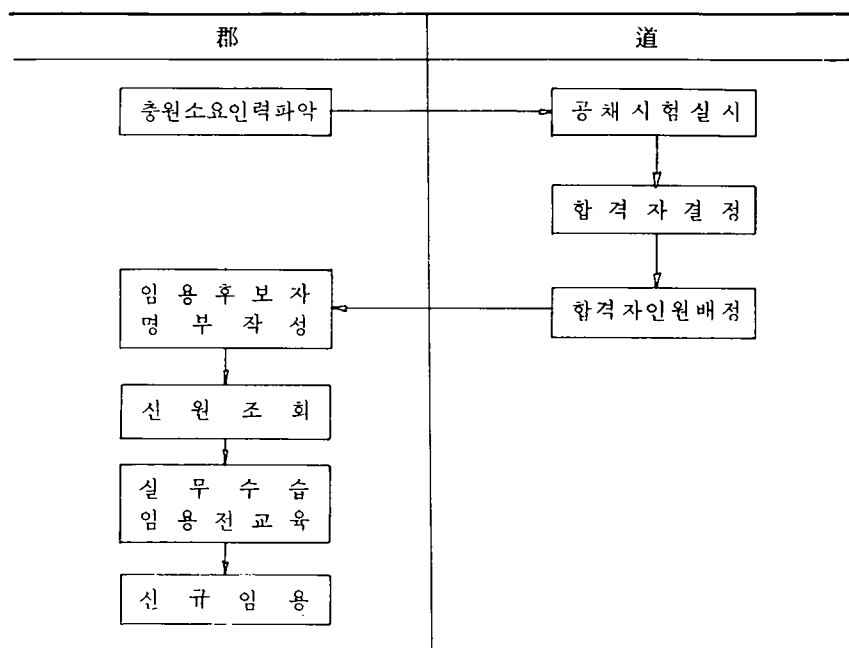


資料：內務部，地方行政業務 規程 및 道 業務흐름圖

- 地方公務員法 第 6 條
- 地方公務員任用令
- 市・郡 地方公務員 人事規則
- 市・郡 地方雇傭職 公務員任用 等에 관한 條例 等

이와 같은 根據規定에 입각한 地方公務員의 任用節次 중 먼저 新規任用的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圖 2 - 4 >.

圖 2 - 4 地方政府의 自治組織 節次(2)



資料 : 內務部, 地方行政業務 편람 및 道 業務흐름圖.

新規任用에서는 대부분 9급 地方公務員으로의 任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규로 任用된 9급 地方公務員에 대하여 8급, 7급, 6급, 5급으로의 昇進任用이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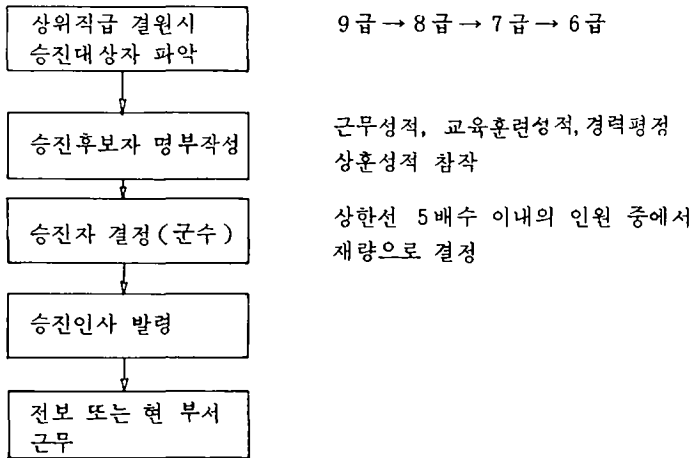
그림에서 볼 때 新規任用의 실질적 권한은 대부분 上級機關인 道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新規任用過程에서의 중요한 절차인 試驗(公採 및 特採)과 관련한 사항들은 과거 郡守의 權限事項이었으나 試驗의 不正防止와 效率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는 모두가 道の 權限事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즉 道에서 實施한 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에서 합격한 者 중에서 道는 新規任用後補者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郡에 배정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원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의 수

圖 2 - 5 地方政府의 自治組織 節次(3)



資料 : 內務部, 地方行政業務 편람 .

습 및 敎育을 거쳐 新規任用이 된다. 즉 地方公務員의 新規任用에 있어서도 郡의 自律性이란 극히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및 7급에서 6급으로의 昇進任用은 郡守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다. 昇進任用의 절차는 <圖 2 -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郡守는 昇進對象者 中에서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경력평점, 및 상훈성적(가점평점) 등을 종합한 成績順에 따라 必要인원의 5배數 범위 내에서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裁量으로 任用할 수가 있다. 이는 郡의 自治組織權에서 自律性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6級에서 5級으로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郡守의 裁量權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郡에 5級職(課長級)에 결원이 생기면, 道에서 실질적 승진대상자를 課長代理라는 補職으로 郡에 인사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郡은 5級으로의 昇進試驗對象者로서 政院의 5배數 인원을 추천할 때, 道에서 配置되어 온 對象者(課長代理)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試驗에 합격할 가능성이 적은 자들(高齡者

등)을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道에서 配置되어 온 對象者가 합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郡單位에 있어 自治立法權과 自治組織權의 측면에서 볼 때, 그 自律性이란 극히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郡單位의 地方行政에 대해 中央政府 내지 上級機關의 統制와 간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郡單位의 地方行政에 대한 主体的 지위의 부인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地方行政의 理念과 主体에 따라, 현재의 郡單位 地方行政의 手段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주목된다.

2. 地方行政의 手段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地方行政의 手段으로서는 地方行政組織의 機構와 人力 및 事務이다. 이들에 관한 실태를 차례로 고찰하기로 한다.

가. 地方政府의 行政組織機構

본 연구의 調査對象地域인 3個郡(靑松, 康津, 公州郡)을 중심으로 볼 때, 地域別 行政組織機構들은 <圖 2-6 ~ 圖 2-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地方政府의 行政組織機構를 總括的 企劃機構와 細部事業別 執行機構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① 企劃機構 現況

현재 地方政府에 있어 郡單位를 중심으로 볼 때, 企劃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機構로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가 있다<表 2-1 참조>

첫째는 內務課에 소속된 企劃豫算係이다. 이는 職制上 郡行政全般에 관한 企劃調整, 中・長期計劃樹立 및 調整, 그리고 豫算에 관한 업무 등을

圖 2 - 6 靑松郡 機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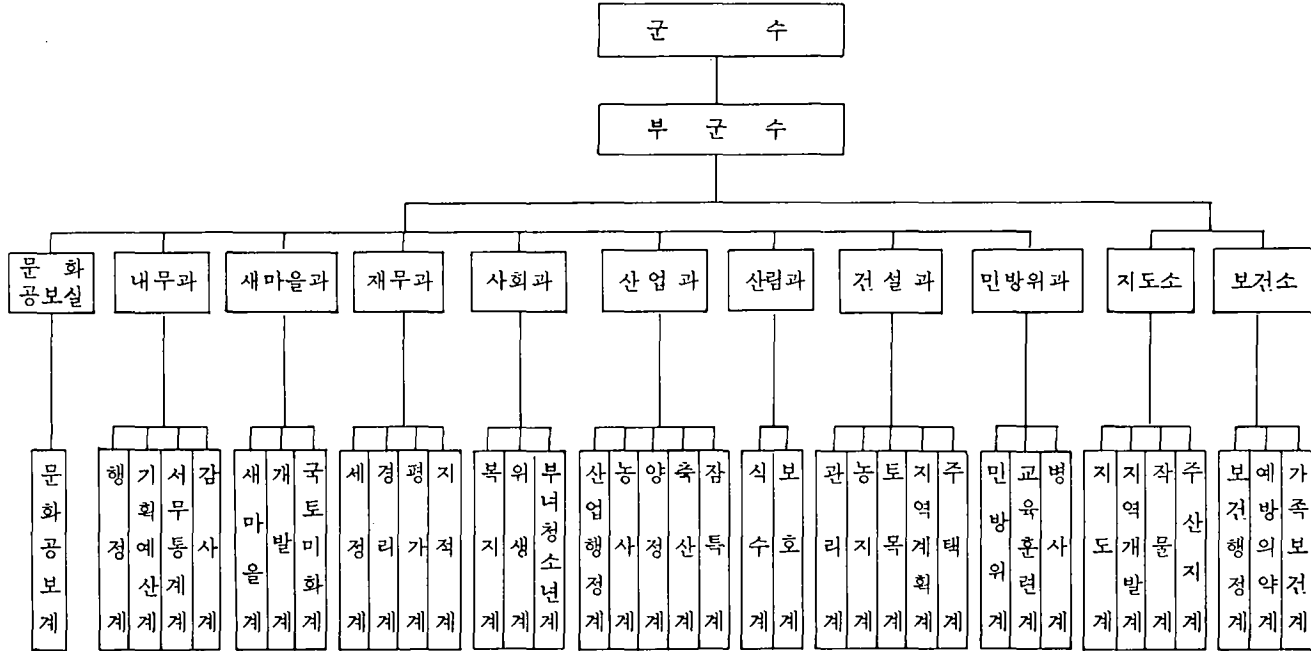


圖 2 - 7 康 津 郡 機 構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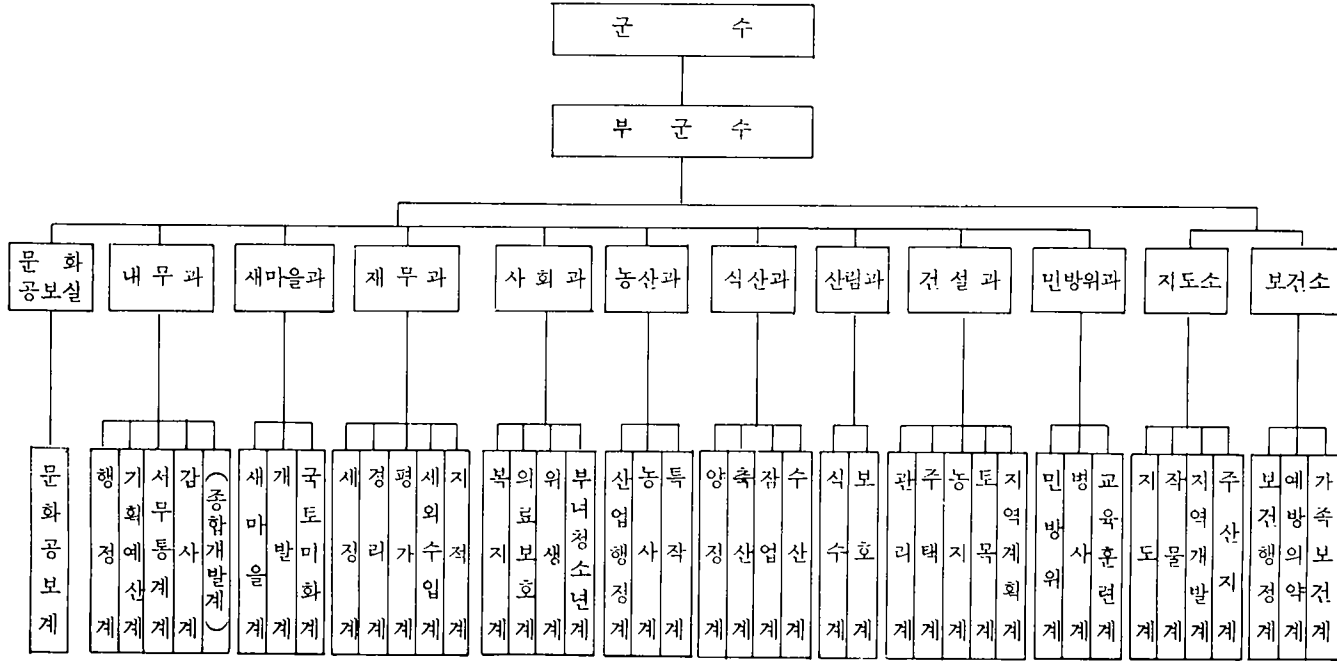


圖 2 - 8 公州郡 機關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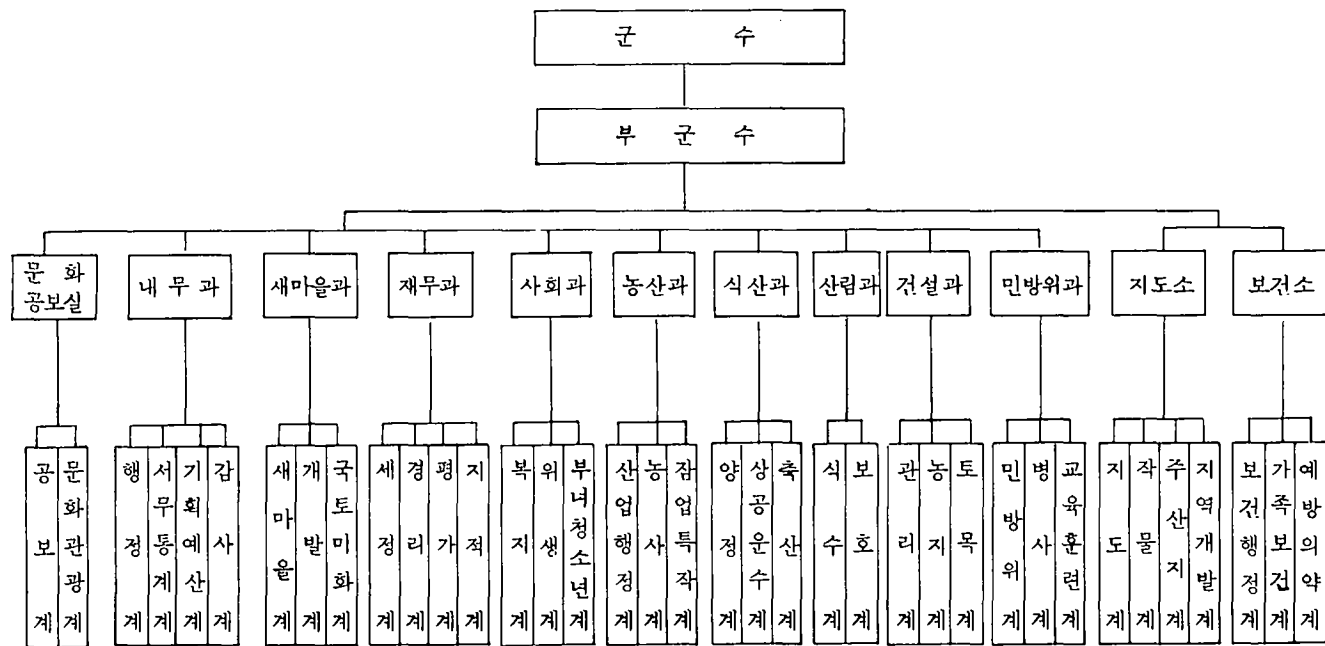


表 2 - 1 郡單位 企劃部署의 分掌業務

部 署 別	主 要企 劃業 務 分 掌 內 容
企 劃 豫 算 係	○ 郡行政 全般에 관한 企劃調整 ○ 中・長期計劃樹立 및 調整 ○ 基本運營計劃 樹立 및 審査分析
地 域 計 劃 係	○ 地域開發의 綜合企劃 및 調整
文 化 公 報 係	○ 公報計劃의 樹立實施
行 政 係 (庶務統計係)	○ 內務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새 마 을 係	○ 새마을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稅 政 係	○ 財務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福 祉 係	○ 社會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 住民福祉施策의 樹立推進
產 業 行 政 係	○ 產業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植 樹 係	○ 山林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管 理 係	○ 建設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民 防 衛 係	○ 民防衛課 소관업무의 企劃調整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建設課에 소속된 地域開發係이다. 이 係에서는 地域開發의 綜合企劃 및 調整 都市計劃의 입안, 市街地 및 土地區劃整理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째는 各 室課의 先任係를 들 수 있다. 이는 文化公報係, 庶務統計係, 새마을係, 稅政係, 福祉係, 產業行政係, 植樹係, 管理係 및 民防衛係 등으로서, 이들은 係로서의 基本業務 外에 소속된 課의 소관업무에 관한 企劃・調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企劃機構들이 어느 정도나 企劃機能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1985 년도 한해 동안 처리한 業務의 內容을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表 2 -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약한 실정이다.

表 2 - 2 郡單位 企劃部署의 業務處理 現況

단위 : 업무건수(%), 1985

區 分	業務量 (發送 文書)	業 務 의 性 格					
		企 劃 業 務			執 行 業 務		
		計	自 律	他 律	計	自 律	他 律
企劃豫算係	61 (100)	10 (16)	-	10(16)	51(84)	17(28)	34(56)
地域計劃係	21 (100)	5 (24)	-	5(24)	16(76)	2(10)	14(66)
文化公報係	92 (100)	8 (9)	-	8(9)	84(91)	8(9)	76(82)
庶務統計係	88 (100)	1 (1)	-	1(1)	87(99)	5(6)	82(93)
새 마 을 係	250 (100)	67 (27)	-	67(27)	183(73)	46(18)	137(55)
稅 政 係	226 (100)	3 (1)	-	3(1)	223(99)	25(11)	198(88)
福 祉 係	204 (100)	6 (3)	-	6(3)	198(97)	24(12)	174(85)
産業行政係	83 (100)	6 (7)	-	6(7)	77(93)	13(16)	64(77)
植 樹 係	165 (100)	8 (5)	-	8(5)	157(95)	108(65)	49(30)
管 理 係	219 (100)	13 (6)	-	13(6)	206(94)	63(29)	143(65)
民 防 衛 係	192 (100)	7 (4)	-	7(4)	185(96)	4(2)	181(94)
計	1601 (100)	134 (8)	-	134(8)	1467(92)	315(20)	1152(72)

資料 : 靑松郡

즉 郡의 企劃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전술한 企劃擔當係들의 企劃業務遂行比率는 전체업무의 8% 정도이며, 그것도 他律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郡의 거의 모든 部署들이 단순 執行業務遂行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自發的이고 能動的인 企劃業務의 수행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郡의 全般的 企劃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企劃豫算係의 경우를 보면 현재 기본적 豫算編成 및 運營 등 업무만도 그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地方政府의 固有事務의 領域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自律의 업무수행이 요청되고 있는 때에, 현재와 같은 係單位水準의 企劃機構와 人力을 가지고는 이의 실질적인 수행이란 불가능한 상태이다.

② 執行機構의 現況

여기서 3 個郡(靑松, 康津, 公州郡)의 執行機能을 중심으로 한 機構形態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2-3 참조>.

먼저 文化公報室은 靑松과 康津郡의 경우는 文化公報係만을 두고 있고 公州郡의 경우는 公報係와 文化觀光係를 두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內務課의 경우는 3 個郡이 공히 行政係, 企劃豫算係, 庶務統計係 및 監査係를 두고 있고, 康津郡의 경우 직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綜合開發係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다르다.

財務課의 경우는 3 個郡이 공통적으로 稅政係, 經理係, 評價係, 地籍係를 두고 있고, 康津郡의 경우 특히, 稅外收入係가 추가되어 있음이 다르다. 社會課의 경우는 3 個郡이 福祉係, 衛生係, 婦女靑少年係를 공통적으로 두고 있고, 康津郡의 경우 醫療保護係가 추가되어 있음이 다르다. 産業課, 農産課・殖産課의 체제는 3 個郡이 각각 상이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靑松郡의 경우는 産業課란 명칭하에 産業行政係, 農事係, 糧政係, 畜産係 및 蚕特係 등 5 個 係로 운영하고 있고, 康津郡의 경우는 農産課・殖産課의 형태로서 農産課에는 産業行政係, 農事係 및 特作係를 포함시키고 있고, 殖産課에는 糧政係, 畜産係, 蚕業係 및 水産係를 포함시키고 있다. 公州郡은 康津郡과 같이 農産課・殖産課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農産課에 産業行政係, 農事係, 蚕業特作係를 포함시키고 있고, 殖産課에는 糧政係, 畜産係 및 商工運輸係를 포함시키고 있다. 建設課의 경우는 靑松郡과 康津郡에서는 管理係, 農地係, 土木係, 地域計劃係 및 住宅係를 두고 있고, 公州郡의 경우는 管理係, 農地係 및 土木係만이 포함되고 있음이 다르다.

그 외 새마을課, 山林課, 民防衛課, 農村指導所 및 保健所 등의 경우는 3 개군이 공통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새마을課에는 새마을係, 開發係 國土美化係로 山林課의 경우는 植樹係, 保護係로 民防衛課에는 民防衛係, 教育訓練係, 兵事係로 指導所에는 指導係, 地域開發係, 作物係, 主產地係로 그리고 保健所는 保健行政係, 家族保健係 및 豫防醫藥係로 구성되고 있다.

表 2 - 3 3 個郡 (靑松郡, 康津郡, 公州郡)의 機構 比較

군 별 실과소별	청 송 군	강 진 군	공 주 군
1. 문화공보실	① 문화공보계	① 문화공보계	① 공 보 계 ② 문화관광계
2. 내 무 과	① 행 정 계 ② 기획예산계 ③ 서무통계계 ④ 감 사 계	① 행 정 계 ② 기획예산계 ③ 서무통계계 ④ 감 사 계 ⑤ (종합개발계)	① 행 정 계 ② 기획예산계 ③ 서무통계계 ④ 감 사 계
3. 새 마을 과	① 새 마을 계 ② 개 발 계 ③ 국토미화계	① 새 마을 계 ② 개 발 계 ③ 국토미화계	① 새 마을 계 ② 개 발 계 ③ 국토미화계
4. 재 무 과	① 세 정 계 ② 경 리 계 ③ 평 가 계 ④ 지 적 계	① 세 정 계 ② 경 리 계 ③ 평 가 계 ④ 지 적 계 ⑤ 세외수입계	① 세 정 계 ② 경 리 계 ③ 평 가 계 ④ 지 적 계
5. 사 회 과	① 복 지 계 ② 위 생 계 ③ 부녀청소년계	① 복 지 계 ② 위 생 계 ③ 부녀청소년계 ④ 의료보호계	① 복 지 계 ② 위 생 계 ③ 부녀청소년계
6. 산 업 과	① 산업행정계 ② 농 사 계 ③ 양 정 계 ④ 축 산 계 ⑤ 잠 특 계		
농 산 과		① 산업행정계 ② 농 사 계 ③ 특 작 계	① 산업행정계 ② 농 사 계 ③ 잠업특작계
식 산 과		① 양 정 계 ② 축 산 계 ③ 잠 업 계 ④ 수 산 계	① 양 정 계 ② 축 산 계 ③ 상공운수계
7. 산 림 과	① 식 수 계 ② 보 호 계	① 식 수 계 ② 보 호 계	① 식 수 계 ② 보 호 계

실과소별 군 별	청 송 군	강 진 군	공 주 군
8. 건 설 과	① 관 리 계 ② 농 지 계 ③ 토 목 계 ④ 지역계획계 ⑤ 주 택 계	① 관 리 계 ② 농 지 계 ③ 토 목 계 ④ 지역계획계 ⑤ 주 택 계	① 관 리 계 ② 농 지 계 ③ 토 목 계
9. 민 방 위 과	① 민 방 위 계 ② 교육훈련계 ③ 병 사 계	① 민 방 위 계 ② 교육훈련계 ③ 병 사 계	① 민 방 위 계 ② 교육훈련계 ③ 병 사 계
10. 지 도 소	① 지 도 계 ② 지역개발계 ③ 작 물 계 ④ 주 산 지 계	① 지 도 계 ② 지역개발계 ③ 작 물 계 ④ 주 산 지 계	① 지 도 계 ② 지역개발계 ③ 작 물 계 ④ 주 산 지 계
11. 보 건 소	① 보건행정계 ② 가족보건계 ③ 예방의약계	① 보건행정계 ② 가족보건계 ③ 예방의약계	① 보건행정계 ② 가족보건계 ③ 예방의약계

앞에서 볼 수 있는 3개지역의 機構編制는 주로 人口 및 面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거의 획일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과거보다 지역사정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지엽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먼저 靑松郡의 경우를 보면 무엇보다 主産物이 他 2個地域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특히 고추, 사과 및 담배와 같은 特作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米作은 대단히 빈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農事係, 糧政係, 畜産係, 蚕特係 등이 1個 産業課에 編制되어 있으며 특히 蚕特係의 경우 産業課에서도 가장 적은 人力(2名)으로 主産物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業務量過多와 專門技術不足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새마을課에 편제되어 있는 國土美化係는 3個郡에 공통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靑松郡의 경우 천연의 自然美를 劃一行政에 의해 손상을 주는 불합리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山林課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 과다세분된 결과로서 업무수행상의 중복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두번째로 康津郡의 경우를 보면, 특히 이곳엔 多數의 指定文化財(19個

所)와 非指定文化財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保存 관리 및 開發이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郡機構로서는 文化公報係가 있으나, 이는 一般行政業務와 文化財에 관한 현수준의 維持·管理만에도 人力 및 專門知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地方文化財를 발굴하고 관광·홍보의 업무수행까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번째로 公州郡의 경우도, 機構編制上的 문제점은 靑松·康津郡과 대동소이하나 이곳은 3개 郡 중에서 商工業部門의 성장이 두드러진 곳이다. 예를 들어 農工團地造成 및 市場整備라든가 自家用 및 商業用車輛의 증가 노선버스에 대한 주민 수요증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公州郡에는 殖産과에 商工運輸係가 있으나 1個 係의 단위로서 道の 1局, 3課, 9係의 業務와 관련하여*, 기존의 分掌事務와 民願으로 나타나는 住民의 行政需要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결국 3個郡의 경우를 볼 때 基本的으로 두드러진 地域特性마저도 機構編制上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地方政府의 人力

① 郡守 地位의 安定性

地方政府가 실질적 地方行政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行政責任者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基礎自治團體長으로서의 郡守는 郡行政의 主導者로서 地方發展을 위한 行政過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단계에서 요청되는 여러가지 政策決定 事項들을 진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住民意思를 반영한 地方發展을 설계하고 一貫性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3個地域을 중심으로

* 이는 忠淸南道の 商工運輸局(1局), 商政·輸出工業·運輸課(3課) 및 商政·燃料·計量·工業·鑛電·品質管理·輸出支援·運輸·車輛係(9係) 등을 의미한다.

볼 때, 郡守란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할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郡守의 選任方法에 관한 실태와 在任期間現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郡守의 選任方法

우리나라의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第9條 第2項에서 보면, 「郡守는 道知事の 推薦으로 內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地方自治團體長의 選任方法이 任命制에 의하고 있고, 階層에 따라 提請權者는 다르지만 最終任命權者는 大統領이라는 점에서 地方自治團體長에 대한 人事權이 中央政府의 권한에 속하고, 제청, 추천 및 경유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이러한 각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地方에 대한 中央政府의 人事統制는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郡守란 地方住民의 행정적 수요를 반영하여 地方發展을 추진해 가는 적극적 선봉장이 되기 보다는 대부분 中央政府人事權者의 눈치를 살펴며 中央의 지시에 순종하여 대과없이 재임기간을 보내고자 하는 피동적이고 現狀維持的인 행정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나) 郡守의 在任期間 現況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郡守는 任命制에 의해 선임되고 있고, 특별히 任期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郡守들마다 재임기간은 불안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3個地域(靑松郡 康津郡 및 公州郡)을 중심으로 歷代郡守들의 재임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2-4>와 같다.

여기에서 볼 때 3個實驗地域 郡守의 平均在任期間은 1년 4개월 정도이고 1년미만 재임 郡守만 해도 전체 83명 중 34명(41%)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郡守가 公務員으로서의 자질이 우수한 인재 중에서 임명된다 하여도, 하나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地域開發計劃에 임각하여 行政을 수행하기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2 - 4 3 個郡(靑松郡, 康津郡, 公州郡)郡守 在任期間 現況

區 分	역대군수 총원(명)	평균재직 기간(월)	6월미만 (명)	7~12월 (명)	13~24월 (명)	25월 이상(명)	비 고
靑松郡	32	15	3	11	13	5	1948 ~ 1985
康津郡	26	18	5	4	9	8	1945 ~ 1985
公州郡	25	17	2	9	10	4	1950 ~ 1985
計 (%)	83	16	10 (12.0)	24 (28.9)	32 (38.5)	17 (20.5)	

資料 : 靑松郡, 康津郡, 公州郡.

② 企劃人력의 實態 :

3 個郡의 企劃人力에 관한 全般的 現況에 관하여 聯種別, 學歷別, 職務教育別 및 出身地別로 살펴보고자 한다. (〈表2-5〉~〈表2-7〉참조.)

가) 康津郡

3 개지역 중 먼저 강진 경우를 보면 군정전반에 관한 企劃擔當機構로서 기획예산계와 지역종합계획 담당부서로서의 지역계획계 및 과별기획담당 부서로서의 문화공보계, 서무통계계, 새마을계, 세정계, 복지계, 산업행정계, 식수계, 관리계, 및 민방위계 등 11 개 부서를 살펴 볼 때 職種別, 學歷別, 職務教育別 및 出身地別 현황은 〈表 2 - 5 〉와 같다.

먼저 職種別로는 총 45 명 중 행정직이 55.6 %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용원 (20.0 %), 농림직 (11.1 %), 토목·축산 (각각 2.2 %) 및 기타 (8.9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學歷別로는 고졸이 88.9 %로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중졸 (11.1 %)의 순을 보이고 있다. 職務教育回數로 볼 때 5 회이상인 48.9 %으로서 나타나고 있고, 4 회이하가 51.1 %인데, 그 중 1 회이하가 13.3 %나 되고 있다. 出身地別로는 自郡이 91.1 %로서 他郡 (8.9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表 2 - 5 康津郡 企創人力 現況

區 分	計	職 種							學 歷				職 務 教 育					出身地	
		行政	農林	土木	畜産	通信	雇傭員	其他	國卒 以下	中卒	高卒	專門大 以 上	1回 以下	2回	3回	4回	5回 以上	自郡	他郡
企創豫算係	3	3								2	1					3		3	
地域計劃係	3	1						2			3		1	1			1	3	
文化公報係	6	1			1		4				6		3	1	1	1		6	
行 政 係	10	9					1			1	9		1	1	1	1	6	8	2
새 마을 係	4	3		1							4					1	3	3	1
稅 政 係	3	2					1				3		1				2	3	
福 祉 係	2	2									2						2	2	
産業行政係	2	1					1				2				1		1	2	
植 樹 係	5		5							1	4						5	5	
管 理 係	3	2					1				3			1		1	1	3	
民防衛係	4	1					1	2		1	3				1	2	1	3	1
計 (%)	45 (100)	25 (55.6)	5 (11.1)	1 (2.2)	1 (2.2)		9 (20)	4 (8.9)		5 (11.1)	40 (88.9)		6 (13.3)	4 (8.9)	4 (8.9)	9 (20)	22 (48.9)	41 (91.1)	4 (8.9)

表 2 - 6 青松郡 企劃人力 現況

區 分	計	職 種						學 歷				職 務 教 育					出 身 地	
		行政	農林	土木	通信	雇傭員	其他	國卒 以下	中卒	高卒	專門大 以上	1回 以下	2回	3回	4回	5回 以上	自郡	他郡
企劃豫算係	4	3				1				4		3		1			4	
地域計劃係	2			2						2			2				2	
文化公報係	5	1				4		1	1	3		4			1		5	
庶務統計係	11	2			1	8		3	4	4		10	1				11	
새마을係	5	3		1		1		1		3	1	4			1		5	
稅 政 係	4	2				2				4		2	1	1			4	
福 社 係	3	2	1							2	1	3					3	
產業行政係	4	1	2			1			2	2		1	2	1			4	
植 樹 係	7		6			1			1	6		3	1	1		2	7	
管 理 係	7	2		3		2		1		4	2	4	3				7	
民防衛係	3	2					1			2	1		3				3	
計 (%)	55 (100)	18 (32.7)	9 (16.4)	6 (10.9)	1 (1.8)	20 (36.4)	1 (1.8)	6 (10.9)	8 (14.5)	36 (65.5)	5 (9.1)	34 (61.8)	13 (23.7)	4 (7.3)	2 (3.6)	2 (3.6)	55 (100)	0 (0)

表 2 - 7 公州郡 企劃人力 現況

區 分	計	職 種					學 歷				職 務 教 育					出 身 地	
		行政	農林	土木	雇傭員	其他	國卒 以下	中卒	高卒	專門大 以 上	1回 以下	2回	3回	4回	5回 以上	自郡	他郡
企劃豫算係	7	3		2	2				7		2	1	2	1	1	7	
地域計劃係																	
文化公報係	5	2			3		1	1	3		3		1		1	4	1
行 政 係	9	5			4		1		8		5	2	1		1	6	3
새 마을 係	5	3		1	1		1	1	3		1		3		1	4	1
稅 政 係	5	3			2		1		4		1	1			3	5	
福 祉 係	3	3							3					2	1	3	
產業行政係	4	1	2		1		2		2		1		1	1	1	4	
植 樹 係	8		6		2				8		2	2			4	5	3
管 理 係	2	2					2							1	1	2	
民防衛係	7	2			1	4	2	1	3	1	2	2		1	2	7	
計 (%)	55 (100)	24 (43.6)	8 (14.5)	3 (5.5)	16 (29.1)	4 (7.3)	10 (18.2)	3 (5.5)	41 (74.5)	1 (1.8)	17 (30.9)	8 (14.5)	8 (14.5)	6 (10.9)	16 (29.2)	47 (85.5)	8 (14.5)

나) 靑松郡

청송군에 있어서의 企劃人力에 관해서도 전술한 강진 경우와 같이 11개 부서를 중심으로 볼 때, 職種別, 學歷別, 職務教育別 및 出身地別 현황은 다음과 같다 <表 2-6>.

職種別로서는 총 55명 중 고용원이 3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행정직(32.7%) 농림직(16.4%), 토목직(10.9%), 통신 및 기타(각 1.8%)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學歷別로는 고졸이 6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졸(14.5%), 국졸이하(10.9%) 및 전문대이상(9.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職務教育別로는 1회이하가 61.8%나 되고, 2회가 23.7%, 3회가 7.3%, 4회가 3.6% 및 5회 이상이 3.6%이었다. 出身地別로는 전체(100%)가 自郡出身이었다.

다) 公州郡

公州郡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職種別에 있어서는 행정직이 전체 55명 중 4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용직(29.1%), 농림직(14.5%), 토목직(5.5%), 기타(7.3%)의 순을 보이고 있고 學歷別로는 고졸(74.5%), 국졸이하(18.2%), 중졸(5.5%) 전문대이상(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職務教育回數別로는 1회이하(30.9%) 5회이상(29.2%), 2회(14.5%), 3회(14.5%) 및 4회(10.9%)의 순이며, 出身地別로는 自郡이 85.5%, 他郡은 14.5%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表 2-7>.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개군이 모두 출신지별 현황을 제외한 職種別, 學歷別, 職務教育別 등 현황에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③ 部署別 人力現況

3개군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公務員數의 配置實態를 살펴보기 위해 1985年度 한 해 동안의 總業務處理件數와* 擔當人員數를 비교하여 파악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2-8, 2-9, 2-10 참조>.

* 여기서 總業務處理件數란 1985年度 한 해 동안의 總文書處理件數와 總出張件數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表 2 - 8 青松郡의 業務口과 人力現況, 1985

부 서 별		인원수	문서처리현황		출장현황		총 계	
실 과 별	계 별		총건수	1인당 건 수	총건수	1인당 건 수	총건수	1인당 건 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	5	170	34	425	85	595	119
내 무 과	행 정 계	5	813	163	359	72	1,172	235
	기획예산계	4	146	37	343	86	489	123
	사무통계계	6	158	26	578	96	736	122
	감 사 계	2	317	159	220	110	537	269
	소 계	17	1,434	84	1,500	88	2,934	172
새 마을 과	새 마을 계	6	471	79	379	63	850	142
	개 발 계	3	121	40	286	95	407	135
	국토미화계	3	270	90	249	83	519	173
	소 계	12	862	72	914	76	1,776	148
재 무 과	세 정 계	5	484	97	789	158	1,273	255
	경 리 계	3	518	104	143	48	661	152
	평 가 계	3	113	38	270	90	383	128
	지 적 계	3	334	111	183	61	517	172
	소 계	14	1,449	104	1,385	99	2,834	203
사 회 과	복 지 계	4	345	86	329	82	674	168
	위 생 계	3	571	190	429	143	1,000	333
	부녀청소년계	3	110	37	414	138	524	175
	소 계	10	1,026	103	1,172	117	2,198	220
산 업 과	산업행정계	3	266	89	517	172	783	261
	농 사 계	5	512	102	704	141	1,216	243
	양 정 계	3	228	76	306	102	534	178
	축 산 계	2	105	53	256	128	361	181
	잠 특 계	3	171	57	554	185	725	242
	소 계	16	1,282	80	2,337	146	3,619	226
산 림 과	식 수 계	10	237	24	774	77	1,011	101
	보 호 계	7	198	28	488	70	686	98
	소 계	17	435	26	1,262	74	1,697	100
건 설 과	관 리 계	4	641	160	522	131	1,163	291
	농 지 계	5	208	42	691	138	899	180
	토 목 계	6	205	34	736	123	941	157
	지역계획계	3	87	29	453	151	540	180
	주 택 계	3	99	33	444	148	543	181
	소 계	21	1,240	59	2,846	136	4,086	195
민 방 위 과	민 방 위 계	5	233	47	349	70	582	117
	교육훈련계	2	130	65	123	62	253	127
	병 사 계	2	210	105	123	62	333	167
	소 계	9	573	64	595	66	1,168	130

資料: '85 青松郡

表 2 - 9 康津郡의 業務課과 人力現況, 1985

부 서 별		인원수	문서처리현황		출 장 현 황		총 계	
실 과 별	계 별		총건수	1인당 건 수	총건수	1인당 건 수	총건수	1인당 건 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	7	298	43	668	95	966	138
내 무 과	행정계	6	2,777	463	576	96	3,353	559
	사무통계계	6	710	118	309	52	1,019	170
	기획예산계	3	205	68	176	59	381	126
	감사계	2	453	227	142	71	595	298
	소 계	17	4,145	244	1,203	71	5,348	315
새 마을 과	새 마을 계	4	740	185	481	120	1,221	305
	개발계	2	210	105	195	98	405	203
	국토미화계	3	201	67	215	72	416	139
	소 계	9	1,151	128	891	99	2,402	229
재 무 과	세 정 계	3	160	53	775	258	935	311
	경 리 계	5	840	168	267	53	1,107	221
	평 가 계	3	927	309	141	47	1,068	356
	세외수입계	2	751	376	60	30	811	406
	지 적 계	4	518	130	79	20	597	150
	소 계	17	3,196	188	1,322	78	4,518	266
사 회 과	복 지 계	2	881	441	368	184	1,249	625
	의료보호계	2	506	253	280	140	786	393
	위 생 계	3	913	304	293	98	1,206	402
	부녀청소년계	4	400	100	389	97	789	197
	소 계	11	2,700	245	1,330	121	4,030	366
농 산 과	산업행정계	2	676	338	235	118	911	456
	농 사 계	4	632	158	548	137	1,180	295
	특 작 계	1	260	260	109	109	369	369
	소 계	7	1,568	224	892	127	2,460	351
산 림 과	식 수 계	6	325	54	1,675	279	2,000	333
	보 호 계	6	2,511	419	1,683	281	4,194	700
	소 계	12	2,836	236	3,358	280	6,194	516
식 산 과	양 정 계	5	3,519	703	457	91	3,976	794
	축 산 계	6	656	109	384	64	1,040	173
	잠 업 계	2	102	51	233	117	335	168
	수 산 계	7	1,015	145	1,030	147	2,045	292
	소 계	20	5,292	265	2,104	105	7,396	370
건 설 과	관 리 계	7	543	78	1,251	179	1,794	257
	주 택 계	4	482	121	582	146	1,064	267
	농 지 계	5	1,087	217	877	175	1,964	392
	토 목 계	4	681	170	991	248	1,672	418
	지역계획계	3	236	79	298	99	534	178
	소 계	23	3,029	132	3,999	174	7,028	306
민 방 위 과	민 방 위 계	5	809	162	532	106	1,341	268
	병 사 계	2	744	372	544	272	1,288	644
	교육훈련계	2	434	217	135	68	569	285
	소 계	9	1,987	221	1,211	135	3,198	356

資料 : '85 康津郡

表 2 - 10 公州郡의 業務口과 人力現況, 1985

부 서 별		인원수	문서처리현황		출 장 현 황		총 계	
실 과 별	계 별		총건수	1인당 건 수	총건수	1인당 건 수	총건수	1인당 건 수
문화공보실	공 보 계	5	501	100	166	33	667	133
	문화관광계	5	1,033	207	101	20	1,134	227
	소 계	10	1,534	153	267	27	1,801	180
내 무 과	행 정 계	9	2,597	289	280	31	2,877	320
	사무통계계	16	1,932	121	177	11	2,109	132
	기획예산계	7	231	33	149	21	380	54
	감 사 계	2	438	219	54	27	492	246
	소 계	34	5,198	153	660	19	5,858	172
새 마을 과	새 마을 계	5	813	163	290	58	1,103	221
	개 발 계	3	491	164	177	59	668	223
	국도미화계	3	448	149	180	60	628	209
	소 계	11	1,752	159	647	59	2,399	218
재 무 과	세 정 계	5	1,064	213	267	53	1,331	266
	경 리 계	5	886	177	227	45	1,113	222
	평 가 계	3	202	67	202	67	404	134
	지 적 계	4	372	93	203	51	575	144
	소 계	17	2,524	148	899	53	3,423	201
사 회 과	복 지 계	3	1,387	462	228	76	1,615	538
	위 생 계	4	1,213	303	260	65	1,473	368
	부녀청소년계	3	475	158	201	67	676	225
	소 계	10	3,075	307	689	69	3,764	376
농 산 과	산업행정계	4	992	248	225	56	1,217	304
	농 사 계	4	767	192	332	83	1,099	275
	잡 특 계	3	598	199	239	80	837	279
	소 계	11	2,357	214	796	72	3,153	286
산 림 과	식 수 계	8	810	101	1,303	163	2,113	264
	보 호 계	5	834	167	1,053	211	1,887	378
	소 계	13	1,644	126	2,256	181	4,000	307
식 산 과	양 정 계	5	1,891	378	804	161	2,695	539
	상공운수계	3	2,206	735	720	240	2,926	975
	축 산 계	4	1,424	356	864	216	2,288	572
	소 계	12	5,521	460	2,388	199	7,909	659
건 설 과	관 리 계	2	232	116	344	172	576	288
	농 지 계	4	315	79	324	81	639	160
	토 목 계	9	144	16	198	22	342	38
	소 계	15	691	46	866	58	1,557	104
민 방 위 과	민 방 위 계	7	2,548	364	120	17	2,668	381
	병 사 계	2	1,490	745	175	88	1,665	833
	교육훈련계	2	875	438	112	56	987	494
	소 계	11	4,913	447	407	37	5,320	484

資料 : '85 公州郡

앞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 個郡의 業務量은 각 부서간에 차이가 많다. 이에 대한 인원의 배치 또한 일관성이 없어 1인당 業務量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業務量이란 文書處理件數와 出張件數를 말한다.

먼저 靑松郡의 경우를 보면, 係單位 業務量이 1985년 한해 동안 253건(교육훈련계)에서 1,273건(세정계)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單位業務의 비중이 係間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와 같은 業務量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유는 못 될 것이다.

1人當 業務量으로 볼 때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98건(보호계)에서 333건(위생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康津郡의 경우는, 係單位 業務量은 335건(잠업계)에서 4,194건(보호계)에 이르고, 1人當 業務量은 126건(기획예산계)에서 794건(양정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公州郡의 경우는 係單位 業務量에 있어 342건(토목계)에서 2,926건(상공운수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1인당 業務量에 있어서는 38건(토목계)에서 975건(상공운수계)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商工運輸係에는 土木係의 경우 보다 認許可業務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業務量面에서 많은 件數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商工運輸의 業務量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현지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볼 때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는 3 個郡의 절대인력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 業務量에 따른 適正人力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가중되는 인력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 地方政府의 事務

그러면 地方政府가 수행하는 事務는 어떤 것들인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法人으로서의 地方自治團體에 부여된 事務의 종류를 固有事務, 團體委任事務 및 機關委任事務의 구분방식에 입각하여 그 배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金雲泰 外 1982, 165 - 166; 韓垣澤 1980, 345 - 348).

① 事務配分の基準

현재 우리나라는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 기능배분에 있어 包括的委任方式을 취함으로써, 그 배분상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1961년에 제정된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에 따라 地方議會가 해산되고, 地方議會의 機能을 次上級團體의 長이 대행함으로써 地方政府(郡)의 事務에 대한 中央(내지 道)의 監督權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地方政府事務는 과연 어느 것이 地方固有의 事務이고 어느 것이 團體委任事務이며, 機關委任事務인지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시와 감독을 받아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나하나의 事務에 대해 확실히 事務區分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地方政府事務의 구분문제는 地方政府의 機能의 範圍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가의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地方自治가 이루어진 후 地方政府가 적극적으로 自己地方固有의 事務를 中央政府에 主張하고 中央政府와의 진지한 교섭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地方政府의 事務配分實態의 대강이라도 점검해보기 위한 시도를 함에 있어 우선 學說로 제시되어 있는 事務配分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韓垣澤 1980, 348-350).

가) 事務의 性質 및 觀念上의 區別

(1) 固有事務

① 地方自治團體의 存立유지에 관한 事務

- 自治立法에 관한 사무
- 自治組織에 관한 사무
- 財政에 관한 사무

② 公共福祉에 관한 사무

- 토목사업으로서 사업의 범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국한된 사무
- 당해 자치단체의 내부지역에 관한 도시계획 및 그에 관련

된 사무

- 당해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공기업·공공시설에 관한 사무
- 당해 자치단체내의 위생·청결사무
- 당해 자치단체 스스로 계획한 특수시책이나 사업에 관련 된 사무

(2) 團體委任事務

- ①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었거나 소속된 사무(地方自治法 第 3 條 및 第 103 條)
- ② 반드시 개별적 법적근거를 요하는 사무
- ③ 직접적으로 당해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3) 機關委任事務

- ① 地方自治法 第 102 條를 일반근거로 하여 法令 및 일반통칙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
- ②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
- ③ 사무를 처리할 때 委任者인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

나) 法令上 委任形式에 의한 區別

(1) 固有事務

- ① 法令上 「地方自治團體는 ○○를 施行한다」는 規定이 있으면 대부분 固有事務로 간주한다.
- ② 現行法令上 「道知事, 市長, 郡守가 ○○를 施行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된 사무라 할지라도 事務의 性質이 당해 自治團體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事務는 固有事務로 간주 한다.

(2) 團體委任事務

- ① 法令上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地方自治團體에게 委任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 ② 法令上 「直轄市, 道, 郡에 ○○所(委員會, 院)를 둔다」는 규정을 둠과 아울러 事務內容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경우
- ③ 法令上에 「○○部, 서울特別市長, 부산직할시장, 市長, 郡守가 ○○를 施行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事務가 국가적 이해관계와 아울러 地方的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3) 機關委任事務

- 各種 特別法上 「道知事, 市長, 郡守가 ○○를 施行한다」는 규정과 직권위임이란 규정을 두고, 地方自治團體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다) 法令上 경비부담관계에 의한 區別

(1) 固有事務

- 補助金の 성격이 장리적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동시에 法令에 명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사무

(2) 團體委任事務

- 補助金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法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3) 機關委任事務

- 補助金이 法令의 規定에 의한 全額補助로서 의무적인 위탁금 또는 交付金의 성격을 가진 사무

라) 法令上 감독관계에 의한 區別

(1) 固有事務

- ① 소극적 감독(合法性감독, 사후감독)만 받는 사무
- ② 法令上 明文規定이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
- ③ 감독권행사는 소극적감독에 국한되며 위법한 경우에만 取消, 停止가 허용되는 사무

(2) 團體委任事務

- 소극적감독 및 적극적감독(합목적성감독, 사전감독)을 받는 사무

(3) 機關委任事務

- 적극적감독을 받는 사무로서 委任事務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명문의 規定이 없더라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독권행사시 委任事務에 대하여 적극적감독(사전감독, 지휘명령)도 인정되며,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한 경우도 취소·정지될 수 있는 사무

② 事務配分 現況

위에 제시된 事務配分の 기준에 입각하여 郡單位地域의 事務에 대해 地方公務員들의 판단을 기초로 한 地方政府事務의 대체적인 배분실태를 살펴보면* 다음〈表 2-1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郡單位를 중심으로 볼 때, 地方政府의 固有事務는 전체의 37.7%, 團體委任事務는 15.9% 그리고 機關委任事務는 46.6%에 해당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地方政府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전체사무의 약 38%정도가 地方政府 자체적으로 처리할 固有事務이고 나머지 62%정도에 이르는 事務들은 委任(團體委任 및 機關委任)事務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地方政府에 委任事務가 그렇게 많은가를 따지기 전에, 과연 地方政府의 固有事務로 파악된 38%정도의 업무라도 실질적으로 地方政府 스스로의 意思決定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가의 사실에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1985년도 한해 동안 처리된 地方政府의 事務件數를 企劃業務와 執行業務로 구분하여 그 自律性 與否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表 2-1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여기서 郡單位地域의 事務에 대한 總目錄의 作成이 필요한데, 이에는 韓國地方行政研究所에서 刊行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目錄(1985)이 크게 도움이 되었고, 그 외에 郡單位 自治法規集에 나타나 있는 職制上 事務分掌內容, 委任專決規定 및 自體實務를 위해 運用되고 있는 郡單位의 各 部署別, 擔當人員別 事務分掌 命令綴 등이 참조되었다.

(附錄參照)

表 2 - 11 地方政府의 事務配分 現況(康津郡), 1985

부 署 別		單位業務 總 件	配 分 實 態					
室 課 所	係		固有事務		團體委任事務		機關委任事務	
			件	%	件	%	件	%
총 계		1,394	525	37.66	222	15.93	647	46.41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	37	15	40.54	-	-	32	59.46
내 무 과	행정 계	126	96	76.19	7	5.56	23	18.25
	서무통계계	36	15	41.67	-	-	21	58.33
	기획예산계	28	25	89.29	-	-	3	10.71
	감 사 계	15	13	86.67	-	-	2	13.33
	소 계	205	149	72.68	7	3.42	49	23.90
새 마을 과	새 마을 계	31	26	83.87	-	-	5	16.13
	개 발 계	5	1	20.0	-	-	4	80.0
	국토미화계	3	3	100	-	-	-	-
	소 계	39	30	76.92	-	-	9	23.08
재 무 과	세 정 계	36	27	75.0	-	-	9	25.0
	경 리 계	35	29	82.86	-	-	6	17.14
	평 가 계	46	33	71.74	-	-	13	28.26
	세외수입계	11	7	63.64	-	-	4	36.36
	지 적 계	23	-	-	-	-	23	100
	소 계	151	96	63.58	-	-	55	36.42
사 회 과	복 지 계	50	2	4.0	32	64.0	16	32.0
	의료보호계	5	-	-	5	100	-	-
	위 생 계	50	10	20.0	1	2.0	39	78.0
	부녀청소년계	39	3	7.69	36	92.31	-	-
	소 계	144	15	10.42	74	51.39	55	38.19
농 산 과	산업행정계	70	10	14.29	1	1.43	59	84.28
	농 사 계	42	8	19.05	15	35.71	19	45.24
	특 작 계	11	4	36.36	-	-	7	63.64
	소 계	123	22	17.89	16	13.01	85	69.1
산 림 과	식 수 계	21	5	23.81	-	-	16	76.19
	보 호 계	22	3	13.64	-	-	19	86.36
	소 계	43	8	18.6	-	-	35	81.4

部 署 別		單位事務 總 件	配 分 實 態					
室 課 所	係		固 有 事 務		團體委任事務		機關委任事務	
			件	%	件	%	件	%
식 산 과	양 정 계	37	1	2.7	-	-	36	97.3
	축 산 계	57	11	19.3	2	3.51	44	77.19
	잠 업 계	11	5	45.45	-	-	6	54.55
	수 산 계	55	2	3.64	-	-	53	96.36
	소 계	160	19	11.87	2	1.25	139	86.88
건 설 과	관 리 계	95	9	9.47	26	27.27	60	63.16
	주 택 계	32	28	87.5	-	-	4	12.5
	농 지 계	35	8	22.86	-	-	27	77.14
	토 목 계	99	81	81.82	7	7.07	11	11.11
	지역계획계	21	13	61.91	2	9.52	6	28.57
소 계	282	139	49.29	35	12.41	108	38.3	
민 방 위 과	민 방 위 계	52	25	48.08	-	-	27	51.92
	병 무 계	25	-	-	-	-	25	100
	교육훈련계	11	-	-	-	-	11	100
	소 계	8	25	28.41	-	-	63	71.59
농촌지도소	지 도 계	8	1	12.5	7	87.5	-	-
	작 물 계	13	-	-	13	100	-	-
	주 산 지 계	5	-	-	5	100	-	-
	지역개발계	8	2	25.0	6	75.0	-	-
	소 계	34	3	8.82	31	91.18	-	-
보 건 소	보건행정계	17	1	5.88	14	82.35	2	11.77
	가족보건계	19	-	-	19	100	-	-
	예방의약계	52	3	5.77	24	46.15	25	48.08
	소 계	88	4	4.55	57	64.77	27	30.68

資料：康津郡

즉 地方에서의 企劃業務는 全体業務의 약 5%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 95% 정도에 해당되는 업무가 執行中心의 업무이며, 여기에서 企劃業務라는 것도 거의가 中央政府의 지침 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他律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執行業務에 있어서도 自律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9%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地方

表 2 - 12 地方政府의 業務處理 現況, 1985

部 署 別	業務量 (發送 文書) 總 計	業 務 性 格 *					
		企 劃 業 務			執 行 業 務		
		計	自律	他 律	計	自律	他 律
文化公報室	92	8(9)	•	8(9)	84(91)	8(9)	76(82)
內 務 課	672	32(5)	•	32(5)	640(95)	78(12)	562(83)
새 마을 課	462	82(18)	•	82(18)	380(82)	87(19)	293(63)
財 務 課	630	9(1)	•	9(1)	621(99)	103(16)	518(83)
社 會 課	413	16(4)	•	16(4)	397(96)	175(42)	222(54)
產 業 課	810	31(4)	•	31(4)	779(96)	84(11)	695(85)
山 林 課	279	14(5)	•	14(5)	265(95)	150(54)	115(41)
建 設 課	528	25(5)	•	25(5)	503(95)	138(26)	365(69)
民防衛課	466	17(4)	•	17(4)	449(96)	9(2)	440(94)
總 計	4,352	234(5)	•	234(5)	4,118(95)	832(19)	3,286(76)

* 여기서 「自律」이란 地方政府의 自體的 判斷에 의해 「地方政府 裁量」으로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말하며, 「他律」이란 中央政府 내지 道の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말한다.

資料 : 慶北, 靑松郡

政府에 있어 現在 固有事務로 판단되고 있는 事務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自體的 意思決定에 의한 計劃樹立과 執行業務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問題點의 綜合的 檢討

가. 問題點의 綜合

지금까지 언급된 것이 地方行政에 있어서의 理念과 主体 및 手段의 시각으로 본 실태이며 문제점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요인들이 地方行政을 하나의 限界狀況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限界狀況이란 地方政府가 자기 지역 住民의 意思를 行政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地方政府 스스로 자립할 수 없어 中央政府에 의존하며 中央政府의 意思에 맹종하는 地方行政의 실질기능의 불능상태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현재의 地方行政理念과 主体 및 手段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地方行政理念의 문제이다. 이는 政治・社會的 傳統에 입각한 體制維持的 集權性 내지 合法性의 강조와 開發途上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經濟發展 우선의 効果性強調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集權性 내지 合法性의 강조는 그 스스로가 이미 中央政府中心의 行政體制를 강조하는 것이며, 여기에 效果主義를 추가하여 中央政府爲主의 行政體制를 더욱 노골화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行政이 國家全體的인 입장에서의 効果性 제고에만 초점을 둬으로써 地方的 사정은 일단 무시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누적됨으로써 地方政府行政의 實質的機能은 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둘째는 地方行政主体의 문제이다.

이는 地方行政理念에서 연유되는 문제로서, 集權性 내지 合法性強調과 效果主義的 行政理念의 달성을 위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현재의 地方行政理念下에서는 行政力の 中央集中 내지 中央集權의 강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地方政府에 대한 中央政府의 統制強化는 같은 銅錢의 다른 면에 불과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地方政府의 行政活動은 전반적으로 統制되고 있고, 그로 인해 地方政府가 地方行政에 있어 당연히 누려야 할 自治權의 범위는 극도로 좁혀지게 된 것이다.

셋째는 地方行政手段의 問題이다.

여기서 말하는 地方政府의 行政手段이란 地方政府의 行政組織機構, 人力 및 事務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手段의 문제에서 먼저 組織機構를 보면, 현재 地方政府의 전반적 機構形態는 執行中心體制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자기의 활동에 대해 企劃하고 이에 따라 執行해 나가는 自律

行政體制란 너무나 빈약한 것이 현재 地方政府組織의 실정이다.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郡單位 行政에 있어 특히 행정의 主導者인 군수의 지위가 심히 불안정하며 自發的이고 능동적으로 地方行政을 수행할 수 있는 專門能力을 보유한 인력은 태무한 상태이고 그나마 인력의 절대수에 있어서도 태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地方政府의 事務 또한 機關委任事務爲主이고 固有事務로 인정되는 것들도 自體的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中央政府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 地方政府 行政組織 強化의 必要性

결국 현재의 地方行政理念과 主体 및 手段 아래서 中央政府의 機能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地方政府의 機能은 계속적으로 약화되어, 地方政府의 行政機能은 더욱 더 地方의 현실과 유리되는 惡循環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은 根本的으로 地方政府의 일을 地方政府가 알아서 自律的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中央政府가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地方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심각한 地方政府機能 취약성의 문제는 中央政府의 간섭과 統制에 의해 결과된 것이므로, 현재 스스로 자립할 기력을 상실한 대부분의 地方政府에 대한 책임은 일단 中央政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中央政府가 종래와 같이 慈惠를 베푸는 자세로서가 아니라 반성하는 자세로, 앞으로 地方政府의 機能活性化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地方行政을 中央政府의 시각중심으로만 보려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地方政府 내지 住民의 입장을 주로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즉, 中央政府의 통제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組織을 중심으로 地方政府의 機能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地方政府의 실질적 機能을 중심으로 組織이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地方의 自律機能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地方行政의 合理化에 따른 구체적 効率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도 되는 것이다. 통제중심의 消極的 地方行政에서, 실제기능 중심의 積極的 開發

行政으로의 轉換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地方政府와 住民 스스로가 地域開發의 主体임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地域開發의 主体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自律的이고 積極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地方政府組織體制를 능동적으로 정비·운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종래와 같은 地方政府行政의 지엽적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왜냐면, 地方行政理念과 主体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地方行政手段만이 전환된다면 그 결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고, 主体와 手段이 전환된다 하여도 理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않아 形式化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인 方案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전체적 관계 속에서 地方行政理念, 地方行政主体 및 地方行政手段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強化를 위한 地方行政組織體制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 地方行政理念과 主体 및 手段을 동시에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으나 현실적인 전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환의 방향은 지엽적인 것에서부터 차차로 근본적인 것에 이르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第 3 章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強化를 위한 體制의 改編

1. 地方行政手段의 轉換

여기에서는, 먼저 地方政府行政事務의 재배분과 이에 인각한 機構의 改編 및 人力의 강화에 의한 전환을 모색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 관점은, 中央政府의 行政遂行上 편의에 따라 만들어진 地方政府組織을 중심으로 地方政府의 현실적 기능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組織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地方行政事務의 再配分

최소한 地方政府는 地方固有의 事務에 대해서만은 地方政府가 自律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民主主義와 地方自治를 지향하는 한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작이고 조건이다. 그리하여 團體委任 및 機關委任事務 가운데에서도 地方固有事務化되어야 할 事務들은 마땅히 地方政府에게로 이양하여 地方政府機能의 범위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事務의 再配分이란 현재 郡에서 수행하고 있는 事

務에 대하여 中央과 地方政府 간의 再配分을 뜻한다. 이를 事務의 垂直的 再配分이라고 한다면, 郡自體內에서 各部署別 事務의 水平的 再配分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水平的 再配分은 단기적, 전체적으로 이루기 보다는, 장기적, 부분적 내지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郡單位事務의 中央 - 地方政府間의 垂直的 再配分을 위하여 먼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再配分의 원칙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再配分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① 事務再配分の 原則

事務再配分の 原則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다소 있으나, 여기서는 샤프(Sharp) 研究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地方政府事務의 再配分을 시도하였으며, 여기에 현재 政府에서 검토중인 地方自治法改正案 第 8條~第 11條(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내용을 참조하였다. 原則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現地性의 原則이다.

이는 地方行政을 民主的으로 수행하여 住民參與와 住民統制가 용이한 最低地方行政階層(基礎自治團體)에 가능한 한 많은 사무를 배분하고, 특히 住民便宜의 관점에서 地域住民의 생활에 밀착된 실시사무를 그 신변에 가까운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住民參與의 原則, 地方自治尊重 및 市·郡 優先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둘째는 綜合性의 原則이다.

이는 行政事務가 行政의 綜合調整機能이 발휘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行政事務는 特別地方行政機關보다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에 배분하며,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조정사무를 중간 자치단체(道)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地域綜合性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세째는 經濟性의 原則이다.

이는 行政機能이 각 단체의 규모, 행재정능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최소의 처리경비로 住民에게 최대의 성과를 부여할 수 있는 地方階層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行政의 能率的 執行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表 3 - 1 地方政府(郡單位) 事務의 再配分 方案

부 서		단 위 종 계	배분실태 ^o			재 배 분 방 안 I ^{oo}												재 배 분 방 안 II ^{ooo}									비고
						재 배 분 내 용						재배분결과			재 배 분 내 용						재배분결과						
			A	B	C	A→B	A→C	B→A	B→C	C→A	C→B	A	B	C	A→B	A→C	B→A	B→C	C→A	C→B	A	B	C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	37	15	-	22	-	6	-	-	1	-	10	-	27	-	1	-	-	1	-	15	-	22				
	(소 계)	37	15	-	22	-	6	-	-	1	-	10	-	27	-	1	-	-	1	-	15	-	22				
		(100)	(40.54)		(59.46)							(27.03)		(72.97)						(40.54)		(59.46)					
내 부 과	행정계	126	96	7	23	3	10	-	-	5	2	88	12	26	2	1	1	-	7	-	101	8	17				
	사무통계계	36	15	-	21	-	1	-	-	-	-	14	-	22	-	1	-	-	1	-	15	-	21				
	기획예산계	28	25	-	3	-	-	-	-	-	-	25	-	23	-	-	-	-	1	-	26	-	2				
	감사계	15	13	-	2	-	-	-	-	1	-	14	-	1	-	-	-	-	1	-	14	-	1				
	(소 계)	205	149	7	49	3	11	-	-	6	2	141	12	52	2	2	1	-	10	-	156	8	41				
		(100)	(72.68)	(3.42)	(23.90)							(68.78)	(5.85)	(25.37)							(76.1)	(3.9)	(20.0)				
새마을과	새마을계	31	26	-	5	2	2	-	-	-	3	22	5	4	-	-	-	-	2	-	28	-	3				
	개발계	5	1	-	4	-	1	-	-	4	-	4	-	1	-	-	-	-	4	-	5	-	-				
	국토미화계	3	3	-	-	-	-	-	-	-	-	3	-	-	-	-	-	-	-	-	3	-	-				
	(소 계)	39	30	-	9	2	3	-	-	4	3	29	5	5	-	-	-	-	6	-	36	-	3				
		(100)	(76.92)		(23.08)							(74.36)	(12.82)	(12.82)							(92.3)		(7.7)				
재 무 과	세정계	36	27	-	9	-	1	-	-	1	-	27	-	9	-	1	-	-	1	-	27	-	9				
	경리계	35	29	-	6	-	-	-	-	-	-	29	-	6	-	-	-	-	-	-	29	-	6				
	평가계	46	33	-	13	-	-	-	-	-	-	33	-	13	-	-	-	-	-	-	33	-	13				
	세외수입계	11	7	-	4	-	-	-	-	-	2	7	2	2	-	-	-	-	2	-	9	-	2				
	지적계	23	-	-	23	-	-	-	-	-	-	-	-	23	-	-	-	-	-	-	-	-	23				
	(소 계)	151	96	-	55	-	1	-	-	1	2	96	2	53	-	1	-	-	3	-	98	-	53				
		(100)	(63.58)		(36.42)							(63.58)	(1.32)	(35.10)							(64.9)		(35.1)				
사 회 과	복지계	50	2	32	16	-	-	3	28	2	1	7	2	41	-	-	31	1	15	-	48	-	2				
	의료보호계	5	-	5	-	-	-	-	-	-	-	-	5	-	-	-	5	-	-	-	5	-	-				
	위생계	50	10	1	39	-	-	-	1	15	-	25	-	25	-	-	1	-	28	-	39	-	11				
	부녀청소년계	39	3	36	-	-	-	23	12	-	-	26	1	12	-	-	36	-	-	-	39	-	-				
	(소 계)	144	15	74	55	-	-	26	41	17	1	58	8	78	-	-	73	1	43	-	131	-	13				
		(100)	(10.42)	(51.39)	(38.19)							(40.28)	(5.55)	(54.17)							(91.0)		(9.0)				

表 3 - 1 地方府(郡單位) 公務의 再配分 方案(계속)

부 서		단 위 종 계	배 분 실태 ^o			재 배 분 방 안 I ^{oo}												재 배 분 방 안 II ^{ooo}												비고
						재 배 분 내 용						재 배 분 결 과						재 배 분 내 용						재 배 분 결 과						
			A	B	C	A→B	A→C	B→A	B→C	C→A	C→B	A	B	C	A→B	A→C	B→A	B→C	C→A	C→B	A	B	C							
농 산 과	산업행정계	70	10	1	59	-	4	-	1	5	-	11	-	59	-	2	1	-	8	-	17	-	53							
	농 사 계	42	8	15	19	-	1	12	1	5	-	24	2	16	-	-	14	1	15	-	37	-	5							
	작 작 계	11	4	-	7	-	-	-	-	2	-	6	-	5	-	-	-	-	2	-	6	-	5							
	(소 계)	123	22	16	85	-	5	12	2	12	-	41	2	80	-	2	15	1	25	-	60	-	63							
		(100)	(17.89)	(13.01)	(69.1)							(33.33)	(1.63)	(65.04)							(48.78)		(51.22)							
산 림 과	식 수 계	21	5	-	16	-	4	-	-	-	-	1	-	20	-	1	-	4	-	8	-	13								
	보 호 계	22	3	-	19	-	3	-	-	-	-	-	-	22	-	2	-	-	11	-	12	-	10							
	(소 계)	43	8	-	35	-	7	-	-	-	-	1	-	42	-	3	-	-	15	-	20	-	23							
		(100)	(18.6)		(81.4)							(2.33)		(97.67)							(46.51)		(53.49)							
식 산 과	양 정 계	37	1	-	36	-	1	-	-	3	-	3	-	34	-	-	-	-	11	-	12	-	25							
	축 산 계	57	11	2	44	-	7	-	-	3	-	7	2	48	-	2	2	-	29	-	40	-	17							
	감 업 계	11	5	-	6	-	5	-	-	-	-	-	-	11	-	-	-	-	6	-	11	-	-							
	수 산 계	55	2	-	53	-	-	-	-	2	-	4	-	51	-	-	-	-	28	-	30	-	25							
	(소 계)	160	19	2	139	-	13	-	-	8	-	14	2	144	-	2	2	-	74	-	93	-	67							
	(100)	(11.87)	(1.25)	(86.88)							(8.75)	(1.25)	(90.0)							(58.13)		(41.87)								
건 설 과	관 리 계	95	9	26	60	-	-	10	16	41	-	60	-	35	-	-	10	16	7	-	26	-	69							
	수 태 계	32	28	-	4	-	-	-	-	-	-	28	-	4	-	-	-	-	-	-	28	-	4							
	농 지 계	35	8	-	27	3	3	-	-	4	-	6	3	26	-	3	-	-	4	-	9	-	26							
	토 목 계	99	81	7	11	-	5	6	1	1	-	83	-	16	-	3	6	1	1	-	86	-	14							
	지역계획계	21	13	2	6	-	-	-	2	-	-	13	-	8	-	-	-	2	-	-	13	-	8							
	(소 계)	282	139	35	108	3	8	16	19	46	-	190	3	89	-	6	16	19	12	-	161	-	121							
	(100)	(49.29)	(12.41)	(38.3)							(67.38)	(1.06)	(31.56)							(57.09)		(42.91)								
민 방 위 과	민 방 위 계	52	25	-	27	-	-	-	-	23	-	48	-	4	-	-	-	-	23	-	48	-	4							
	병 무 계	25	-	-	25	-	-	-	-	-	-	-	-	25	-	-	-	-	-	-	-	-	25							
	교육훈련계	11	-	-	11	-	-	-	-	11	-	11	-	-	-	-	-	-	11	-	11	-	-							
	(소 계)	88	25	-	63	-	-	-	-	34	-	59	-	29	-	-	-	-	34	-	59	-	29							
	(100)	(28.41)		(71.59)							(67.05)		(32.95)							(67.05)		(32.95)								

부		단 위 총 계	배 분 실 태*			재 배 분 방 안 I**									재 배 분 방 안 II***									비고
실과소별	계 별		A	B	C	재 배 분 내 용						재 배 분 결 과			재 배 분 내 용						재 배 분 결 과			
						A→B	A→C	B→A	B→C	C→A	C→B	A	B	C	A→B	A→C	B→A	B→C	C→A	C→B	A	B	C	
농촌지도소	지 도 계	8	1	7	-	-	-	-	-	-	-	1	7	-	-	-	7	-	-	-	8	-	-	
	작 문 계	13	-	13	-	-	-	3	7	-	-	3	3	7	-	-	3	7	-	-	3	3	7	
	주 산 지 계	5	-	5	-	-	-	-	5	-	-	-	-	5	-	-	-	5	-	-	-	-	5	
	지역개발계	8	2	6	-	-	-	2	3	-	-	4	1	3	-	-	5	1	-	-	7	-	1	
	(소 계)	34	3	31	-	-	-	5	15	-	-	8	11	15	-	-	15	13	-	-	18	3	13	
		(100)	(8.82)	(91.18)								(23.53)	(32.35)	(44.12)							(52.94)	(8.82)	(38.24)	
보 건 소	보건행정계	17	1	14	2	-	-	1	12	-	-	2	1	14	-	-	14	-	2	-	17	-	-	
	가족보건계	19	-	19	-	-	-	-	19	-	-	-	-	19	-	-	12	7	-	-	12	-	7	
	예방의약계	52	3	24	25	-	2	-	24	-	-	1	-	51	-	1	24	-	10	-	36	-	16	
	(소 계)	88	4	57	27	-	2	1	55	-	-	3	1	84	-	1	50	7	12	-	65	-	23	
		(100)	(4.55)	(64.77)	(30.68)								(3.41)	(1.14)	(95.45)							(73.86)		(26.14)
총 계		1,394	525	222	647	8	56	60	132	129	8	650	46	658	2	18	172	41	235	-	912	11	471	
		(100)	(37.66)	(15.93)	(46.41)							(46.63)	(3.30)	(50.07)							(65.42)	(0.79)	(33.79)	

* A : 고유사무
B : 단체위임사무
C : 기관위임사무

** : 강진군 대상 조사결과

*** : 재배분방안 I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참조한 종합대안

② 事務의 再配分 現況

전술한 원칙하에 현재 固有事務, 團體委任事務 및 機關委任事務로 구분된 地方政府의 郡單位事務들에 대해 全南 康津郡에서 재배분한 결과와, 地方自治法 改正案 第8條~第11條(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를 참조하여 재배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表 3-1>과 같다.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地方政府 郡單位의 單位事務는 재배분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方案Ⅰ과 方案Ⅱ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方案Ⅰ은 康津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서 사무재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區 分	再 配 分 前		再 配 分 後	
	件 數	%	件 數	%
固 有 事 務	525	37.66	650	46.63
團 體 委 任 事 務	222	15.93	46	3.30
機 關 委 任 事 務	647	46.41	698	50.07

여기서 固有事務의 경우는 재배분 전에는 總單位事務件數(1,394건)의 37.66%(525件)이었으나 재배분 후에는 46.63%(650件)로 8.97%가 증가되었고, 團體委任事務는 재배분 전에 15.93%(222件)이었으나 재배분 후에는 3.30%(46件)로 12.63%가 감소되었으며, 機關委任事務는 재배분 전에 46.41%(647件)이었으나 재배분 후에는 50.07%(698件)로 3.6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地方固有事務와 機關委任事務가 다소 증대된 반면, 團體委任事務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團體委任事務가 스스로 國家事務와 地方事務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비의 보조에서 負擔比率의 決定基準이 모호하여 대부분 국가적 입장에서의 편의에 입각한 자의성이 남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事務再配分이 재원의 재배분을 약속하고 있지 않으므로 地方

政府公務員들의 事務再配分 판단에 있어, 團體委任事務 내지 機關委任事務의 固有事務化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政府에서 성안한 地方自治法 改正案 第3節(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내지 11條의 내용과 전술한 事務再配分方案Ⅰ을 참조하여 다시 分類해 본 郡單位事務의 재배분 결과(事務再配分方案Ⅱ)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區 分	再 配 分 前		再 配 分 後	
	件 數	%	件 數	%
固 有 事 務	525	37.66	912	65.42
團 體 委 任 事 務	222	15.93	11	0.79
機 關 委 任 事 務	647	46.41	471	33.79

여기서는 固有事務의 경우, 재배분 전에 37.66%(525件)이었으나 재배분 후에는 65.42%(912件)로 27.76%가 증가되었고, 團體委任事務는 재배분 전 15.93%(222件)이었으나 재배분 결과는 0.79%(11件)로 15.14%가 감소되었으며, 機關委任事務는 재배분전 46.41%(647件)이던 것이 재배분 결과는 33.79%(471件)로 12.6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方案Ⅱ에 의한 재배분 결과는 團體委任事務比率에서 볼 때 방안Ⅰ보다 더욱 감소되고 있다. 이는 地方自治法 改正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먼저 國家와 地方의 事務로 대별하고, 地方事務는 다시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로 나누고 있으므로, 國家事務와 地方事務 外에 團體委任事務라는 것을 별도로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團體委任事務는 일단 地方自治團體에委任된 뒤에는 固有事務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地方團體의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固有事務와 구대여 구별할 실익도 없다고 본다(金雲泰 外, 1983, 193).

결국 地方政府의 事務를 地方의 自治事務와 委任事務로 크게 나누어, 事務의 再配分結果에 대해 方案Ⅰ과 方案Ⅱ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區 分	現 在		再配分方案Ⅰ		再配分方案Ⅱ	
	件	%	件	%	件	%
自治事務	747	53.59	696	49.93	923	66.21
委任事務	647	46.41	698	50.07	471	33.79

이렇게 볼 때 方案Ⅰ에 의하면 재배분결과는 49.93 : 50.07로 自治事務와 委任事務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方案Ⅱ에 의하면 再配分結果는 66.21 : 33.79로 自治事務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住民의 편의 및 복리증진이라는 地方自治法 改正案의 事務處理基本原則(地方自治法 改正案 第8條1項)에 입각해 볼 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동안 地方政府가 地方의 自治事務에 대해서도 地方政府의 自律에 의해서가 아니라 他律的, 受動的으로 中央政府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리해 왔다는 점과, 이제 더욱 증대되는 事務를 地方政府가 실질적으로 自己地域事情에 따라 自律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地方政府의 自律的 機構 및 人力 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地方政府의 行政組織은 이제 그 事務의 대부분을 지역실정에 따라 스스로 판단,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手段으로서의 機構體制와 人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機構改編

地方政府의 組織構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中央政府와 1階層으로 연결되면서 道와 同一한 行政機能的 성격을 갖는 特別市, 直轄市와 같은 都市政府의 形態이고, 다른 하나는 中央—道—市·郡—邑·面으로 연결되는 農村地方政府의 形態이다. 여기서 말하는 地方政府의 組織構造는 후자의 경우에서 특히 郡單位에 한정되고 있다. 郡의 경우에 있어서는 都市政府의 行政體制(都市計劃, 建設, 保健社會 등 중심)와는 달리, 現在 內務, 農林, 殖産系統의 行政組織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行政組織의 內部編制는 人口規模, 地域的, 産業的 特性, 行政·財政規模와 能力 등에 따라 再調整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술한 事務再配分方案Ⅱ에 입각해 보면 새로운 行政機能의 地方移讓에 따라 늘어나는 地方政府事務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地方行政組織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開發行政體制로 새로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地方政府의 組織機構를 自發적이고 能動的 計劃樹立機能을 강화한 企劃體制와 地方特性別 合理的, 效率的 執行體制로 구분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전자에 관하여는 企劃機構의 신설·강화의 문제이며, 후자에 관하여는 현재의 執行的 機構들에 대한 地域事情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조정·개편이다. 즉 현재 郡의 全般的 企劃의 차원에서 통합과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존의 執行中心 組織體制를, 새로이 企劃과 執行을 조화있게 추진할 수 있는 組織體制로 整備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현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企劃體制 및 執行體制를 합리적으로 조정 강화하는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企劃機構 改編模型

〈圖 3-1 : 代案Ⅰ〉의 構成上的 특징은 ① 綜合企劃室의 新設, ② 綜合企劃室內에 企劃係(총래의 企劃豫算係에서 분리), 豫算係, 評價係 및 統計係의 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綜合企劃室長은 地方事務官으로 보하며, 統計係는 綜合企劃室에서 제외할 것인가, 또는 評價係와 統計係의 機能을 통합하여 監査係의 형태로 둘 것인가 등의 문제는 지역별로 신축성 있게 운영함이 좋을 것이다〈圖 3-1 참조〉.

이 模型의 장점으로서는 무엇보다 郡의 전반적 機能에 대해, 企劃, 豫算, 評價 및 統計 등의 業務가 連繫됨으로써 全體的 計劃樹立 및 추진을 能動的이며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郡의 전반적 企劃을 擔當할 수 있는 專門的 能力을 보유한 人力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人力을 충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代案Ⅱ의 構成上的 특징은 ① 代案Ⅰ에서 제시된 綜合企劃室은 신설하지 않고, ② 그 안에 編制될 企劃係, 豫算係, 評價係 및 統計係 등을 副郡守直屬으로 둔다는 점이다. 이 模型의 長點으로서는

圖 3 - 1 郡單位 企劃機構 改竄案(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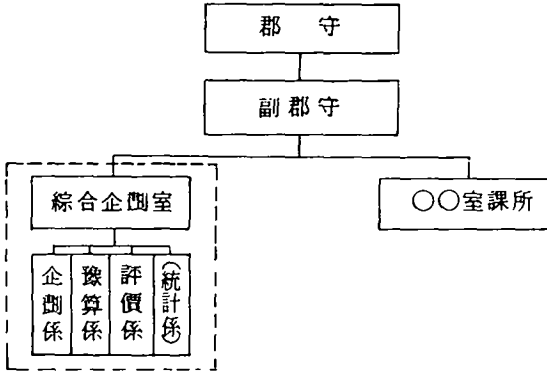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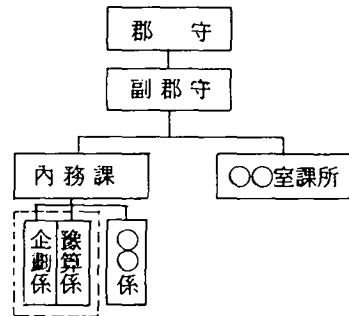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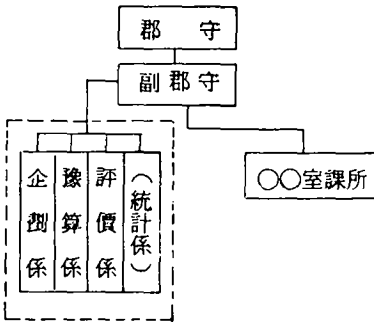


圖 3 - 2 郡單位 企劃機構 改竄案(Ⅱ) 圖 3 - 3 郡單位 企劃機構 改竄案(Ⅲ)



副郡守가 代案Ⅰ의 綜合企劃室長의 역할을 겸하는 형식으로서 副郡守의 系線的 지위에 힘입어 代案Ⅰ보다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年老한 副郡守들도 상당수 있어, 이들이 어느정도 所信과 意慾을 가지고 현재의 업무에 부가되는 새로운 업무를 擔當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圖 3-2 참조).

끝으로 볼 수 있는 代案Ⅲ의 構成上의 특징은 ① 郡行政의 전반적 企劃機能을 內務課所屬의 現企劃豫算係의 機能水準에 맞춘다는 점과 ② 現企劃豫算係를 企劃係와 豫算係로 분리하여 企劃業務와 豫算業務를 분담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既存體制에 큰 변화를 줌이 없이 係單位 하나를 分離・強化함으로써 개편이 가능하다는 용이함이 있으나, 郡의 전반적 長・短期計劃의 수립과 추진을 함에 있어, 1개 係單位로서 他室課單位에 대한 조정 및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1개 係單位에서 郡行政의 전반적 企劃과 추진에 관하여 室課單位에 대한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組織體系的 부조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郡의 能動的 開發行政의 수행보다 體制維持의 統制 및 管理中心의 內務課의 기능을 이상비대화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執行機構의 整備方案

여기에서 郡의 執行機構(즉, 室課單位 以下の 細部的 業務推進機構)에 대해서는 統合・分離, 擴大・縮小 등 어느정도 郡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自治組織權을 강화하여, 郡이 스스로 自己地域特性에 맞게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郡의 機構 및 定員에 관한 사항은 中央에 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關聯法規定들의 재정비부터 필요하다. 그러면 3個地域을 중심으로, 먼저 地方政府의 執行機構의 基本的 整備方向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할 3個地域의 執行機構整備方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地方政府의 執行機構 整備에 관한 基本的 方向

地方政府의 執行機構에 관한 정비의 기본적 관점은 과거의 統制中心 내지 管理中心의 機構形態에서, 住民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能動的 體制로서의 機能(事業) 中心的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康津地域을 대상으로 한 郡의 各 部署別擔當事務의 재배분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3-2〉.

表 3 - 2 地方政府(郡 單位)事務 再配分에 따른 部署別 事務現況

部 署 別		配 分 實 態*			再配分方案(II)			增 減		
室課所	係	A	B	C	A	B	C	A	B	C
문 화 공보실	문 화 공 보 계	40.54	-	59.46	40.54	-	50.49	-	-	-
	소 계	40.54	-	59.46	40.54	-	50.49	-	-	-
내무과	행 정 계	76.19	5.56	18.25	80.16	6.35	13.49	3.97	0.79	△4.76
	서 무 통 계 계	41.67	-	58.33	41.67	-	58.33	-	-	-
	기 획 예 산 계	89.29	-	10.71	92.86	-	7.14	3.57	-	△3.57
	감 사 계	86.67	-	13.33	93.33	-	6.67	6.66	-	△6.66
	소 계	72.68	3.42	23.90	76.1	3.9	20.0	3.42	0.46	△3.9
새 마 을 과	새 마 을 계	83.87	-	16.13	90.32	-	9.68	6.45	-	△6.45
	개 발 계	20.0	-	80.0	100	-	-	80.0	-	△80.0
	국 토 미 화 계	100	-	-	100	-	-	-	-	-
	소 계	76.92	-	23.08	92.3	-	7.7	15.38	-	△15.38
재무과	세 정 계	75.0	-	25.0	75.0	-	25.0	-	-	-
	경 리 계	82.86	-	17.14	82.86	-	17.14	-	-	-
	평 가 계	71.74	-	28.26	71.74	-	28.26	-	-	-
	세 외 수 입 계	63.64	-	36.36	81.82	-	18.18	18.18	-	△18.18
	지 적 계	-	-	100	-	-	100	-	-	-
	소 계	63.58	-	36.42	64.9	-	35.1	1.32	-	△1.32
사회과	복 지 계	4.0	64.0	32.0	96.0	-	4.0	92.0	△64.0	△28.0
	의 료 보 호 계	-	100	-	100	-	-	100	△100	-
	위 생 계	20.0	2.0	78.0	78.0	-	22.0	58.0	△2.0	△56.0
	부녀청소년계	7.69	92.31	-	100	-	-	92.31	△92.31	-
	소 계	10.42	51.39	38.19	91.0	-	9.0	80.58	△51.39	△29.19
농산과	산 업 행 정 계	14.29	1.43	84.28	24.29	-	75.71	10	△1.43	△ 8.57
	농 사 계	19.05	35.71	45.24	88.1	-	11.9	69.05	△35.71	△33.34
	특 작 계	36.36	-	63.64	54.55	-	45.45	18.19	-	△18.19
	소 계	17.89	13.01	69.10	48.78	-	51.22	30.89	△13.01	△17.88
산림과	식 수 계	23.81	-	76.19	38.1	-	61.9	14.29	-	△14.29
	보 호 계	13.64	-	86.36	54.55	-	45.45	40.91	-	△40.91
	소 계	18.6	-	81.4	46.51	-	53.49	27.91	-	△27.91

단위 : %

部 署 別		配 分 實 態*			再配分方案(Ⅱ)			增 減		
室課所	係	A	B	C	A	B	C	A	B	C
식산과	양 정 계	2.7	-	97.3	32.43	-	67.57	29.73	-	△29.73
	축 산 계	19.3	3.51	77.19	70.18	-	29.82	50.88	△3.51	△47.37
	잠 업 계	45.45	-	54.55	100	-	-	54.55	-	△54.55
	수 산 계	3.64	-	96.36	54.55	-	45.45	50.91	-	△50.91
	소 계	11.87	1.25	86.88	58.13	-	41.87	46.26	△1.25	△45.01
건설과	관 리 계	9.47	27.37	63.16	27.37	-	72.63	17.9	△27.37	9.47
	주 택 계	87.5	-	12.5	87.5	-	12.5	-	-	-
	농 지 계	22.86	-	77.14	25.7	-	74.3	2.84	-	△2.84
	토 목 계	81.82	7.07	11.11	85.86	-	14.14	4.04	△7.07	△3.03
	지역 계획 계	61.91	9.52	28.57	61.91	-	38.09	-	△9.52	9.52
	소 계	49.29	12.41	38.3	57.09	-	42.91	7.8	△12.41	4.61
민 방 위 과	민 방 위 계	48.08	-	51.92	92.3	-	7.7	44.22	-	△44.22
	병 부 계	-	-	100	-	-	100	-	-	-
	교육 훈련 계	-	-	100	100	-	-	100	-	△100
	소 계	28.41	-	71.59	67.05	-	32.95	38.64	-	△38.64
농 촌 지 도 소	지 도 계	12.5	87.5	-	100	-	-	87.5	△87.5	-
	작 물 계	-	100	-	23.1	23.1	53.8	23.1	△76.9	53.8
	주 산 지 계	-	100	-	-	-	100	-	△100	100
	지역 개발 계	25.0	75.0	-	87.5	-	12.5	62.5	△75.0	12.5
	소 계	8.82	91.18	-	52.94	8.82	38.24	44.12	△82.36	38.24
보건소	보건 행정 계	5.88	82.35	11.77	100	-	-	94.12	△82.35	△11.77
	가족 보건 계	-	100	-	63.16	-	36.84	63.16	△100	36.84
	예방 의 약 계	5.77	46.15	48.08	69.23	-	30.77	63.46	△46.15	△17.31
	소 계	4.55	64.77	30.68	73.86	-	26.14	69.31	△64.77	△4.54
총 계		37.66	15.93	46.41	65.42	0.79	33.79	27.76	△15.14	△12.62

*A : 고유사무, B : 단체 위임사무, C : 기관 위임사무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郡單位事務의 再配分結果(方案Ⅱ)를 참조하여, 郡의 각 部署別 機構調整의 기본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文化公報室

여기에는 文化公報係가 편제되어 있다. 文化公報係는 事務再配分の 결과에 입각해 볼 때 固有事務의 비중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군수가 지방정부의 책임자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理解를 제고시키는 업무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行政機能의 강화를 위해 現文化公報室의 경우는 公報係와 文化係로 분리하여 公報係는 郡守直屬으로 하여 郡守活動의 체계성 내지 안전성을 도모하고, 文化係는 현재의 內務課에 편제하여, 郡內的 文化行政을 內務課長下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內務課

內務課는 현재 行政係, 庶務統計係, 企劃豫算係 및 監査係가 편제되어 있다. 사무재배분에 의하면, 庶務統計係(41.67%)를 제외한 모든 係들의 機能이 대폭 固有事務化(80.16%~93.33%)되고 있다. 단, 여기서 企劃豫算係와 監査係 및 庶務統計係의 統計에 관한 機能에 대하여는 전술한 企劃機構模型Ⅰ~Ⅱ의 경우 企劃機構 속에 편제함으로써 既存行政體制의 특징인 統制中心의 機構形態에서 事業中心 내지 開發中心의 機構形態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새마을課

새마을과에는 현재, 새마을係, 開發係, 國土美化係가 편제되어 있다. 事務再配분에 따라서 보면, 위 3個 係의 사무는 거의 대부분(90.32%~100%)이 固有事務化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課의 機能은 실질적 關聯部署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開發係는 建設課에, 國土美化係는 山林課에 편제하도록 하고, 새마을係의 機能은 內務課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財務課

現在 財務課에는 稅政係, 經理係, 評價係 및 地籍係가 편제되어 있다. 이들의 事務는 再配分結果에서 볼 때, 거의 변동이 없다. 여기에 대하여

는 사실상, 특별히 개편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⑤ 社會課

여기에는 현재, 福祉係, 醫療保護係, 衛生係 및 婦女青少年係 등 4개係가 편제되어 있다. 오늘날 地方自治制로 향하는 地方政府의 機構形態에서 社會課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 事務再配分에서도 固有事務의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복지계 : 96 %, 의료보호계 : 100 %, 위생계 : 78 %, 부녀청소년계 : 100 %). 여기에서 현재의 社會課는, 社會課와 醫療保健課(가칭)로 분리하여, 새로운 社會課에는 福祉係, 婦女青少年係 및 기타(예 : 환경청소계 등)를 편제하고, 醫療保健課에는 醫療保護係, 衛生係 및 현재 保健所에 편제되어 있는 保健行政係를 흡수 편제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⑥ 農產課

여기에는 현재, 產業行政係, 農事係, 特作係 등이 편제되어 있다. 이들의 사무에 대한 재배분결과를 보면, 農事係, 特作係의 사무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康津郡과 같이 殖產課와 함께 農產課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農產課의 개편이란 별도로 論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⑦ 山林課

山林課에는 현재, 植樹係와 保護係가 編制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事務再配分結果도, 保護係의 사무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만 약간 높게(54.55 %)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새마을課에 있던 國土美化係를 흡수함으로써 3개의 係가 편제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山林行政은 과거 山林保護的, 소극적 입장에서, 山林開發的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더욱 그 기능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⑧ 殖產課

殖產課는 事務再配分結果에서 볼 때, 糧政係(32.43 %)를 제외하면, 기타係의 사무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畜產係 : 70.18 %, 蠶業係 : 100 %, 水產係 : 54.55 %). 그런데 현재 康津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水產係가 편제되어 있음이 他郡과 다른 점이며,

이와같은 부서는 특히 강화하여야 할 충분한 수요도 있다고 볼 때, 1個係單位가 아니라, 水産課로의 승격개편과 함께, 그 안에 어장계(가칭), 어장건설계(가칭), 水産物生産係(가칭) 등의 편제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地方政府의 商工行政에 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政府 차원에서도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중에 있으므로, 郡單位의 組織機構에 商工·運輸 등 機能의 강화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기에 農業流通의 기능을 더하여 商工流通課를 신설하고 그안에 農業流通係, 糧政係, 商工係 및 觀光運輸係를 두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⑨ 建設課

建設課는 事務再配分에 의해 볼 때, 管理係(27.37%)와 農地係(25.7%)를 제외하면 기타係들에 있어서의 事務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住宅係: 87.5%, 土木係: 85.86%, 地域計劃係: 61.91%). 이와같은 建設課의 機能은 사실상, 앞으로 지방발전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므로, 현재의 建設課는, 建設課와 土木課(가칭)로 분리하고 새로운 建設課는 開發係, 住宅係, 地域計劃係 등으로 편제하고, 土木課는 土木係, 農地係 및 管理係 등으로 편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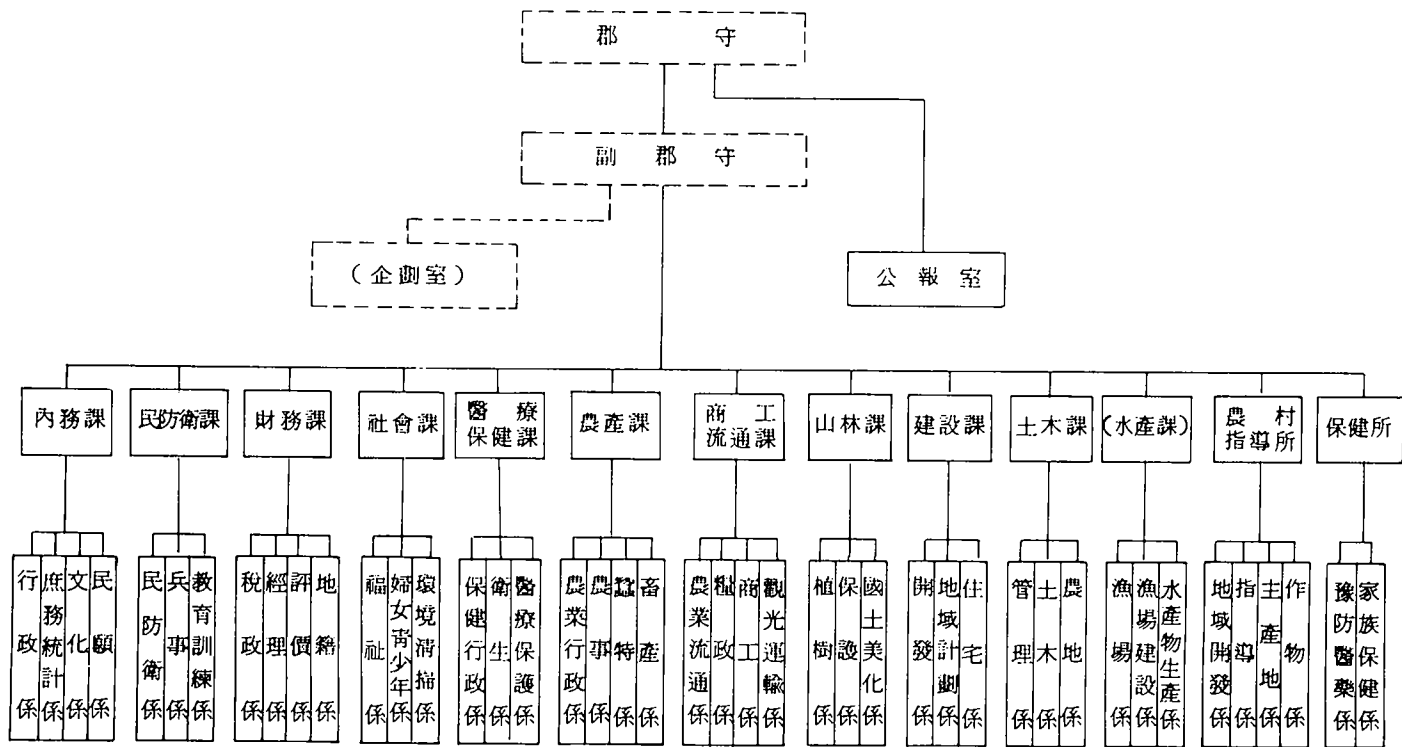
⑩ 民防衛課

民防衛課는 事務再配分結果에서 볼 때, 民防衛係와 教育訓練係의 사무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각각 92%, 100%), 兵務係는 100% 機關委任事務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民防衛課의 개편에 관하여는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⑪ 農村指導所

여기에서는 事務再配分結果에 따라서 볼 때, 指導係와 地域開發係의 사무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각각 100%, 87.5%). 郡單位 公務員들도 農村指導所는 郡本廳의 農産課에 편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農村指導所의 機能은 더욱 고도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별도의 개편방안보다 人力強化 및 技術의 專門化 등의 추진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圖 3-4 郡單位執行機構의 基本的 整備方向



⑫ 保健所

保健所는 현재 保健行政係, 家族保健係 및 豫防醫藥係가 편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事務의 再配分結果에서 볼 때, 保健行政係의 사무에 대한 固有事務化 비율은 100 %로 나타나고 있고, 家族保健係 및 豫防醫藥係는 각각, 63.16 %, 69.23 %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郡單位의 保健所에 대한 民營化 및 機能強化方案이 政府次元에서 추진되고 있음은 住民의 基本的 需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며, 다만, 현재의 保健所內의 保健行政係는 그 機能上 郡本廳機構에 편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醫療保健課(가칭)를 신설할 경우 그 안에 醫療保護係 및 衛生係와 함께 편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郡單位 執行機構에 대한 기본적 기구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3-4>와 같다.

2) 地方政府的 執行機構 整備

地方政府는 매년 地方廳組織管理指針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機構・人力的 정비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地方廳組織管理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고 있다.

첫째, 既存組織의 합리적 調整・整備이다. 여기에서는 ①여건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②유사・중복, 과다세분된 기구 및 ③民間委託이 바람직한 분야의 업무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는, 行政環境의 변화에 적극적 대처하기 위한 보강이다. 여기서는 ①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都市機能과 ②文化福祉施設擴充에 따른 시설인력 및 ③住民便益을 위한 일선 대민행정력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1986년도 3個地域(靑松郡, 康津郡 및 公州郡)을 중심으로 이와같은 地方廳組織管理上의 기본방향에 따라, 郡單位의 각부서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과 기타 의견들을 참고하여 특히 郡의 執行機構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몇가지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表 3-3, 3-4, 3-5; 圖 3-5, 3-6, 3-7 참조>.

圖 3 - 5 公州郡의 現狀의 執行機構 改竊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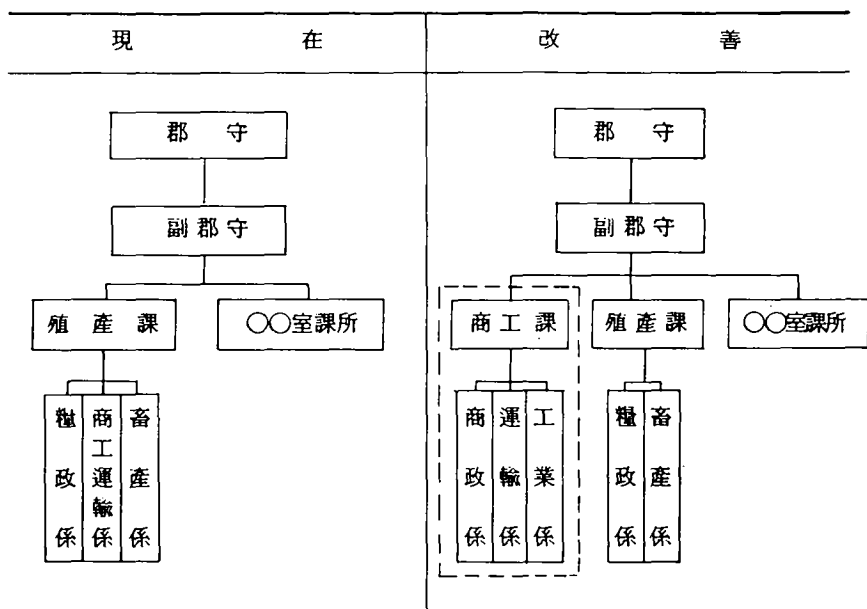


表 3 - 3 公州郡의 現狀의 執行機構 改竊의 概要

室課別	調 整	理 由
商工課	○ 現 商工運輸係를 승격, 商工課 신설 - 기존의 상공운수계를 商政係, 運輸係로 분리 - 工業係 신설 ○ 現 殖産課는 糧政係, 畜産係로 축소	○ 경제성장에 따른 商工業 분야의 行政需要 증대 ○ 상공업업무의 효율적인 계획 및 집행을 위한 專擔機構의 강화 필요

圖 3 - 6 康津郡의 現行의 執行機構 改竄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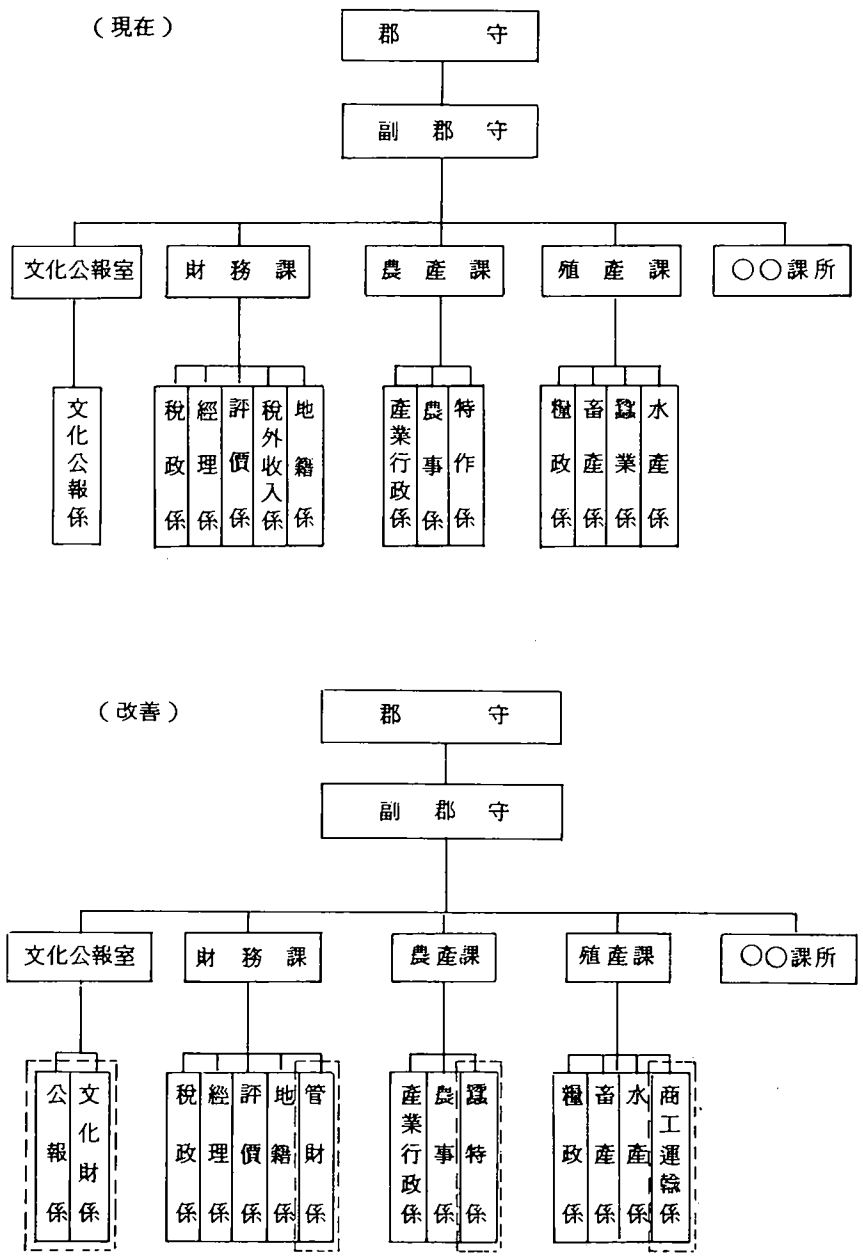


表 3 - 4 康津郡의 現實의 執行機構 改編의 概要

室 課 別	調 整	理 由
文 化 公 報 室	○ 현 文化公報係를 公報 係와 文化財係로 분리	○ 문화재관리업무의 증가 로 문화재관리 전담기 구의 설치 필요
財 務 課	○ 현 세외수입계 폐지 ○ 管財係 신설 — 평가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국 공유재산관리업무를 분리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산 증가와 국공 유재산관리 하부위임처 리로 업무량 증대 ○ 행정재산 및 국공유재 산의 선량한 관리로 경 제손실 미연방지
農 産 課	○ 현 特作係와 蠶業係를 통합하여 蠶特係 신설	○ 과다세분된 특작계와 잠업계의 통합 필요
殖 産 課	○ 商工運輸係의 신설 — 産業行政係의 상공업 무와 管理係의 운수 업무를 통합하여 상 공운수계 설치	○ 상공업부의 증대와 자 동차 및 운수업무의 증 가로 상공운수전담부서 의 필요

圖 3 - 7 青松郡의 現實의 執行機構 改進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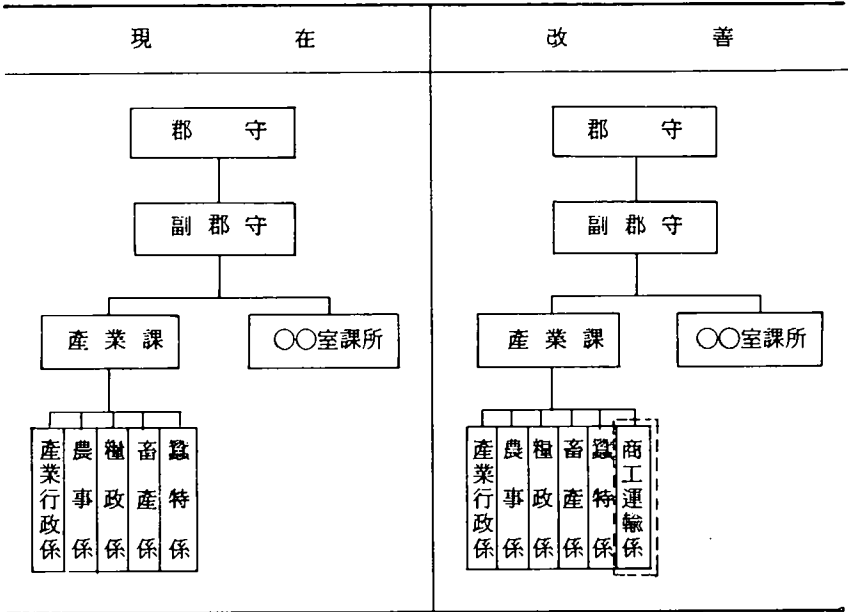


表 3 - 5 青松郡의 現實의 執行機構 改進黨의 概要

室課別	調 整	理 由	備 考
產業課	○ 商工運輸係의 신설 － 산업행정계의 소관 상공운 수관계 업무 분리 상공운 수계 설치	○ 상공운수 분야의 수요에 대한 효율 적 대응을 위한 기 구의 강화 필요	○ 관광운수기능 포함 ○ 青松郡의 地域特 性を 살릴 수 있 는 蠶特係의 기 능 강화가 필요 하며, 최소한 현 단계로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요 청되고 있음.

다. 地方政府의 人力整備 方案

基礎自治團體인 郡의 人力強化를 위해서는, 첫째 郡行政의 주도자로서의 郡守의 지위에 관한 안정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專門企劃 人力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세째로 郡의 各部署別 執行人力이 업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郡守地位의 安定化

여기에서는 郡守의 선임방법에 관한 개선과 郡守의 임기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1) 郡守의 選任方法上的 改善

현재 郡守의 선임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央政府로 부터의 任命制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郡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郡行政의 主體로서 住民의 行政需要를 실질적으로 行政에 반영하여 郡開發行政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郡守의 선임방법은 住民에 의해 選出되는 選舉制가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郡守는 종래와 같이 中央政府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에서 地域住民을 의식하는 자세로 전환이 될 것이며, 中央政府의 지시를 어떻게 잘 받들 것인가 하는 고질적인 관료행태에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郡守의 任期에 관한 改善

전술한 바와 같이, 郡行政의 주도자로서 郡守의 역할이 중요한데, 3個實驗地域인 靑松郡, 康津郡 및 公州郡에서 조사된 郡守의 平均在任期間은 1년 4개월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긴 경우라고 해도 2년정도가 고작이다.

여기서 郡守가 장기적이고 적극적이며 일관성있게 郡行政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정도의 임기는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 地方自治法에서 규정한 地方自治團體長의 任期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第5次 改正(1960.11.1) 및 6次 改正(1961.9.1)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地方自治團體長의 임기를 3년 내지 4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번에 國會에 상정된 地方自治法 改正案(7차)에서 보면, 同 규정에서 4년의 임기를 정하고 있다.

② 專門企劃人力的 強化

地方政府의 專門企劃人力的 強化문제는 地方開發行政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企劃擔當人力的 현황을 보면 企劃人力的 양적인 면에서도 문제이나 질적인 면으로 볼 때,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企劃人力的 확보·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計劃樹立과 執行 및 計量的 分析能力에 관한 기본적 전문지식과 郡사무에 관한 실무지식이 많은 자들이 기획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 등 여러면에서 우수한 人力を 새로이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人力에 대한 적극적이고 차원높은 企劃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處遇改善, 昇進에 대한 배려 등의 조치와 함께 企劃能力向上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것은, 현재 郡單位에서 大學의 地域開發學科出身者들을 특채하여 활용하려 하고 있으나, 이들을 邑·面單位에 배치함으로써 高級人力的 육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에 대한 採用機會의 확대와 함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企劃人力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함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部署別 人力調整

인력의 문제에서는 또 하나, 地方政府의 전체 인력의 擔當業務量 適正化에 입각하여 현재의 인력배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人力에 있어 절대수의 확보·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분의 적정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업무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본연구에서는 文書處理件數와

* 1985년도 靑松郡의 경우, 靑松地域出身 地方大學 地域開發學科 卒業生은 3명이 採用되어, 面單位의 9級職 地方公務員으로서 一般行政業務를 담당하고 있음.

出張件數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같이 하여 單位業務의 係別 難易度까지를 참작하지는 못하였으므로 係別 比較基準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밀한 비교보다는 대체적인 상황의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3個郡의 部署別 1人當 業務量이 특히 많은 部署別現況을 살펴보면 <表 3-6>과 같다.

表 3 - 6 3個郡의 部署別 1人當 業務量 現況

區 分	部 署 別 業 務 量 (1 人 當)				備 考
	室 課 別	業 務 量	係 別	業 務 量	
靑松郡	산 업 과	226	산업행정계	261	
			농 사 계	243	
			잠 특 계	242	
			위 생 계	333	
	사 회 과 재 무 과 기 타	220	세 정 계	255	
		203	관 리 계	291	
			감 사 계	269	
			세 징 계	255	
			행 징 계	235	
康津郡	산 림 과	516	보 호 계	700	
			식 수 계	333	
			양 정 계	794	
	식 산 과 사 회 과	370	복 지 계	625	
		366	위 생 계	402	
			의료보호계	393	
	농 산 과	351	산업행정계	456	
			특 작 계	369	
	민 방 위 과 내 무 과 기 타	356	병 사 계	644	
		315	행 징 계	559	
			세외수입계	406	
			평 가 계	356	
			세 정 계	311	
			새 마 을 계	305	
公州郡	식 산 과	659	상공운수계	975	
			축 산 계	572	
			양 정 계	539	
			병 사 계	833	
	민 방 위 과 사 회 과	484 376	양 병 복 지 계	833 538	

1人當業務量이 많은 部署로서 먼저 靑松郡의 경우는 衛生係, 管理係, 監査係 및 産業行政係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康津郡의 경우는 糧政係, 保護係, 兵事係 및 福祉係 등의 순이고, 公州郡의 경우는 商工運輸係, 兵事係 및 畜産係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부서들은 3個郡에 있어, 係單位의 1人當業務量이 他係들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경우이므로 실질적 적용과 관련하여 人力의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地方行政主體 및 理念의 轉換

가. 地方行政主體의 轉換

다음으로 地方行政의 主體의 전환이란 地方行政의 실질적 主體性을 中央政府로부터 地方政府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地方政府의 自治權의 강화를 의미한다. 즉, 地方政府의 自治立法權의 강화와 自治組織權의 강화 및 自治財政權의 강화이다(自治財政權에 관한 부분은 별도 연구중이므로 본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하에는 전 2자에 한해서 차례로 언급하기로 한다).

① 自治立法權의 強化方案

여기에서의 自治立法權強化問題는 근본적으로 地方議會의 機能復活如何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地方自治制에 관한 논의가 政府次元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地方議會의 원만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이전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방안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現在의 自治立法權에 대한 承認制는 폐지하고, 條例・規則의 공포전에 보고를 받아서 적법성 여부만 사전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는 條例・規則에 대한 自律性이란 地方自治의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地方自治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한, 이에 대해 별도로 承認制를 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관점인 것이다.

② 다음으로 종래와 같이 報告制 외에 일부 특정의 條例・規則에 대해서만 事前承認制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술적 전문성의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든가, 전국적인 衡平性維持 등이 요청되는 분야 등은 사전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③ 그외에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② 自治組織權의 強化方案

여기서는 組織機構와 정원 및 地方公務員의 任用節次의 전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基礎自治團體로서의 郡의 경우, 그 組織機構는 현재, 國家의 승인을 받아서 規則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現在 郡自治團體에 있어서 課單位이상은 국가에서 統制하되, 自治團體에 재량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大統領令으로 課數 등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自治團體가 결정하는 것이다. 또는 여기에서 현행과 같이 일정단위 이상의 機構에 대해 大統領令으로 규정하는 방법 외에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② 郡의 정원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國家公務員의 경우는 現在 大統領令으로 규정하여, 國家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현행과 같이 國家에서 모두 직접 조정하는 방안 외에 國家에서 계속 조정은 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게 조정권을 委任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6급이하에서 職級間 定員調整權이라든가, 職列間 定員調整權 및 國家事務의 委任時, 소요인력에 대한 충원권과 같은 것들이다.

다음으로 地方公務員의 경우는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단, 고용직증원, 6급이하의 기술직열간 정원조정, 기능직·고용직의 8급이하 기술직으로의 조정 등은 제외).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극히 경미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承認調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에서 계속 承認·調整은 하되, 自治團體의 裁量權을 확대하여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직 정원의 조정 및 증원이라든가, 6급이하 직급·직열간 정원 조정은 自治團體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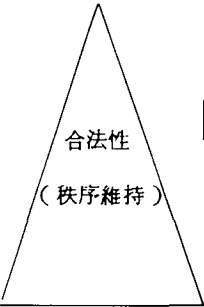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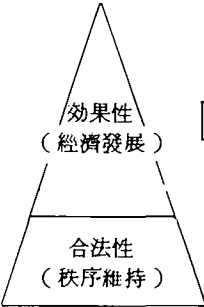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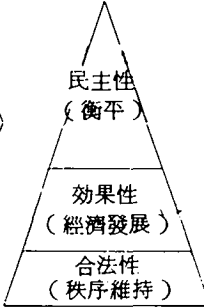
또는, 國家에서 定數基準만을 규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自治團體의 재량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自治團體別 標準定員을 설정한다든가, 매년 團體別 增員上限線을 제시해 준다는 방법이다.

③任用節次에 관해서는, 新規任用的 경우도 승진임용이나 전보임용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일정 범위내에서는 郡에 自律權을 강화시켜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地方行政理念의 轉換

行政理念은 특정사회, 특정시대의 지배적 價值觀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政治·社會·歷史的 環境의 영향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의 價值性과 중요성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安定과 秩序追求가 지배적인 體制維持的 行政體制下에서는 合法性이 가장 중시됨으로써 국가의 행정기능은 의회에서 정립된 法規範의 집행에 국한하게 되고, 또 開發途上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發展主導型 行政體制下에서는 經濟發展中心의 效率性 내지 效果性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이와같은 合法性 내지 效果性 등의 강조는 다른 면에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合目的性에 대한 간과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行政需要가 확대되고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 合法性 내지 效果性 등에만 역점을 둔 행정은 그 비중을 잃게 되는 반면, 행정의 民主性이나 社會的 能率性이 강조되는 추세를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이 시대별로 살펴본 行政體制別 行政理念의 變化過程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圖 3-8>과 같다(金雲泰 外 1982, 477).

圖 3 - 8 行政體制와 主要 行政理念의 關係

體制類型	體制維持型	發展主導型	間接誘導型
理 念	 合法性 (秩序維持)	 効果性 (經濟發展) 合法性 (秩序維持)	 民主性 (衡平) 効果性 (經濟發展) 合法性 (秩序維持)
時代別	1960 年代 이전	1960 ~ 1970 年代	1980 年代 이후

물론 여기서 行政理念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르다는 식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이들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相互補完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地方行政에 있어서도 多元化된 行政需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行政의 理念은 民主性을 대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效果性 내지 合法性理念이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地方行政의 自治에 관한 형태면에 있어서도 과거의 團體自治原理보다는 住民自治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團體自治의 長點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이와같은 理念的 문제는 國家最高統治者의 결단이 있을 때 더욱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전환을 도모하기 보다는 장기적, 점진적 연구교육으로 일관성있게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第 4 章

結 論

1. 研究의 要約

本研究는 現 地方行政의 行政組織強化를 위하여, 地方行政理念과 主體 및 手段이라는 3가지 측면의 關係性을 中心으로 하여 1次的으로 地方行政手段面의 現實的 代案마련을 中心으로 展開하여 점진적으로 地方行政主體 및 理念의 전환을 圖謀하고자 하는 方案을 講究하였다. 이와 같은 觀點에 입각하여 分析된 全體的 研究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行政手段의 轉換은 地方政府事務의 재배분과 이에 입각한 機構의 改編 및 人力的 補強과 調整으로서 다음과 같은 方案들이 檢討되었다

①地方政府事務의 再配分에 있어서는 地方固有事務와 委任事務로 나누어 볼 때 現在는 各各 37.66%와 62.34%로 나타났으나, 再配分에 의한 結果는 65.42%와 34.58%로 固有事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地方政府의 機構改編에 있어서는 再配分된 事務에 입각하여, 地方政府의 自體的 企劃機能과 執行機能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觀點에서 먼저 企劃機構로서는 綜合企劃室方案, 副郡守室活用方案 및 內務課內의 企劃係와 豫算係만의 分離方案 등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執行機構로서

는 現在의 郡單位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기본적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3개 郡에 관하여는 現實적으로 要請되고 있는 組織管理改善의 問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地方政府의 人力에 관하여는 먼저 地方政府 首長으로서 郡守의 경우 選舉制에 의한 選任方法과 함께 任期를 최소한 4년 정도로 安定化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企劃專門人力의 強化方案으로서, 選拔에 있어서의 專門能力과 實務經歷의 反映 및 教育의 強化와 地方大學의 地域開發學科 出身者들의 活用問題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執行人力의 適正配置를 위해 部署(係)別 1人當 業務量現況調査에 따른 過疎人力의 個所를 3個 郡別로 檢討하였다.

둘째, 地方行政主體의 轉換은 中央政府에 集中된 權限을 가능한 한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地方政府의 自治權을 擴大, 強化할 것이 要求된다.

먼저 地方政府의 自治立法權의 擴大, 強化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案이 檢討되었다.

① 現在의 承認制를 폐지하고, 條例, 規則의 公布前에 報告를 받아서 適法性 與否만 事前審査하는 方案

② 從來와 같이 報告制 外에 一部 特定の 條例・規則에 限하여 事前承認制를 認定하는 方案

③ 그 외에 事後報告만 하도록 하는 方案

이어서 地方政府의 自治組織權의 擴大, 強化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案이 檢討되었다.

① 組織機構에 있어서 課單位이상은 國家에서 統制하되 一部 裁量權을 地方政府에 부여하는 方案, 즉 課數等의 上限線을 規定하고 그 範圍內에서 地方政府가 地方實情에 맞게 調整・運用하는 것이다.

② 人力에 관하여는 定員과 任用節次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地方政府公務員의 定員에 관하여는 一定範圍內에서 地方政府에 自體的 調整權을 委任하는 方案이다. 任用節次에 관하여는 新規任用的 경우도, 昇進任用이나 轉補任用에서와 같은 形式으로 一定範圍內에서는 地方政

府에 裁量權을 부여하는 方案이다.

세째, 地方行政理念은 合法性과 效果性 爲主에서 民主性을 中心으로 한 能率性的 調和로의 轉換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는 全體行政人들과 나아가서는 全體國民들의 意識構造에 관한 問題로서 長期的 眼目으로 地方政府의 公務員 뿐만이 아니라 中央政府의 公務員에 대해서도 계속적이고 實質的인 教育의 實施를 필요로 하고 汎國民的 意識改革에 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무엇보다 國家最高統治權者의 決斷如何에 따라 短期的으로 빠른 轉換을 達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研究의 限界點

본 研究의 限界點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研究의 3 가지 기본변수(地方行政理念, 地方行政主體, 地方行政手段) 중 地方行政理念에 대해서는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현상의 실제적 資料를 제시하지 못하고, 既存研究結果 등 간접자료를 이용한 개략적 연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장기적 연구과제로서 보완되어야겠다.

특히 地方行政理念이라 할 때, 이는 中央行政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中央-地方公務員 등의 意識, 住民들의 意識問題와 연결됨으로써, 社會全般的 教育이라는 측면에서의 研究로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地方行政主體의 문제에서는 기존의 中央政府爲主의 행정에서, 地方政府가 地方行政의 實質的 主體로서의 自治權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地方政府의 수용능력의 強化問題가 크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및 인력등의 문제가 강조되었지만, 이와 함께 地方政府의 自治財政權 問題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실질적 운영에 있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地方政府의 行政組織이 強化되어 中央政府로 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는 地方政府의 自律的 行政計劃과 執行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

기에서 地域住民의 實質的 參與와 統制의 方案이 講究되지 않으면, 地方政府는 中央政府의 統制로부터의 自律이라는 美名下에 住民에 대하여는 새로운 集權的 機關으로서 군림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면에 대한 高橋도 本 研究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빈 면

附 錄
地方政府의 事務配分實態 및
再配分 分析表

地方政府의 事務配分 調査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施 ¹⁾			關 係 法 規	再配分 ²⁾ 再配分方向 ³⁾			備 考 ⁴⁾	
		固有	區設	機關		再配分 理 由	固有	區設		機關
문 화 공 보 실	문 화 공 보 실	1. 사회 단체 등록 및 변경 등록		△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①			*	지방자치법개정안 제 9 조 2항단서
	2. 사회단체해 산신고 및 등록취소		△	"	①			*	"	
	3. 순회홍보 및 영화상영	△			①	*			동, 제 9 조 1 항	
	4. 원중 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			①	*			"	
	5. 홍보사업실적 및 홍보 기자재 보고	△			①	*			"	
	6. 홍보간행물 배포활용	△			①	*			"	
	7. 공보자료작성 및 편찬	△			①	*			"	
	8. 사진촬영 및 사진전시	△			①	*			"	
	9. 자치법규공포게재 공고 고시	△		지방자치법시행령	③	*			동, 제 9 조 2 항 1 의 나	
	10.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 및 변경허가(폐업, 개 시신고)		△	유선방송사업법	①			*	동, 제 9 조 2 항 단서	
	11. 유선방송, 시청료(관리 비)인가		△	"	①			*	"	
	12. 공연장설치허가 및 변 경허가(양도양수신고)		△	공연법 7조 1항	①			*	"	
	13. 공연장 폐장신고		△	동법 6조	①			*	"	
	14. 공연장설치허가증 재 교부		△	동법 7조				*	"	
	15. 공연자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		△	동법 5조				*	"	
	16. 각본심사		△	동법 14조 2의 1항	①			*	"	
	17. 강진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	△		강진군민회관사용 및 관리조례	③	*			동, 제 9 조 2 항 5 의 나	
	18. 강진군민의날 및 금릉 문화제행사 추진	△		강진군민의날 및 금릉 문화제의날 에 관한 조례	③	*			"	
	19. 인쇄소등록 및 변경등 록(폐업)		△	출판사 및 인쇄소 의 등록에 관한 법률 3 조	①			*	동, 제 9 조 2 항 단서	
	20. 출판사등록 및 변경등 록(폐업 등록증재교부)		△	동법 5 조	①			*	"	

1) 固有: 固有事務 / 區設: 區設委任事務 / 機關: 機關委任事務

2) ①現地性的 原則, ②經濟性的 原則, ③綜合性的 原則

3) ↑: 康津郡에서 調査된 再配分 方案 (方案Ⅰ)

○: 方案Ⅰ 및 地方自治法改正案 參照한 再配分方案 (方案Ⅱ)

*: 方案Ⅰ과 方案Ⅱ의 일치

4) 再配分方案Ⅱ에서 參照한 地方自治法改正案의 관련조항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21. 출판간행물 납본			△	동법 4조	①			*	동, 제9조2항단서
	22. 지방문화원 육성 및 행 사지원	△			지방문화사업조 성법	①	○		↑	동, 제9조2항5의마
	2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			동 법	①	○		↑	동, 제9조2항5의라
	24. 불교단체등록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	동, 제9조2항단서
	25. 주지취임등록			△	동 시행령	①			*	"
	26. 사찰재산관리			△	"	①				"
	향교재산관리			△	"	①	*			동, 제9조2항5의다
	28.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 관리			△	문화재 보험법 시행령	③			*	동, 제9조2항단서
	29. 지방지정 문화재 보호 관리	△			동 시행령	③	○		↑	동, 제9조2항5의다
	30. 문화재매매업허가 및 변경허가(유·폐업신 고)			△	"	③			*	동, 제9조2항단서
	31. 문화재 공개관람료 인가			△	"	③			*	"
	32.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매장문화재발견신고)	△			"	③	○		↑	동, 제9조2항5의마
	33. 문화재보수			△	"	①			*	동, 제9조2항단서
	34.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	"	①			*	"
	35.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신청	△			"	③	○		↑	동, 제9조2항5의나
	36. 문화재보호구역내 현 상변경허가신청	△			"	③			*	동, 제9조2항단서
	37. 문화재보수 착공 준공 보고			△	동시행령시행 규칙	③			*	"
내 무 과	행 정 계	1. 군 상황실 운영 관리	△		강진군 기획업무 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카
		2. 원 간, 주간업무계획 관 리 운영	△			②	*			"
		3. 해빙기 종합대책	△			②	*			동, 제9조2항4의나
		4. 대통령 각하 지시 사항 추진 처리		△		③			*	-
		5. 국무총리 지시 사항 추 진 처리		△		③			*	-
		6. 장관지시사항추진처리		△		③			*	-
		7. 도지사지시사항 추진 처리		△		③			*	-
		8. 군수지시사항추진처리	△			③	*			동, 제9조2항1의라
		9. 내부행정의 기획조정	△		강진군 기획업무 규칙	②	*			동, 제9조2항1의나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四般	機關			固有	四般	機關	
내무과	행정계	10.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		강진군 군정자 문위원회 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나
		11.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		강진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③	*			"
		12. 지역대책협의회 운영	△			③	*			"
		13. 실과장회의 주관	△			②	*			"
		14. 군조례승인 신청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③	*			"
		15. 규칙제정 공보	△		지방자치법	③	*			"
		16. 훈령제정 공보	△		동 법	③	*			"
		17. 자치법규집 편찬, 정비 및 관리	△		"	③	*			"
		18. 법령해석 및 질의	△			③	*			"
		19. 소송사건 피소보고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③	*			동, 제9조1항
		20. 소송사건 재소승인신청	△		동 법	③	*			"
		21. 소원업무처리	△		"	③	*			동, 제9조2항1의카
		22. 공무원복무지도	△		지방공무원 복 무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마
		23. 휴가계획 및 연가·관 외출장 승인	△		동조례	②	*			"
		24. 집무절 및 청사내외 환경정리	△		동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다
		25. 당직근무 운영	△		지방공무원 근 무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마
		26. 청사경비 및 안내	△		동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다
		27.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③		*		동, 제11조1항
		28. 직장에비군 편성운영		△	동시행령	③		*		"
		29. 방위성금 관리		△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③		*		"
		30. 방위협의회 운영		△	대통령령 28호	③		*		"
		31. 공무원연금매점 운영	△			②				동, 제9조2항1의마
		32. 공무원증, 출입증 발 급 및 관리	△		공무원증 규칙	③		*		동, 제9조1항
		33. 군단위 행사주관	△			③	*			"
		34. 기관장 관내 순시준비	△			③	*			"
		35. 읍면장 회의준비 및 진행	△			③	*			동, 제9조2항1의라
		36. 월중 역점계획 시달	△			③	*			"
		37. 팀스피리트훈련 지원		△		③			*	동, 제10조1항1의가
		38. 각종 사회단체 육성관리	△			③	*			동, 제9조2항1의라
		39. 적십자회비 수납대행		△		③			*	동, 제10조1항1의가
		40. 공무원 국외여행신청	△		공무원 해외여 행 규정	②	*			동, 제9조2항2의마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状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 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四股	松關			固有	四股	松關	
내 무 과	행정계	41. 공무원상조회 운영	△			②	*			동 제9조2항2의가
		42. 공무원연금관리 (카드 부분관리)	△		공무원연금법시 행령	②		*		동 제10조1항1의다
		43. 지방행정 공제회비관리		△		②		*		
		44. 공무원 주택분양 및 대부		△		②	○	↑		동 제9조2항1의마
		45. 공무원 의료보험관리		△	공무원연금법시 행령	②	○	↑		"
		46. 공무원건강진단및 처리	△			②	○	↑		"
		47. 군·읍면직제승인신청 및 관리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6조	③	*			동 제9조2항1의나
		48. 군소속 국가공무원 정 원관리		△	공무원임용령 5 조2항	③			*	동 제9조2항1의마 동 제9조2항1의다
		49. 군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관리	△			③	*			
		50. 본청 실과 읍·면간 정 원조정	△			③	*			
		51. 정원대상 및 정원원대 장관리	△		지방공무원임용 령강진군인사규칙	③	*			"
		52. 군소속 지방공무원 신 규, 전직, 겸임, 파견 전출	△		동 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마
		53. 군소속 지방공무원 전보	△		"	③	*			"
		54. 군소속 지방공무원 휴 직, 복직	△		"	③	*			"
		55. 군소속 지방공무원 승 진 및 강임	△		"	③	*			"
		56. 군소속 지방공무원 직 위해제	△		"	③	*			"
		57. 군소속 지방공무원 면직	△		"	③	*			"
		58. 군소속 지방공무원 정제	△		"	③	*			"
		59. 군소속 지방공무원 명 예퇴직	△		"	③	*			"
		60. 군소속 국가공무원 임 용 및 관리		△	공무원임용령 5조2항	③			*	
		61. 정원경찰 및 임시직임용	△		강진군인사규칙	③	*			"
		62. 공무원승진 후보자 명 부작성관리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		동 규칙	③	*			"
		63. 공무원 호봉 승급 및 조정	△		"	③	*			"
		64.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관리	△		"	③	*			동 제9조2항1의나
		65. 공무원인사기록제 증명 발급	△		"	③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施		關係法規	再配分 理 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配屬機關			固有	配屬機關	
내 무 과	행 정 계	66. 병무담당직원 교체협의	△	강진군 인사규칙	③	*		
		67. 공무원인사통계 보고	△	동 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카
		68. 공무원신원조회 관리	△	"	③	*		동 제9조2항1의다
		69. 공무원포상 및 추천	△	"	②	*		"
		70. 유공단체 및 민간인표창	△	"	②	*		동 제9조1항
		71. 군소속공무원 소청	△	강진군 징계양 정규정	③	*		동 제9조2항1의마
		72. 인사위원회 운영	△	동 규칙	③	*		동 제9제2항1의다
		73. 보통징계위원회운영	△	"	③	*		"
		74. 군소속 소방공무원 임 용 및 관리	△	강진군 인사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마
		75. 공무원임용 (승진, 전 직, 신규채용) 시험요구	△	동 규칙	③	*		"
		76. 각종시험의 원서교부 및 접수	△	"	③	*		동 제9조2항1의다
		77.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		②	*		"
		78. 민원사무처리통제 및 검열	△	정부공문서 처 리규정	②	*		동 제9조1항
		79. 일반민원 접수처리	△		③	*		"
		80. 부동산중개업자가 및 지도감독	△	부동산중개업법	③	*		"
		81. 읍면행정실적심사	△		③	*		동 제9조2항1의라
		82. 읍면리반 행정지도감 독 및 사기양양	△	강진군 읍면직 제 규칙	③	*		"
		83. 읍면리 반장 교육	△		②	*		"
		84. 자율행정시범면 운영	△		②	*		"
		85. 유아교육진흥계획 수립	△	유아교육진흥법 4조	①	○	↑	동 제9조2항5의가
		86. 새마을유아원 설립인가	△	유아교육진흥법 9조	①	○	↑	"
		87.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원	△	유아교육진흥법 4조	①	○	↑	"
		88. 새마을유아원 교직원 임면	△	유아교육진흥법 16조	③	○	↑	"
		89. 읍면공무원 인사관리 지도	△	강진군 인사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다
		90. 리·동명칭 및 구역변경 신청	△	강진군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가
		91. 군읍면 행정구역 조정 신청	△	지방자치법 145조	③	*		동 제9조2항1의가
		92. 제 증명 및 사실확인서 발급업무지도	△	민원사무 처리 규정	②	*		동 제9조1항
		93.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	△	동 규정	②	*		"
		94. 제안제도	△	제안규정	②	○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四輪	機關			固有	四輪	機關	
	95. 행정예고제 운영	△				①	*			동 제9조1항
	96. 주민등록사무지도			△	주민등록법시행령	②	*			동 제9조2항1의 차
	97. 주민등록증 수불 및 발급			△	"	③	*			"
	98. 주민등록상황보고			△	동 시행령	③	*			"
	99. 사회정화추진협의회 지 원 육성	△			사회정화운동 조 직 육성법시행령	①		*		동 제10조1항1의마
	100. 사회정화운동 순회지도 교육	△				②		*		"
	101. 순화교육이수 귀가자 사후관리	△			사회보호법 1조	③		*		"
	102. 사회정화운동 시범위 원화 육성관리	△				③		*		"
	103. 3대부정심리 추방운 동 전개	△				①	○		↑	동 제9조1항
	104. 지방행정동향 보고			△	지방행정동향보 고 운영지침	③	*			"
	105. 여론모니터 운영관리	△				③	*			"
	106. 대화행정 추진	△				①	*			"
	107. 현장확인행정	△				①	*			"
	108. 반상화운영지침 시달	△				①	*			"
	109. 반상화운영지도 감독	△				②	*			"
	110. 반상화 건의사항처리 및 결과통보	△				①	*			"
	111.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관리			△	대통령선거법시 행령	①			*	동 제9조2항단서
	112. 국회의원 선거관리			△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①			*	"
	113. 국민투표 운영관리			△	국민투표법 시 행령	①			*	"
	1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운영			△	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법시행령	①			*	"
	115. 지방의회 및 읍면위원 회 운영지도	△			지방자치법	③	*			동 제9조2항1의다
	116. 새마을사업종합계획수립 ·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 조사	△ △				③ ②	* ○		↑	동 제9조2항4의가 동 제9조1항
	· 피교육자 차출 및 교 육명령	△				②	○		↑	"
	119. 교육이수사항 기록관리	△				②	*			"
	120. 직장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				②	*			"
	121. 국민정신 및 경제교육 실시			△		②	○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協辦	機關			固有	協辦	機關	
내 부 과	행정계	122. 공무원 소양고사 추진	△			②	*			동 제9조1항
		123. 전산예비요원 지정관리	△			②	*			"
		124. 경제교육홍보요원 육성	△			②	○		↑	동 제9조2항1의라
		1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③				동 제9조2항단서
		126. 소송업무수행	△		행정소송법	③	*			동 제9조1항
서 무 통 계 계	1. 군통계연보 발간	△				③	*			동 제9조2항1의카
	2. 행정지도 발간	△				②	*			"
	3. 행정통계 및 도시연감 자료작성 제출		△			③	○		↑	"
	4. 기본통계 대장정비관리	△				③	*			"
	5. 인구 및 주택센서스		△			③		*		동 제11조5
	6. 상주인구조사		△			③		*		"
	7. 인구이동 동태파악 보고		△			③		*		"
	8. 도·소매업 센서스		△			③		*		"
	9. 광공업센서스		△			③		*		"
	10. 주민소득 추계자료 작성	△				③		*		"
	11. 경제활동인구조사		△			③		*		"
	12. 고용구조 특별조사		△			③		*		"
	13. 직장체육진흥 및 행사 주관	△				①	*			동 제9조2항5의나
	14. 군체육진흥위원회 운영	△				①	*			"
	15. 비밀문서 수발통계 및 관리		△	보안업무규정		③		*		동 제11조1
	16. 비밀문서 보관, 관리		△	동 규정		③		*		"
	17. 음어자재관리		△	"		③		*		"
	18. 시설, 통신보안 관리		△	"		③		*		"
	19. 보안교육		△	"		③		*		"
	20. 보안감사		△	"		③		*		"
	21. 보안진단		△	"		③		*		"
	22. 보안업무 심사분석		△	"		③		*		"
	2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 취급인가자 현황보고		△	"		③		*		"
	24. 보안심사운영회 운영		△	"		③		*		"
	25.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③		*		"
	26. 비상대비업무		△	"		③		*		"
	27. 안보정세 보고회 개최		△	"		③		*		"
	28. 문서수발 및 통제	△		정부공문서처리 규정		③	*			동 제9조1항
	29. 보고문서 통제	△		동 규정		③	*			"
	30. 문서발간실 운영	△		"		②	*			"
	31. 문서채송	△		"		③	*			"
	32. 문서보존관리	△		"		②	*			"

部 署 別 案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내 무 과	사무 통 계	33. 공인관리 및 공인대장 관리	△		정부 공문서처리 규정	③	*			동 제9조1항
		34. 행정통신 관리	△			②	*			동 제9조2항1의아
		35. 교환실 및 T.T실 운영	△			②	*			"
		36. 행정장비보강 및 관리	△			②	*			"
기 획 예 산 계	1. 군정업무보고서 작성 관리	△			강진군 기획업 무규칙	③	*			동 제9조1항
	2. 군정보고회 운영	△				③	*			"
	3. 군정주요업무시행 계 획수립	△			강진군 기획업 무규칙	③	*			"
	4. 군정주요업무 시행계 획의 심사분석	△			"	③	*			"
	5. 종합월동대책	△				②	*			"
	6. 지방물가대책			△		②			○	동 제11조2
	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①	*			동 제9조2항4의가
	8. 에너지절약 추진 및 실적보고			△		②	○		↑	동 제9조1항
	9. 대통령각하 지원사업 추진처리			△		①			*	
	10. 예산편성 및 승인신청	△			강진군 재무회 계 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사
	11. 세출예산의 배정	△			"	③	*			"
	12. 실행예산의 편성 및 집행	△			"	③	*			"
	13. 예산성립전 집행	△			"	③	*			"
	14. 예산통계 (합의) 및 장부처리	△			"	③	*			"
	15. 예산결산 추진 및 분석	△			"	③	*			"
	16. 세출예산 이월	△			"	③	*			"
	17.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			지방교부세법시 행령	③	*			"
	18. 경상사업비 작성	△			강진군재무회계 규칙	③	*			"
	19. 기준경비 작성	△			"	③	*			"
	20. 기채승인신청과 예산행 위 신청	△			"	③	*			"
	21.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예산승인신청	△			"	③	*			"
	22. 채무현황보고 및 관리	△			"	③	*			"
	23. 관서당 경비운영	△			"	②	*			"
	24. 예비비 사용 및 승인신청	△			지방재정법시행령	③	*			"
	25. 예산전용	△			강진군 재무회 계 규칙	③	*			"
	26.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				③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口数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公辦	公關			固有	公辦	公關	
내 무 과	기획 예산 계	27. 재정통계분석 비교연 구보고	△			③	○			동 제9조2항1의사
		28. 군행정 자료실 운영관리	△			②	○			동 제9조2항1의카
감 사 계	1. 군자체 행정감사 계획 수립	△			강진군 자체 감 사규칙	③	○			동 제9조2항1의사
	2. 군행정 감사의 실시	△			"	③	○			"
	3. 군행정 감사결과의 처리	△			"	③	○			"
	4. 공무원 복무기강 감사 실시	△			"	③	○			"
	5.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 결과보고	△			"	③	○			"
	6. 대행정사 수감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보고(감 사원, 내부부, 도)			△	"	③			○	
	7.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			"	③	○			동 제9조1항
	8. 망실, 훼손 등의 통보 처리	△			"	③	○			"
	9. 진정 (청원, 여론) 사항 처리	△			"	③	○			"
	10. 청탁매격 및 공직풍토 쇄신운동 추진			△	"	③	○			"
	11. 직장전화운동 추진	△				③	○			"
	12.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 수사항 확인	△			강진군 재무회 계 규칙 (92조) 내무부 훈령 (785호) 지방자치단체 사 무인계인수 규정	③	○			"
	13. 군 감사관계등계 보고	△			강진군 자체 감 사 규칙	③	○			"
	14. 군 감사활동 동향보고	△			"	③	○			"
	15.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 및 일일출장 통 제승인	△				③	○			"
새 마 울 과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취소			△	새마을금고법시 행령	③		↑	○	동 제11조2
	2.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	"	③		↑	○	"
	3.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감독			△	"	②		↑	○	"
	4. 새마을금고 공동재산 및 시설물 관리	△				③	○			동 제9조1항
	5. 새마을금고 총열	△				②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施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새마을 올파	새마을계	6.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		보조금관리법	③	*			동 제9조1항
		7. 빈간단체 보조금지금	△			③	*			"
		8. 새마을소득조사	△			③	*			"
		9. 새마을운동협의회 운영	△			③	○	↑		"
		10. 새마을 이웃돕기 추진 지도	△			②	*			"
		11.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		△	행정지시	①	○		↑	"
		12. 새마을가꾸기 사업추진	△			①	*			"
		13. 새마을광역권 사업추진	△			①	*			"
		14. 새마을 소득특활지원 사업추진		△		①	○		↑	"
		15. 새마을교육 계획수립 실시	△			②	○		↑	"
		16. 새마을지도자 교육차출 인솔	△			③	○		↑	"
		17. 부설 새마을학교 운영	△			③	*			동 제9조2항5의가
		18. 새마을 신문보급	△			③	○	↑		동 제9조2항5의라
		19. 새마을유공자 포상 및 추천	△			①	*			동 제9조1항
		20. 새마을성공사례 발굴 및 발표	△			③	*			"
		21. 새마을 지도자 관리	△			③	*			"
		22. 도서 낙도 개발사업 추진	△			①	*			"
		23. 소도읍 가꾸기사업추진	△			①	*			"
		24.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			①	*			"
		25. 새마을 대청소	△			③	*			"
		26. 자연보호활동 계획수립 추진	△			③	*			"
		27.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및 관리	△			③	*			"
		28. 자연보호운동 교육	△			③	*			"
		29. 자연보호 명예감시위 촉 관리	△			③	*			"
		30. 자연보호 캠페인실시 지도	△			③	*			"
		31. 새마을 농로이전 등기	△			③	*			"
개발 계	1. 취락지 행기장관리	△			취락지대책사업 추진지침	③	○		↑	동 제9조2항2의가
	2. 광고물설치허가 및 갱신		△		광고물등 관리법	③	*			동 제9조1항
	3. 광고물정비 및 단속		△		"	③	*			"
	4. 가두장식물 설치승인		△		"	③	*			"
	5. 광고물제작업자 등록		△		"	③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四股	機關			固有	四股	機關	
새 마 울 과	국 토 미 화 계	1. 꽃길조성사업 추진	△			③	*			동 제9조1항
		2.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추진	△			③	*			"
		3. 가로변 청소	△			③	*			"
재 무 과	세 정 계	1. 자체 세정운영계획 수립(세목별, 목표액, 월별 징수계획)	△		강진군재무회계 규칙 강진군세 조례	③	*			동 제9조1항
		2. 세입 징수부 정리 및 징수현황보고	△		"	③	*			동 제9조2항1의바
		3.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읍면지도	△		도세조례	②		*		동 제10조1항1의다
		4. 군세 부과징수에 따른 읍면지도	△		강진군세 조례	②	*			동 제9조2항1의바
		5. 취득세 자진신고분 징 수결정		△	도세 조례	③		*		동 제10조1항1의다
		6. 취득세 고지분(미납자 분) 징수결정		△	"	③		*		"
		7. 등록세 부과징수		△	"	③		*		"
		8. 면허세 부과징수		△	"	③		*		"
		9. 주민세(소득균등할) 부 과징수	△		강진군세 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바
		10. 도축세 부과징수	△		"	③	*			"
		11. 자동차세 부과징수	△		"	③	*			"
		12. 연초판매세 부과징수	△		"	③	*			"
		13. 지방세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심사청구 서 전달	△		"	③	*			"
		14. 지방세 납세홍보	△		"	②	*			"
		15.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 부착 차량단속	△		"	③	*			"
		16. 체납세 정리를 위한 독려 및 징수촉탁	△		"	②	*			"
		17. 등기압류 및 해제촉탁	△		"	②	*			동 제9조1항
		18. 결손처분 요건조사 및 처분정리	△		"	③	*			"
		19. 지방세과오납 환불	△		"	③	*			동 제9조2항1의마
		20. 세목별 세표작성	△		"	③	*			"
		21. 지방세 납기연장처리	△		"	③	*			동 제9조2항1의바
		22. 지방세 징수유예처리	△		"	③	*			"
		23. 도축세 실태조사 및 과세표준액 승인신청	△		"	③	*			"
		24. 등록세(감면, 비과세) 확 인서 발급		△	도세 조례	③		*		동 제10조1항1의다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內配	外配			固有	內配	外配	
재 무 과	세 정 계	25. 취득세 감면(비과세)			△ 도세 조례	③			○	동 제 10조 1항 1의다
		26. 재무행정의 기획조정	△			③	*			
		27. 지방세분 방위세 부과 징수			△ 국세징수법시행 령	③			*	"
		28. 법인세무조사(개인기 업 포함)	△		군세부과 징수 규칙	②	○			동 제 9조 2항 1의바
		29. 사업소세 부과징수	△		"	③	○			"
		30. 중과세대상 세무조사	△		"	②	○			"
		31. 지방세 비과세 대상조사	△		"	③	○			"
		32.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 누락 여부조사			△ 도세 조례	③			○	동 제 10조 1항 1의다
		33. 도세법 처리	△		강진군세 조례	③	○			동 제 9조 2항 1의바
		34. 도세징수 교부금청구 및 세입	△		강진군재무회계 규칙	③	○			"
		35.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	③	○			"
		36. 기부금품모집 통제			△ 기부금품모집금 지법시행령	③	○			"
경 리 계	1. 유가증권 출납 2. 군 금고관리 3. 세출예산 지출원인 행 위 및 지출 4. 지출계산서 작성보고 5. 세출예산 결산 6. 지출증빙서류 보관관리 7. 회계관계 직인 보관관리 8.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보관 9. 국비세출예산 지출원 인 행위 및 지출 10. 국비지출원인 행위지 출액 보고 11. 국비세출예산 결산 12. 국비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보고 13. 원천징수금 물입 및 정산 14. 국비전도자금 지급 및 정산 15. 전도자금 지급 및 정산 16. 부정담당자 제재요청 17. 회계직 공무원 인감신 고	△			강진군 재무회 계 규칙	③	○			동 제 9조 1항
			△		"	③	○			"
			△		"	②	○			동 제 9조 2항 1의사
			△		"	③	○			"
			△		"	③	○			"
			△		"	③	○			"
			△		"	③	○			"
					△ 예산회계법 시행령	③			○	동 제 11조의 1
					△ "	③			*	"
			△		"	③			○	"
			△		"	③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③			○	"
					△ 예산회계법 시행령	③			○	"
			△		강진군 재무회 계 규칙	③	○			동 제 9조 2항 1의사
			△		"	③	○			동 제 9조 1항
			△		"	③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狀態 固有 互換 機關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固有 互換 機關			備 考
재 무 과	경 리 계	18. 공사 및 용역계약	△			강진군 재무회 계규칙	③	*			동 제9조1항
		19. 물품구매 년간 단가계약	△			예산회계법 시행령	③	*			"
		20. 물품제조구매에 따른 단체적 수의계약	△			"	③	*			"
		21. 공사 및 용역의 검사와 입회	△			"	③	*			"
		22. 물품제조 싯가조사 및 원가계산의뢰	△			"	③	*			"
		23. 납품제조, 수리, 공사등 의 실적증명 발급	△			"	③	*			"
		24. 청·관사 신축, 보수 등 시설유지 관리	△			"	③	*			"
		25. 영선용 자재기구 출납 보관	△			"	③	*			"
		26. 건설공사 카드작성	△			"	③	*			"
		27. 물품출납 및 조달	△			강진군 재무회 계규칙	③	*			"
		28.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	③	*			"
		29.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	③	*			"
		30.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			"	③	*			"
		31. 물품의 관리전환	△			"	③	*			"
		32. 재물조사 및 보고	△			"	③	*			"
		33. 자동차관리	△			"	③	*			"
		34. 소모품 출납관리	△			"	③	*			"
		35. 비소모품 출납관리	△			"	③	*			"
평 가 계		1.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			군세부과 징수 규칙	②	*			동 제9조1항
		2. 재산세 부과징수	△			강진군세 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바
		3. 감류 농지세 부과징수	△			"	③	*			"
		4. 을류 "	△			"	③	*			"
		5.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			"	③	*			"
		6. 소방공동시설세 부과 징수	△			"	③	*			"
		7. 과세자료 통보 및 관리 (읍면간, 시군간)	△			"	③	*			"
		8. 농지조사위원회 운영	△			"	①	*			동 제9조1항
		9. 농지세 연기, 면세결정	△			"	③	*			동 제9조2항1의바
		10. 재해시 재산세감면 승 인신청	△			"	③	*			"
		11. 재해감면에 따른 결정	△			"	③	*			"

部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亞體	機關			固有	亞體	機關	
재 무 과	경 가 계	12.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변경승인신청	△			강진군세 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바
		13. 토지등급 수정 및 승 인신청	△			"	③	*			동 제9조1항
		14. 군표준지 관리	△			"	③	*			"
		15. 지목, 지역별 토지등급 조정계획 수립	△			"	③	*			"
		16. 상가재산의 과세표준 액 조사	△			"	③	*			"
		17. 건물, 선박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액 승인신청	△			"	③	*			"
		18. 건물에 대한 특수부대 설비 및 구축물과세 가 표준액 결정	△			"	③	*			"
		19. 농지기준수확량 등급 조정 결정	△			"	③	*			"
		20. 율류작물표준농가 선 정 관리	△			"	③	*			"
		21. 필요경비조서 및 특수 작물 소득표준율 결정	△			"	③	*			"
		22. 국유재산관리청 지정 신청		△		국가재산법시행 규칙	③		*		동 제11조의 4
		23. 국유재산소관청 조회 신청 및 회보		△		"	③		*		"
		24. 국유재산관리계획 수 립 및 집행실적보고		△		"	③		*		"
		25. 국유재산처분 (양여, 교환, 관리환) 승인신청		△		"	③		*		"
		26. 국유잡종재산 대부		△		"	③		*		"
		27. 국유재산 매각		△		"	③		*		"
		28. 국유잡종재산 무상대 부 신청		△		"	③		*		"
		29.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 액 보고		△		"	③		*		"
		30.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제출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③		*		동 제11조의1
		31. 은닉, 무루재단 취득		△		"	③		*		동 제11조의 4
		32.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대장정리		△		"	③		*		"
		33. 국유재산관리청 청기 등기		△		"	③		*		"
		34. 공유재산 관리계획수 립 및 심사분석 보고	△			강진군유재산 관리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자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四體	機關			固有	四體	機關	
재 무 과	평 가 계	35. 공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	△		강진군 유재산 관리조례	③	○			동 제9조2항1의자
		36.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승인신청	△		"	③	○			"
		37.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신청	△		"	③	○			"
		38. 공유재산 취득	△		"	③	○			"
		39. 공유재산 매각, 교환, 양여	△		"	③	○			"
		40. 공유재산 기부채납	△		"	③	○			"
		41. 공유재산 대부	△		"	③	○			"
		42. 공유재산 사용허가	△		"	③	○			"
		43. 공유재산 소유권확보	△		"	③	○			"
		44. 공유부동산 싯가조사	△		"	③	○			"
		4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	③	○			"
		46. 공유수면 점용료징수		△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③		○		동 제11조의 4
세 외 수 입 계	1. 세외수입운영계획 수립 2. 도수입 증지 관리 3. 경영사업 추진 4. 세외수입(사용료, 수 수료, 잡수입)세입징수 결의 및 고지서 발부 5.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6. 상설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7. 5일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8. 오물수거료 부과징수 9. 도로(지방도) 사용료 징수 10. 저축금 불입 및 지급 11. 금융저축 실적보고	△			△ 도수입 증지조례 강진군 재무회 계 규칙	② ③ ① ③	○ ○ ○ ○			동 제9조2항1의바 동 제10조1항1의나 동 제9조1항 동 제9조2항1의바 " 동 제9조1항 " 동 제9조2항2의자 동 제10조1항1의나 동 제9조2항1의사 "
			△		"	③	○			
			△		"	③	○			
			△		강진군세 조례	③	○			
			△		"	③	○			
			△		"	③	○			
			△		"	③	○			
			△		△ 도의 도로점용징 수 조례	③	○			
				△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③	○	↑		
				△	"	③	○	↑		
지 적 계	1. 지적공부 보존관리 2. 지적공부열람 3. 지적공부의 복구 4. 축척변경정리 5. 토지(임야)합병처리 6. 지목변경 처리 7. 지적공부정리(등기필, 소유권변경 등)			△	지적법시행령	③		○		동 제11조의 5
				△	"	②		○		"
				△	"	②		○		"
				△	"	②		○		"
				△	"	③		○		"
				△	"	③		○		"
				△	"	③		○		"

部署別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室課	係		固有	臨時	檢閱			固有	臨時	檢閱	
재무과	지적계	8. 해면성 말소			△	지적법시행령	③			*	동 제 11 조의 5
		9. 토지분할 처리			△	"	③			*	"
		10. 토지등록사항 정정			△	"	③			*	"
		11. 지적공부 조제 및 재조제			△	"	③			*	"
		12. 토지신규등록			△	"	③			*	"
		13. 등록전환			△	"	③			*	"
		14. 축락등기(적전등기변경)			△	"	③			*	"
		15.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	"	③			*	"
		16. 지적공부 반출승인신청			△	"	②			*	"
		17. 토지등급농지기준 수확량 등급정리			△	"	②			*	"
		18. 지적기술자 점계요구			△	"	③			*	"
		19. 대행법인 지도감독			△	"	②			*	"
		20. 토지기록 전산화 자료 정비			△	"	②			*	"
		21. 지적측량 성과검사			△	"	②			*	"
		22.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	③			*	"
		23. 지적공부 등본발급			△	"	③			*	"
복지계		1.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대체 허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③	○		↑	동 제 9조 2항 2의가
		2.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인가			△	"	③	○		↑	"
		3. 사회복지법인 운영지도 감독			△	"	③	○		↑	동 제 9조 2항 2의나
		4. 사회복지시설 운영보호비 교부			△	"	③	○		↑	"
		5.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	"	③	○		↑	"
		6.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	"	③	○		↑	동 제 9조 2항 2의가
		7. 노인복지 증진		△		"	①	○		↑	동 제 9조 2항 2의라
		8. 노인복지단체 보조지원		△		"	①	○		↑	"
		9. 인보 복지성금품 접수 및 사업홍보	△			기부금품금지법	①	*			동 제 9조 2항 2의다
		10. 인보복지성금품 집행 및 지원	△			"	①	*			"
		11. 기증물품의 용도 증명 발급			△	"	③	○		↑	"
		12. 원호단체 보조지원		△		"	①	○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状況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協同	依頼			固有	協同	依頼	
재 무 과	13.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	생활보호법 21, 23.조 시행령 14 조	①	○		↑	동 제9조2항2의다
	14. 생활보호 조치변경			△	"	①	○		↑	"
	15. 거택구호양곡 구입 및 공급			△	생활보호법 8조	①	○		↑	"
	16. 거택구호대상자 구호 비 지급			△		①	○		↑	"
	17. 생활보호자의 변경사항 처리			△		③	○		↑	"
	18. 영세민 중학생수업료 지원			△		①	○		↑	"
	19.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	생활보호법 37조	①	○		↑	"
	20. 취로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장 선정)			△	" 11조	①	○		↑	"
	21. 취로사업 설계, 사업시 행 (대상지 승인)			△	"	①	○		↑	"
	22. 취로사업추진 및 상황 보고			△		③	○		↑	"
	23. 부랑인 선도단속			△	부랑인보호대책사 업 시행지침	①	○			동 제9조2항2의라
	24. 행여사망자 처리			△		①	○			"
	25. 도시영세민 지방어주 대책			△		①				동 제11조의 4
	26. 영세민 집 단촌 정비사업			△	행정지시	①	○		↑	동 제9조2항2의다
	27. 자활가구 육성			△	재해구호법 시행령	①	○			"
	28. 재해구호, 신고 및 이재 민 수용			△	재해구호법2조 7조	①	○		↑	동 제9조2항4의하
	29. 이재민 생계구호			△		①	○		↑	"
	30. 재해주택 복구사업			△	재해구호법5조 령 16 조	①	○		↑	"
	31. 재해유족 위로금지급			△	재해구호법시행 령 18 조	①	○		↑	"
	32. 재해토지 및 건물의 보 상금 지급			△	재해구호법 7 조	①	○		↑	"
	33. 재해비축 물자관리 및 사용			△	보사부훈령247 조	①	○		↑	"
	34. 노동조합지도감속(감사 쟁의조정)			△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③		↑	○	동 제11조의 5
	35. 채불입금처리			△	"	①	○		↑	동 제9조1항
	36. 노동대책회의 운영			△		①	○		↑	"
	37. 2종직업안내소 종사원 채용승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노동부예규	③	○		↑	"

部 署 別 案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配屬	機關			固有	配屬	機關	
재 무 과	복 지 계	38.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		△	사회보호법 시행령	①	○		↑	동 제9조2항2의다
		39.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비 지급		△	"	①	○		↑	"
		40. 직업훈련수료자 사후 관리		△		①	○		↑	"
		41. 영세장애자 보장구 교부	△		심신장애자복지 법 10 조	①	○		↑	동 제9조2항2의라
		42. 심신장애자 복지증진 (시설지원)	△		심신장애자복지 법 9 조	①	○		↑	"
		43. 의례식장 영업허가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5 조	②	○		↑	동 제9조2항2의아
		44. 의례식장 등 지도감독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5 조, 9 조	③	○		↑	"
		45. 의례식장의 행정처분	△		"	③	○		↑	"
		46. 가정의례 계몽교육	△		" 지침	①	•			동 제9조2항2의가
		47. 노인 복지시설허가, 폐 지 및 명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③	○		↑	동 제9조2항2의라
		48. 경로주간행사	△		대통령지시사항	①	•			"
		49.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보호지원	△		노인복지법 22 조	①	○		↑	"
		50. 노인복지조치심사 청 구결정	△		" 23 조	③	○		↑	"
의 료 보 호 계		1.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진료증 발급회수	△			①	○	↑		동 제9조2항2의가
		2. 의료보호대상자 카드 관리	△			③	○	↑		"
		3.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및 지급	△			③	○	↑		"
		4. 의료보호기금 결산	△			③	○	↑		"
		5. 의료보호 대불금상환 및 독촉	△			③	○	↑		"

部 署 別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配屬	機關			固有	配屬	機關	
사 회 과	위 생 계	1. 식품업소 임검 및 식품수거			△	식품위생업법 시행령	①	○		↑	동 9조 2항 2의아
		2. 식품위생관리인 선임 (변경) 신고수리			△	"	①	○		↑	"
		3. 식품품질관리 및 생산 실적 취합보고			△	"	①	○		↑	"
		4.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	"	①	○		↑	"
		5. 식품위생업소 위생등급 구분			△	"	①	○		↑	"
		6. 불량식품 압류 폐기처분			△	"	①	○		↑	"
		7. 식품접객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	"	③	○		↑	"
		8. 식품접객영업신고(상호, 주소, 변경, 휴업)			△	"	③	○		↑	"
		9.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	"	①	○		↑	"
		10. 식품제조영업허가(영업, 제조, 품목) 및 변경허가			△	"	③	○		↑	"
		11. 식품영업신고등 재교부			△	"	③	○		↑	"
		12. 식육운반영업허가 및 변경허가			△	"	③	○		↑	"
		13. 주문식단체업소 추진			△	"	③	○		↑	"
		14. 숙박영업허가(등급별 변경, 휴업)			△	숙박업법시행령	③	•			"
		15. 숙박업 검사 및 행정처분			△	"	③	•			"
		16. 숙박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수리			△	"	③	•			"
		17. 공중목욕장업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	공중목욕장업법 시행령	③	•			"
		18. 공중목욕장업 검사 및 행정처분			△	"	③	•			"
		19. 공중목욕장업 휴업등 신고수리			△	"	③	•			"
		20. 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유기장업법시행령	③	•			"
		21. 유기장 업소검사			△	"	③	•			"
		22. 유기장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수리			△	"	③	•			"
		23. 이미용업소 검사 및			△	이용사 및 미	③	•			"

部署別 案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四般	機關			固有	四般	機關	
사회과 위생계	행정처분				용사법시행령 국제행사대비 환경점검업소 개선지침	③	*			동 9조2항2의아
	24. 환경점검업소 시설개 선			△						
	25. 재단법인 사설묘지 등 의 설치허가서 진달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률시행령	③ ③			*	동 9조2항 단서
	26. 재단법인 사설묘지 등 의 관리인 선임 (변경)신고서 진달			△	"	③ ③			*	"
	27. 사설묘지 검사 및 행 정처분			△	"	③			*	"
	28. 묘지수급 중장기 계 획수립			△	"	③			*	"
	29. 시체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		가정의례에 관 한 법률 5 조	①	○		↑	동 9조2항2의가
	30. 간이급수시설 수질관 리			△		①	*			"
	31. 간이급수시설 사업장 선정사업 시행감독			△		③	*			"
	32. 간이급수시설 사업설 계 승인			△		③	*			"
	33. 간이급수시설 사업유 지 관리상황 보고			△		③	*			"
	34.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환경보전법 시행령	③			*	동 11조의 7
	35. 배출시설 조사			△	"	①			*	"
	36. 배출시설 관리인 선 임 (변경) 신고수리			△	"	①			*	"
	37. 공해배출업소 지도단 속(개선 및 조업정지 명령, 부과금 징수)			△	"	③			*	"
	38. 사업장 이전 명령			△	"	③			*	"
	39.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 한 폐쇄조치			△	"	③			*	"
	40. 산업폐기물 운반신고			△	"	③			*	"
	41. 사업장 오물처리 지 도감독	△			오물청소법 시행령	③	*			동 9조2항2의자
	42. 가축사육제한조례 제 정운영	△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	③	*			"
	43. 대청소 실시 지도감독	△				③	*			"
	44. 분뇨오수 정화시설 유 지관리 확인 및 조치	△			오물청소법 시행령	③	*			"
	45. 오물(분뇨, 오수)처	△			"	①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状況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協働	協働			固有	協働	協働	
사 회 과	위 생 계									
	리시설 관리운영	△								
	46. 오물처리사업 운영	△			오물청소법 시행령	①	*			동 9조 2항 2의자
	47. 오수정화시설 설치신 고 수리 및 준공검사	△			"	①	*			"
	48. 오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			"	③	*			"
부 녀 청 소 년 계	49. 공중변소 설치 및 유 지관리	△			"	①	*			"
	50. 특별청소구역 지정	△			"	③	*			"
	1. 복지시설 입소비용 수납	△			사회복지사업법 13 조	①	○		↑	동 9조 2항 2의나
	2. 자치단체의 복지시설 설치	△			심신장애 자복 지법 16조 2항	①	○	↑		"
	3. 결혼예정자 실태조사 및 제도	△			부녀복지사업 실천 추진계획	①	*			동 9조 2항 2의아
	4. 규수학교 설치운영	△			"	①	*			동 9조 2항 2의라
	5. 합동결혼, 회갑연장	△			"	①	*			"
	6.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			국무총리훈령 173 호	①	*			"
	7. 부녀자 교양지도 사업	△			지 침	①	*			"
	8. 주부군민대학 운영	△			부녀복지사업 계획 및 사업 지침	①	*			"
	9. 여성단체조직 활성화 를 위한 협의회 운영	△				①	*			"
	10. 새마을부녀회 운영	△			부녀사업실천 추진계획 및 지침	①	*			"
	11. 자율시범부녀회 운영 지도	△			지 침	①	*			"
	12. 부녀상담사업	△			"	①	*			"
	13. 윤락여성 선도사업	△			윤락행위방지 법 7 조	①	*			"
	14. 해외취업자 가정주부 지도	△			부녀사업실천 추진계획	①	*			"
	15. 모자 가정상담 지도	△				①	*			"
	16. 폐품수집	△				③	*			"
	17. 절미저축	△				③	*			"
	18. 아동복지 지도원 임명 및 해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③	○		↑	"
	19. 아동복지법인 지도감 독	△			"	③	○		↑	"
	20. 아동복지시설 허가변	△			"	③	○		↑	"

部 室 課	別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 配 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配屬	機關			固有	配屬	機關	
사 회 과	부 녀 청 소 년 계	경									
		21. 아동복지운영 및 양육비 지급	△			아동복지법 시행령	①	○		↑	동 9조2항2의라
		22.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허가 휴지 및 취소	△			심신장애자복지법	③	○		↑	"
		23.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지도감독	△			"	③	○		↑	"
		24. 심신장애자 시설이용자 비용수납	△			"	①	○		↑	"
		25. 심신장애자 복지지도원 위촉 및 해임	△			"	③	○		↑	"
		26. 어린이날 행사실시	△			아동복지법 4조	①	*			"
		27. 청소년대책위원회	△			대통령령 8690 호	①	*			"
		28. 청소년 선도 계몽	△				①	*			"
		29. 부랑청소년 단속	△			아동복지법	③	*			"
		30. 부랑아 보호 및 연고자 인도	△			"	①	*			"
		31. 위탁보호 신청	△			"	③	*			"
		32. 입양위탁	△			"	①	*			"
		33. 입소아동의 수용보호 및 퇴소조치	△			"	①	○		↑	"
		34. 아동에 관한 조사	△			"	③	*			"
		35. 기, 미아 수배보호	△			"	③	*			"
		36. 입양 대상아동 확인 증명	△			입양특례법 6조2항	③	○		↑	"
		37. 부양 의무자 확인을 위한 광고증명	△			"	③	○		↑	"
		38. 아동복지업무	△			"	③	*			"
		39. 아동상담소 운영	△			"	①	*			"
농 산 과	산 업 행 정 계	1. 농산행정의 기획조성	△				③	*			동 9조2항3의나
		2. 농지보전 및 이용	△		△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		*	동 9조2항 단서
		3. 새마을소득종합개발 사업 추진	△				③	*			동 9조2항3의마
		4. 농어민후계자 육성	△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	①	○		↑	"
		5. 영세농자립시범사업 추진	△				①	*			"
		6. 영세농 자립시범 대상 농가 선정	△				①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跨股	稅關			固有	跨股	稅關	
농 산 과 행 정 계	7. 국가소송업무 수행 (분배농지)			△	농지개혁법시 행령	③			*	동 9조2항 단서
	8. 상환증서 및 농수산부 장관 위임장 교부			△	"	③			*	"
	9. 위토 해제신고	△				③	*			동 9조1항
	10. 농산물 협동출하반 조 직 및 정비			△	농산물가격유 지법시행령	③	○		↑	동 9조2항3의나
	11. 농산물 유통 정보지 배부	△			"	①	○		↑	"
	12. 농산물가격 및 도매시 장 대량 소비처 가격 조사 통보			△	"	①			*	동 11조의 2
	13. 상설시장 개설허가 변 경 및 폐지허가			△	시장법시행령	③	*			동 9조2항3의카
	14. 상설시장에 대한 명령			△	"	③	*			"
	15. 상설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			△	"	③	*			"
	16. 상설시장 환경정비	△				③	*			"
	17. 불가단속			△	불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③			*	동 11조의 2
	18. 가격표시제 실시			△	"	③			*	"
	19. 소비자보호 신고소 운영			△	소비자보호법	①	○		↑	동 9조2항3의가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업무			△	"	①			*	동 11조의 2
	21. 계량기 증명업 등록			△	계량기검성규 칙	①			*	동 11조의 5
	22. 계량기 정기검사			△	"	①			*	"
	23. 계량기 사업장의 수리 업 신고(저울류)			△	"	③			*	"
	24. 계량기 수리점검 (저울류)			△	"	③			*	"
	25. 부정계량기 단속			△	"	③			*	"
	26. 계량기 수입신고			△	"	③			*	"
	27.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 시된 계량기 제작(수 입)신고			△	"	③			*	"
	28. 에너지관리대상자 지 정 취소			△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③			*	동 9조2항 단서
	29. 에너지관리를 위한 보 고 및 검사			△	"	③			*	"
	30. 검사대상기기의 사용 정지 명령			△	"	③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位置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四股	秘關			固有	四股	秘關	
농 산 과 산 업 행 정 계	31. 특정연 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승계)			△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③			*	동 9조2항 단서
	32. 특정연 사용기자재 시 공업 취소, 정지			△	"	③			*	"
	33. 특정연 사용기자재 휴 ·폐지 신고			△	"	③			*	"
	34. 연탄수급 배정			△	석탄수급 조정 에 관한 임시 조치법	①			*	"
	35.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 변경허가, 승계 신고			△	석유사업법시행 령	②			*	"
	36. 고압가스 일반제조허 가, 변경허가			△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③			*	"
	37. 용기, 냉동기 및 특 정설비 제조허가, 변 경허가			△	"	③			*	"
	38.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 해임			△	"	③			*	"
	39. 고압가스 저장·판매 업허가, 변경허가			△	"	③			*	"
	40. 특정고압가스 사용신 고			△	"	③			*	"
	41. 액화석유가스 사업허 가, 변경허가			△	석유사업법	③			*	"
	4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에 대한 조치명령			△	"	③			*	"
	43.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			△	"	③			*	"
	44. 액화석유가스 사용신 고			△	"	③			*	"
	45. 수출실적 보고			△	수출점사법	③			*	"
	46. 관광민예품 개발유도					①	○		↑	동 9조2항3의하
	47. 공장설치(변경)신고			△	공업배치법	③			*	동 9조2항 단서
	48. 공장신설, 증설 또는 이전허가			△	"	③			*	"
	49. 공장신설 완료보고			△	"	③			*	"
	50. 신고 또는 허가사항 통보			△	"	③			*	"
	51. 공장등록			△	"	③			*	"
	52. 공장등록 취소			△	"	③			*	"
	53. 공장실태 조사			△	공업배치법	③			*	"
	54. 생산실적 신고			△	공산품품질관 리법	③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口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 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四配	四配			固有	四配	四配		
농 산 과	산 업 행 정 계	55. 조선사업등록, 변경등 록 취소			△	공업발전법	③			*	동 9조2항 단서
		56. 조선사업등록 수수료 징수			△	"	③			*	"
		57. 조선사업에 대한 보 고명령			△	"	③			*	"
		58. 조선사업 휴·폐업 보고			△	"	③			*	"
		59. 기계공업등록, 취소			△	기계공업진흥법	③			*	"
		60. 새마을공장 육성관리			△	농가공산품개 발규정	①	○		↑	동 9조2항3의타
		61. 광산물 품질관리	△			광산물품질관 리법	①			*	동 11조의 7
		62. 광업사업안 공익조치	△			광업등록령	③			*	동 9조2항 단서
		63. 광산불생산실적보고 서 및 실적증명			△	광업법시행령	③			*	"
		64. 염(합수) 제조 허가 사항 변경신고			△	염관리법	③			*	"
		65.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 기재사항 변경			△	전기공사업법	③			*	"
		66. 제 2종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	"	③			*	"
		67. 일반용 전기공작물 관리			△	"	③			*	"
		68. 자가용 전기공작물 사 용 개시신고			△	"	③			*	"
		69. 창고업허가, 변경 및 지도감독			△	창고업법시행 령	③	*			동 9조2항3의차
		70. 창고업 상황보고			△	"	③	○		↑	"
농 사 계	1. 농정협의회 운영 2. 특수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서 전달 3. 단위조합의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4. 식량증산계획 수립 5. 미곡증산 6. 못자리 설치 7. 모내기 추진 8. 식량증산시책 평가 9. 경지이용도 제고	△				농업협동조합 법	③	*			동 9조2항3의나
					△	"	③			*	동 9조2항 단서
					△	"	③			*	동 11조의 2
		△					③	*			동 9조2항3의나
			△			식량증산계획	③	*			"
			△			못자리 설치계 획	③	*			"
				△		식량증산계획	③	*			"
				△		"	③	○		↑	"
		△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		↑	"

部 署 別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状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室 課	係		固有	四股	複關			固有	四股	複關	
농 산 과	농 사 계	10. 쌀다수확 선도농가 육성			△		③	○		↑	동 9조2항3의나
		11. 농작물 한해대책			△	농업재해대책 법지침	①	*			"
		12. 농작물 수해대책			△	"	①	*			"
		13. 주요농작물 종자보급 총 공급	△			주요농작물종 자법	①			*	동 9조2항 단서
		14.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추진			△	"	③	*			동 9조2항3의나
		15. 병충해 공동방제단 조직 운영			△	식물방역법	③	*			"
		16. 병충해 상습지 관리			△	병충해방제세 부실천요령	③	*			"
		17. 항공방제 실시			△		①			*	동 9조2항 단서
		18. 논물가누기	△				①	*			동 9조2항3의나
		19. 농작물 재해보상			△	농업재해대책 법시행령	①			*	동 9조2항 단서
		20. 취약지 영농관리	△				③	*			동 9조2항3의나
		21. 벼베기	△				③	*			"
		22. 휴만잡초 소각		△			①	*			"
		23. 들쥐잡기	△				③	*			"
		24. 개토사업추진계획 수 립		△		지력증진법 2,3,4,5,8조	①	*			"
		25. 개토장비계약 및 사 업추진 지도감독		△			①	○	↑		"
		26. 퇴비증산사업계획 수 립 및 지도감독		△		지력증진법	③	*			"
		27. 벼짚갈기		△			③	○	↑		"
		28. 깊이갈이		△		지력증진법	③	*			"
		29. 잡곡증산		△		식량증산계획	③	*			"
		30. 서류증산		△		"	③	*			"
		31. 두류증산		△		"	③	*			"
		32. 맥류증산		△		"	③	*			"
		33. 농약 수급관리		△		농약관리법	③	○		↑	"
		34. 농약관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		"	③	○		↑	"
		35. 토양개량제 석회공급		△		지력증진법	③	○		↑	"
		36.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급		△		농토배양사업 지침	③	○		↑	"
		37. 토양개량제 석고공급		△			③	○		↑	"
		38. 새마을기계화 영농단 육성		△		농업기계화촉 진법시행령	③	○		↑	"
		39. 농업기계 공급계획 수립		△		"	③	○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負擔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配分	機關			固有	配分	機關	
농 산 과	농 사 계	40. 농업기계 사후봉사 (관리)	△		농업기계화촉 진법시행령	①	*			동 9조2항3의나
		41. 농업기계 기술훈련 대상자 선정		△	"	③	○		↑	"
		42. 영농자재 공급		△	"	③	○		↑	"
	특 작 계	1. 소득전략작목 개발	△			③	*			동 9조2항3의라
		2. 특용작물 생산계획 수 립 및 지도		△		③			*	동 9조2항 단서
		3. 시설채소생산 및 시 장출하 지도		△		③			*	"
		4. 유지작물 생산계획 수 립 및 지도		△		③			*	"
		5. 약용작물 동향파악 및 지도		△		③			*	"
		6. 부정종묘 유통단속		△		③			*	"
		7. 복합영농 시범단지 선 정		△		③	○		↑	동 9조2항3의라
		8. 복합영농 군단위 기 획단 운영	△			③	*			"
		9. 복합영농 시범사업 경 영 성과분석	△			③	*			"
		10. 유휴공한지 활용 가 능지역 조사		△		③	*			동 9조2항3의차
		11. 유휴공한지 활용계획 수립	△			③	*			"
산 림 과	식 수 계	1. 산림행정의 기획조정	△			③	○		↑	동 9조2항3의나
		2. 임업융자 및 관리		△		①	○		↑	"
		3. 임업기술 개량 보급		△	산림법시행령	①			*	동 9조2항 단서
		4. 일반개발지역의 사업 시행	△			③	○		↑	동 9조2항3의나
		5. 보안림내에서의 사업 허가		△	산림법시행령	①			*	동 9조2항 단서
		6. 보안림 지정 및 해제 진달		△	"	①			*	"
		7. 사방지정지내사업허가 신청서 진달		△	사방사업법시 행령	③			*	"
		8. 사방지정지해제신청서 진달		△	"	③			*	"
		9. 종묘관매업의 등록신 청서 진달		△	종묘관리법시 행령	③			*	"
		10. 임목벌채 허가		△	산림법시행령	①	○		↑	동 9조2항3의나
		11. 임산액 현지조사 및	△		"	③			*	동 9조2항 단서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 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四股	機關			固有	四股	機關	
산림과 식수계	시장조사 보고									
	12. 영림계획사업 신고처리			△	산림법시행령	①	○		↑	동 9조2항3의나
	13. 사유림 영림계획 인가			△	"	①	○		↑	"
	14. 양묘사업자 지도단속			△	종묘관리법	③			*	동 9조2항 단서
	15. 묘포구입 및 수급			△	"	③			*	"
	16. 양묘사업 상황보고			△	"	③			*	"
	17. 가로수 수종갱신	△			"	①	*			동 9조2항3의나
	18. 조림검목			△	"	③			*	동 9조2항 단서
	19. 조림 및 사업명령			△	산 림 법	③			*	"
	20. 연료림 관리	△			"	③	○		↑	동 9조2항3의나
보호계 호계	21. 사유림 영림계획사업 위반에 대한 경지명령			△	"	③	○		↑	"
	1. 산림훼손 허가			△	산림법시행령	①	○		↑	동 9조2항3의나
	2. 사유림 내 산림훼손 신고처리			△	"	③	○		↑	"
	3. 암산물 채취허가			△	"	①	○		↑	"
	4. 국유임야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 및 허가 취소	△			국유재산관리 법, 산림법시 행령	③			*	동 9조2항 단서
	5. 국유림 영림계획 승 인	△		△	"	③			*	"
	6. 국유림 영림계획사업 신고원증 교부				"	①			*	"
	7. 국유임야 분수림 설정			△	"	①			*	"
	8. 국유임산물 매각			△	"	③			*	"
	9. 국유림 내 산림훼손 신고처리			△	"	①			*	"
	10. 제재시설 설치허가			△	"	①			*	"
	11. 국유임야 매각			△	"	③			*	"
	12. 천연보호림의 지정 진달			△	"	③			*	"
	13. 임목벌채지 지도단속			△	산 림 법	③	○		↑	동 9조2항3의나
	14. 임목벌채 지도			△	"	③	○		↑	"
	15. 박제업자의 등록처리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③	○		↑	"
	16. 야생조수 인공사육 허가			△	"	③	○		↑	"
	17. 수렵 면허신청			△	"	③	○		↑	"
	18. 부정임산물 유행차량 의 면허증 회수			△	산 림 법	③			*	동 9조2항 단서
	19. 사유림 내에 대한 산			△	"	③	○		↑	동 9조2항3의나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固有 亞船 機關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固有 亞船 機關			備考
산업과	보호계	화 예방시설 명령									
		20. 입화 허가처리			△	산 립 법	③	○		↑	동 9조2항3의나
		21. 생산확인용 국인파기			△	"	③	○		↑	"
		22. 임산연료대책		△		산림법시행령	③	○		↑	"
식산과	양정계	1. 식산행정 의 계획조정			△		③	*			동 9조2항3의나
		2. 정부양곡 수불			△	양곡관리법	③			*	동 9조2항 단서
		3. 정부양곡 방출, 매출			△	"	③			*	"
		4. 양곡유통단속			△	"	③			*	"
		5. 양곡매매업(도, 소, 중개업) 허가			△	"	③			*	"
		6. 양곡매매업시설 양도 및 임대 변경승인			△	"	③			*	"
		7. 양곡매매업 행정처분			△	"	③			*	"
		8. 양곡매매업의 휴업 또는 폐지신고			△	"	③			*	"
		9. 비상대비업무(충무계획)			△	"	③	*			동 9조1항
		10. 식량 소비절약 및 식생활 개선		△			①	○		↑	동 9조2항3의카
		11. 음식판매업소 지도감독			△		③	*			"
		12. 하·추곡 수매조정 및 시행			△	양곡관리기금법	①			*	동 9조2항 단서
		13. 정부양곡 교환			△	"	①			*	"
		14. 정부양곡 대여			△	"	①			*	"
		15. 정부양곡 보관관리			△	양곡관리법	③			*	"
		16.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	"	③			*	"
		17. 정부양곡 혼증소독 및 약품관리			△	"	③			*	"
		18. 정부양곡 조작			△	"	③			*	"
		19. 취참기사업 실시			△	"	③	○		↑	동 9조2항3의나
		20. 정부양곡 전산처리 입력자료 작성보고			△	"	③			*	동 9조2항 단서
		21. 정부양곡 가공지령			△	"	③			*	"
		22. 정부양곡 가공청산			△	"	③			*	"
		23. 정부양곡 포장재관리			△	"	③			*	"
		24.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관리			△	"	③			*	"
		25.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도감독			△	"	③			*	"
		26.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			△	"	③	○		↑	동 9조2항3의카

部 署 別 案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處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식 산 과	양 정 계	27.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양도, 임대 변경승인		△	양곡관리법	③	○		↑	동 9조2항3의차
		28. 소규모 양곡가공업의 휴업 및 폐지신고		△	"	③	○		↑	"
		29.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제분업)신고		△	"	③	○		↑	"
		30.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의 양도, 임대, 변경신고		△	"	③	○		↑	"
		31. 일정규모 가공업의 휴업 또는 폐지신고		△	"	③	○		↑	"
		32. 소규모 양곡 업, 도성 공장지도		△	"	③	○		↑	"
		33. 양곡관리기금(특별회계) 전도자금 운영		△	양곡관리기금법	③			*	동 9조2항 단서
		34. 양곡관리기금 수입징수 운영		△	"	③			*	"
		35. 양특물품관리		△	"	③			*	"
		36. 정부양곡 제조자 도급계약 및 경유 전달		△	"	③			*	"
		37. 양특 및 기금회계 결산대사		△	"	③			*	"
축 산 계		1. 축산진흥종합계획 수립	△			③	○		↑	동 9조2항3의나
		2. 보조금 집행		△	보조금관리법	③			*	동 9조2항 단서
		3. 가축통계조사		△	축 산 법	③	○		↑	동 9조
		4. 낙농기술교육		△	"	①			*	동 11조의7
		5. 가축시장 개설허가	△			①	*			동 9조2항3의차
		6. 가축시장 업무관리자 지정	△			③	*			"
		7. 가축시장의 감독	△			③	*			"
		8. 축산물 가격안정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축산업법	①			*	동 9조2항 단서
		9. 축산물 가격조사		△	"	③			*	"
		10. 부정 축산물 단속		△	"	①			*	"
		11. 소 번식단지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	"	①	*			동 9조2항3의나
		12. 소 번식단지 사후관리 실태조사		△	"	③	○		↑	"
		13. 번식우단지 추진상황 보고		△	"	③	○		↑	"
		14. 소 번식단지 육성 및 사후관리 지도		△	"	③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식 산 과	측 정 계	15. 도입육우 입식 및 관리			△ 축산업법	①			*	동 9조2항 단서
		16. 암송아지 입식 사업 추진			△ "	①			*	"
		17.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			①	*			동 9조2항3의나
		18. 전업양축농가육성사업 추진			△ "	①	○		↑	"
		19. 종축의 정기검사 및 합격증명서 발급			△ 축산물가공처리법	③	*			"
		20. 종축등록과 검정사업 협조			△ 축 산 법	③	○		↑	"
		21. 종축의 대여			△ "	③	○		↑	"
		22. 불량종축의 거세시술 증명서 발부 및 폐가 축보상금 지급			△ "	③			*	동 11조의7
		23. 군 및 도 축산진흥대회	△		"	③	○		↑	동 9조2항3의나
		24. 종계업의 등록 및 취소			△ "	③	○		↑	동 9조2항3의차
		25. 부화업의 허가 및 취소 영업정지			△ "	③	○		↑	"
		26. 종계업과 부화업의 감독			△ "	③	○		↑	"
		27. 종계장과 부화장의 정기검사			△ "	③	○		↑	"
		28. 가축 인공수정소의 감독			△ "	③			*	동 11조의7
		29. 가축 인공수정소의 등록			△ "	③			*	"
		30. 가축 인공수정소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	③			*	"
		31. 수정의 제한사업 실시			△ "	③			*	"
		32. 사료(정부관리 양곡 부인물) 배정			△ "	①			*	동 9조2항 단서
		33. 자급사료 증산사업계획 및 세부추진요령 시달 교육			△	①	○		↑	동 9조2항3의나
		34. 볏짚처리 사료제조사업 추진			△	①	○		↑	"
		35. 사료작물 재배지도			△	①	○		↑	"
		36. 논 밭그루사료 녹비 작물 재배			△	①	○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配屬	機關			固有	配屬	機關	
식 산 과	측 경 계	37.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운영		△	초지법시행령	③			*	동 11 조의 3
		38. 초지조성 허가 및 취 소		△	"	③			*	"
		39. 초지의 대지관리자 지정	△			③			*	"
		40. 초지전용허가신청서 경유 전달		△	"	③			*	"
		41. 초지관리 실태조사	△			③			*	"
		42.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	가축전염병예 방법시행령	①	○		↑	동 9 조 2 항 3 의 자
		43. 도축검사		△	"	①	○		↑	동 9 조 2 항 3 의 나
		44. 도축장 운영 및 관리	△		축산업법	①	○	↑		"
		45. 가축질병 예방	△		가축전염병예 방법시행령	①	○	↑		동 9 조 2 항 3 의 자
		46. 가축전염병 검진		△	"	①	○		↑	"
		47. 가축의 폐사체의 처 리		△	"	①	○		↑	"
		48. 환축의 신고처리		△	"	③	○		↑	"
		49. 가축전염병 이환축살 처분명령		△	"	③	○		↑	"
		50. 축산물 검사원 임명		△	"	③	○		↑	"
		51. 동물병원 개설		△	"	①	○		↑	"
		52. 수의약사 감시		△	"	③	○		↑	"
		53. 동물병원 지도감독		△	"	①	○		↑	"
		54. 동물병원 휴업·폐업 의 신고처리		△	"	③	○		↑	"
		55. 광수의 위촉	△		"	①	○		↑	"
		56. 광수의 지도감독	△		"	③	○		↑	"
		57. 가축방역관 위촉 및 지도감독	△		"	③	○		↑	"
잠 업 계	1. 뽕발조성계획 수립 (상요공급) 2. 뽕발관리 추진 3. 잠종 소요량 판단 4. 잠병 방제대책 5. 개량잠주 보급 6. 뽕발 및 잠실 실태조 사 7. 잠업재해대책 8. 잠견생산 및 공판 9. 잠업기술 보급 10. 잠실건축 촉진 11. 치잠 공동사육장 관리	△			잠업법시행령	③	○		↑	동 9 조 2 항 3 의 나
			△		"	③	○		↑	"
				△	"	③	○		↑	"
				△	"	③	○		↑	"
				△	"	①	○		↑	"
			△		"	③	○		↑	"
				△	"	③	○		↑	"
				△	"	①	○		↑	"
				△	"	①	○		↑	"
			△		"	③	○		↑	"
			△		"	③	○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狀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四般	機關			固有	四般	機關	
식 산 과	수	1. 수산행정 의 기획조정	△			③	*			동 9조2항3의나
	산	2. 어민후계자 선정에 따 른 협조		△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	③		*		동 9조2항 단서
	계	3. 어민후계자사업 추진		△	"	①		*		"
		4.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	수산업법시행 령	③		*		"
		5. 불법어업자 중 사법 처분 대상자 사건송 치		△	"	③		*		"
		6. 전시에선 소산		△		③	*			동 9조2항3의나
		7. 이차보상 확인		△		③	*			"
		8. 새마을양식 계조직 및 운영관리	△	△		①	*			동 9조2항3의차
		9. 어업권분할허가신청서 진달		△	수산업법시행 령	③		*		동 9조2항 단서
		10. 어업권변경허가신청서 진달		△	"	③		*		"
		11. 어업권존속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진달		△	"	③		*		"
		12. 어업권이전인가신청서 진달		△	"	③		*		"
		13. 어업권 휴업신고		△	"	③		*		"
		14. 어업권 관리 실태조사 보고		△	"	③		*		"
		15. 어장이용개발승인신청 서 진달		△	"	③		*		"
		16. 어업면허신청서 진달		△	"	③	○		↑	"
		17. 연안유 유자망 어업 허가		△	"	③	○		↑	동 9조2항3의차
		18. 연안 연승 어업허가		△	"	③	○		↑	"
		19. 연안 통발 어업허가		△	"	③	○		↑	"
		20. 연안 유자망 어업허가		△	"	③	○		↑	"
		21. 수산종보생 산업허가신 청서 진달		△	"	③		*		동 9조2항 단서
		22. 수산시설물 사후관리 지도		△	수산업법시행 령	③	○		↑	동 9조2항3의차
		23. 수산시설물 관리자 변경 승인		△	"	③	○		↑	"
		24. 어선건조 발주허가		△	"	③	○		↑	"
		25. 어선개조 발주허가		△	"	③	○		↑	"
		26. 어선 등록사항 신청		△	"	③	○		↑	"
		27. 어선 표지판 제작의 뢰 및 부착		△	"	③	○		↑	"
		28. 어선 총톤수 측정 및		△	어선법시행령	③	○		↑	"

部署別 案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增設	機關			固有	增設	機關	
식산과	수산계	개측								
	29. 어선원부 등본발부			△	어선법시행령	③	○		↑	동 9조 2항 3의라
	30. 어선안전조업에 따른 어민지도			△	"	①	○		↑	"
	31. 어선 선명 변경승인			△	"	③	○		↑	"
	32. 수산제조업허가신청서 진달			△	수산업법시행령	③			*	동 9조 2항 단서
	33. 수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진달			△	"	③			*	"
	34. 수산제조업 신고 및 휴업신고			△	"	③			*	"
	35.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관리			△	"	①			*	동 9조 2항 3의차
	36. 내수면 부정어업 단속			△	"	③	○		↑	"
	37. 내수면 어업허가			△	"	③	○		↑	"
	38. 낚시터 자원조성 확인			△	"	③	○		↑	"
	39. 내수면 어업 생산고 조사보고			△	"	③	○		↑	동 9조 2항 1의카
	40. 어선건조사업자 선정 추천서 진달			△	어선법시행령	③			*	동 9조 2항 단서
	41. 어선건조사업자 확정 에 따른 보조금교부 신청서 진달			△	"	③			*	"
	42. 어선건조사업 추진			△	"	③			*	"
	43. 어선건조사업 준공계 진달			△	"	③			*	"
	44. 어선동력개량사업자 선정추천서 진달			△	선박법시행령	③			*	"
	45. 어선동력개량사업자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진달			△	"	③			*	"
	46. 어선동력개량사업 추 진			△	"	③			*	"
	47. 어선동력개량사업 준 공계 진달			△	"	③			*	"
	48. 해면수산증식 기반시설 조성			△	수산업법시행령	③	○		↑	동 9조 2항 3의나
	49. 수산증식시설 선정 및 준공검사			△	어업법시행령	③	○		↑	"
	50. 수산증식 시설관리			△		③	○		↑	"
	51. 어항수축사업			△		①	○		↑	"
	52. 어항관리			△		①	○		↑	"

部署別		單位事務名	事務配分狀態			關係法規	再配分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室課	係		固有	四體	校關			固有	四體	校關	
식산과	수산계	53. 어획물의 양육 및 전 재허가			△	어항법시행령	③	○		↑	동 9조 2항 3의나
		54. 어획물 판매장소의 지 경			△	"	①	○		↑	"
		55. 위판장 보수확장 시설 사업			△	"	①	○		↑	"
건설과	관리계	1. 교통불편신고센터 설 치 운영			△	교통안전법	①	*			동 9조 2항 3의차
		2. 개인택시 자동차운송 사업면허			△	자동차운수사 업법	①	*			"
		3. 자동차운송사업 신규 면허			△	"	③	*			"
		4. 시내·외버스 교통량 조사			△	"	③	*			"
		5. 자동차운송사업 개시 기일 연기 승인신청			△	"	③	*			"
		6.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인가			△	"	③	*			"
		7.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 경인가 및 신고			△	"	③	*			"
		8. 자동차 공동운수계약 협정인가 및 변경인가			△	"	③	*			"
		9.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경미한 사고보고처리			△	"	③	*			"
		10. 사업자 금지행위에 대 한 조치			△	"	③	*			"
		11. 사업관리위 위탁 및 수 탁허가			△	"	③	*			"
		12. 자동차 운송사업 개선 명령			△	"	③	*			"
		13.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	"	③	*			"
		14. 자동차운송사업 개시 신고			△	"	③	*			"
		15. 사업 일부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	"	③	*			"
		16. 과징금 부과처분			△	"	③	○		↑	"
		17.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			△	"	③	*			"
		18. 사업의 면허실효 확인			△	"	③	*			"
		19. 자동차운송 알선 사업 의 면허			△	"	③	*			"
		20. 자가용 자동차 공동사 용인가			△	"	③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亞屬	機關			固有	亞屬	機關	
건설과	관리계	21.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의 제한			△	자동차운수사업법	③	*			동 9조2항3의차
		22.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 및 신고			△	"	③	*			"
		23. 법인의 합병과 상속신고			△	"	③	*			"
		24.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 취소 및 정지			△	"	③	*			"
		25. 폐차사업허가			△	"	③	*			"
		26. 폐차업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강제처분)			△	"	③	*			"
		27. 교육훈련담당자 선·해임신고			△	"	③	*			"
		28. 교통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	"	③	*			"
		29. 정비관리자 선·해임신고			△	"	③	*			"
		30. 자동차 정비명령 및 지도감독			△	"	③	*			"
		31.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	"	③	*			"
		32. 전용자동차 설치인가			△	"	③	*			"
		33. 자동차정류장 시설공사 시행인가			△	"	③	*			"
		34. 자동차정류장의 사용 약관인가			△	"	③	*			"
		35. 시외버스정류장 운행 질서 지도감독			△	"	③	*			"
		36. 자동차정류장 사업의 개선명령			△	"	③	*			"
		37. 자동차정류장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	"	③	*			"
		38. 전용자동차 정류장 공동사용명령에 의한 사용약관 인가			△	"	③	*			"
		39. 중기소재지 변동신고			△	중기관리법	③			*	동 9조2항 단서
		40. 설해예방대책 계획수립	△				①	*			동 9조2항2의가
		41. 국유재산 관리계획 실적보고			△	국유재산법	③			*	동 9조2항 단서
		42. 토석채취허가 사무지도감독	△			도시계획법	③	*			동 9조2항3의차
		43.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물 단속			△	국토이용관리법	③	*			동 9조2항4의사
		44.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신증축 허가			△	"	③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形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四配	六配			固有	四配	六配	
전 실 과	관									
	리									
	계									
	45. 개발제한구역 점검 및 대장관리			△	국토이용관리법	③	*			동 9조 2항 4의사
	46.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황보고			△	"	③	*			"
	47. 유선 및 도선업의 경 영신고	△			유선 및 도선업 법	③	*			동 9조 2항 3의차
	48. 유선 및 도선업에 대 한 안전검사	△			"	③	*			"
	49. 안전운행을 위한 유조 선 지도감독	△			"	③	*			"
	50. 기성제 정비	△			하 천 법	③	*			동 9조 2항 4의아
	51. 배수문 유지관리	△			"	③	*			"
	52. 하천연안 구역내행위 허가 및 제한	△			"	③	*			"
	53. 유수의 점용		△		"	③		*		동 9조 2항 단서
	54. 지방준용 하천관리의 합병승계 상속신고		△		"	③		*		"
	55. 하천의 점용허가			△	"	③		*		"
	56. 지방·준용하천부속물 점용허가			△	"			*		"
	57. 하천공작물의 신·개 축 변경허가	△			"	③		*		"
	58. 지방준용하천내 토지 의 굴착 철도 형상변 경허가	△			"	③		*		"
	59. 지방준용하천의 인접 지역에서 유수채취행위		△		"	③		*		"
	60. 사리채취허가			△	"	③		*		"
	61. 지방준용하천에 대한 허가고시	△			"	③		*		"
	62. 지방준용하천의 원상 회복면제	△			"	③		*		"
	63. 지방준용하천내 공작 물 신·개축 준공검사			△	"	③		*		"
	64. 지방준용하천내 점, 사 용료 징수	△			"	③		*		"
	65. 기타 하천수입금 징수 및 관리	△			"	③		*		"
	66. 지방준용하천 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출입			△	"	③		*		"
	67. 지방준용하천내 수리 권 행사의 신청 및 조정			△	"	③		*		"
	68. 지방준용하천내 점용 공사의 대행			△	"	③		*		"

部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亞體	機關			固有	亞體	機關	
건 설 과	관 리 계	69.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	△			하 천 법	③			*	동 9조2항 단서
		70. 법령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감독	△			"	③			*	"
		71. 지방준용하천내 점·사용에 대한 공익을 위한 조치	△			"	③			*	"
		72. 하천에 관한 허가효력의 상실 및 효력회복	△			"	③			*	"
		73. 케천부지 등의 교환양여	△			"	③			*	"
		74. 하천편입용지 보상	△			"	③			*	"
		75. 무단점용자 단속		△		"	③			*	"
		76.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			"	③	*			동 9조2항 4의아
		77. 재해대책 계획수립	△			풍수해대책법	③	*			동 9조2항 4의하
		78.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			"	③	*			"
		79. 재해대책조직의 정비	△			"	③	*			"
		80. 재해발생우려 물건의 제거	△			"	③	*			"
		81. 재해발생 또는 우려시 퇴거명령	△			"	③	*			"
		82. 피해상황의 보고	△			"	③	*			"
		83. 응급조치	△			"	③	*			"
		84. 재해대장의 작성 및 보관	△			"	②	*			"
		85. 재해위험지역 지정		△		"	③	*			"
		86. 차량유지관리	△			"	③	*			"
		87. 공유수면 점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①			*	동 9조2항 단서
		88. 공유수면 사리채 취허가		△		"	①			*	"
		89.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 허가		△		"	③			*	"
		90. 공유수면내 굴착허가		△		"	③			*	"
		91. 공유수면내 유무수 허가		△		"	③			*	"
		92.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징수		△		"	③			*	"
		9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및 취소진달		△		"	③			*	"
		94.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징수		△		"	③			*	"
		95. 공유수면 공작물 개축 허가		△		"	③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邸體	機關			固有	邸體	機關	
건 실 과	주 택 계	1.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	△			①	*			동 9조 2항 4의바
		2. 무허가 건축물 단속	△		건축법시행령	③	*			"
		3.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협의	△		군사시설보호법	③	*			"
		4. 주택개량사업계획 수립	△			③	*			"
		5. 위생변소 개량사업 추진	△			①	*			동 9조 2항 4의마
		6. 농촌주택 택지매입 및 주택융자금 회수관리	△			①	*			동 9조 2항 4의바
		7. 건축허가 통계보고	△		건 축 법	③	*			"
		8. 위반건축물 설계자 등 에 대한 조치보고	△		"	③	*			"
		9. 가설건축물 축조승인	△		"	③	*			"
		10. 특정건축물 정리	△		"	③	*			"
		11. 건축물 가사용 승인	△		"	③	*			"
		12. 건축허가시 소방서 협 의	△		"	③	*			"
		13. 건축준공검사(중간검사)	△		"	③	*			"
		14. 개인택지 저당권 설치	△		"	③	*			"
		15. 건축착공신고 수리	△		"	③	*			"
		16. 공작물 축조허가	△		"	③	*			"
		17. 건축증개축 신고 수리	△		"	③	*			"
		18.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승인	△		"	③	*			"
		19. 재해위험지역 지정	△		"	①	*			동 9조 2항 4의하
		20.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명령조치	△		"	③	*			동 9조 2항 4의마
		21. 주택자세 생산업자 등 등록소 및 영업정지 처분		△	주택건설촉진법	③		*		동 9조 2항 단서
		22. 건축허가역기원 승인	△		건축법	③	*			동 9조 2항 4의마
		23. 건축선의 지정	△		"	①	*			동 9조 2항 4의다
		24. 건축사무소 지도감독		△	건축사법	③		*		동 9조 2항 단서
		25. 건축허가 취소조치	△		건축법	③	*			동 9조 2항 4의마
		26. 건축용도 변경허가	△		"	③	*			"
		27. 주택자세품질검사의 의뢰		△	주택건설촉진법	③		*		"
		28. 건축허가	△		"	③	*			동 9조 2항 4의마
		29. 공공용지 등기이전	△		"	③	*			동 9조 2항 4의다
		30. 주택건설 사업승인		△	건축법	③		*		동 9조 2항 단서
		31.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서 전달	△		"	③	*			동 9조 2항 4의마
		32. 국민주택 택지매입자금 융자 및 주택 융자금 불입	△		주택건설촉진법	③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건설과	농지계	1. 한해대책본부 설치운영		△	농업재해대책법	③	*			동 9조2항4의차
		2. 관정양수장비 정비	△			③	*			"
		3. 농업용수 개발사업에따 른 용지보상		△	농촌근대화촉진 법	③		*		동 9조2항 단서
		4. 국유재산소관청 지정		△	국유재산법	③		*		"
		5. 국유부동산 등기촉탁		△	"	③		*		"
		6. 농지개발사업으로 조성 된 재산관리처분 전달	△		농촌근대화촉진 법	③		*		"
		7. 농지개발시설 등록		△	농지개발계획 관리 규칙	③		*		"
		8. 농지개발계획 조직 및 운 영감독	△		"	③	*			동 9조2항3의차
		9. 농지개발관개시설의 개 보수	△		"	①	○	↑		"
		10. 농업용수 개발사업 수 해복구	△		"	①	○	↑		동 9조2항4의하
		11. 농지개발 재산 및 시설 부지 관리계획	△		"	③	○	↑		동 9조2항3의가
		12. 농지확대개발 대상지선 정신청서 전달		△	농지 확대개발촉 진법	③			*	동 9조2항 단서
		13. 소규모(10ha미만)개 간허가		△	"	③	*			동 9조2항3의차
		14. 소규모(10ha미만)개 간준공인가		△	"	③	*			"
		15. 개간허가 사업지도		△	"	③	*			"
		16. 농지확대개발지구내 용 도변경신청서 전달		△	"	③			*	동 9조2항 단서
		17. 농지확대개발사업(야 산개발) 촉진		△	"	①			*	"
		18. 농지확대개발사업지구 내 일시이용지 지정(가 환지)		△	"	③			*	"
		19. 농지확대개발사업 환지 인가신청		△	"	③			*	"
		20. 농지확대개발사업 환지 등기촉탁		△	"	③			*	"
		21. 농지확대개발사업 청산 금 징수 및 교부	△		"	③			*	"
		22. 농지확대개발사업 국공 유지 사후관리		△	"	①			*	"
		23. 농지확대개발사업 지구 내 국공유지 대리경작 자 지정		△	"	①			*	"
		24. 농지확대개발사업 지구		△	"	①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四股	校關			固有	四股	校關	
건설과 농지 계획	내 국공유지 임대									
	25. 농지확대개발사업지구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③			*	동 9조 2항 단서
	내 국공유지 매도진달									
	26. 방조제 사용허가 진달			△	방조제관리법시행령	③			*	"
	27. 농지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	농촌근대화촉진법	③			*	"
	28. 농지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	"	③			*	"
	29. 농지개발사업 환지업무 대행			△	"	③			*	"
	30. 농지개발사업 일시이용지 지정			△	"	③			*	"
	31. 농지개발사업 환지지정			△	"	③			*	"
	32. 농지개발사업 환지인가 신청			△	"	③			*	"
	33. 농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 등기촉탁			△	"	③			*	"
	34. 농지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 징수 및 교부			△	"	③			*	"
	35. 임의개 담허가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③			*	"
토목 계획	1. 토목공사 집행결의	△				③	*			동 9조 2항 4의나
	2. 건설, 토목공사 감독	△				③	*			"
	3. " " 준공공사	△				③	*			"
	4.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공사	△			도시계획법	③	*			동 9조 2항 4의다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입안)	△			"	③	*			"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	③	*			"
	7. 도시계획공람 및 의견청취	△			"	③	*			"
	8.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	△			"	①	*			"
	9.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			"	③	*			"
	10. " 지적승인 및 고시	△			"	①	*			"
	11.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결정	△			"	①	*			"
	12.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	③	*			"
	1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	③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施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건설 실 과	토 목 계	14.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 성사업	△			③	*			동 9조 2항단서
		15. 도로의 제지 또는 용 도 변경	△		도 로 법	①			*	동 9조 2항 4의나
		16. 도신토목 측량실계공 사의 감독	△		도시계획법	③	*			동 9조 2항 4의나
		17.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 수용	△		"	③	*			"
		18.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	①	*			"
		19.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 용부담	△		"	③	*			"
		20. 토지형질 변경허가	△		"	③	*			"
		21. " " " 사무지도 감독	△		"	③	*			"
		22.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결정인가)	△		도시재개발법	③	*			"
		23. 도시재개발 청산관리	△		"	③	*			"
		24. " " "의 관리처분 인가(분할)	△		"	③	*			"
		25.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 지구 획 정리사업법	①	*			"
		26. 토지구획 정리규약 또 는 업무계획의 변경	△		"	③	*			"
		27. 토지구획 정리조합 설 립인가(등기 제한, 건 축물이전제거)	△		토 지구 획 정리사업법	③	*			동 9조 2항 4의나
		28. 토지구획정리사업건축 물 등의 이전세거로 인 한 손실보상	△		"	③	*			"
		29.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인가, 변성, 공고, 환지 처분)	△		"	①	*			"
		30. 토지구획 정리 세비지에 관한 사항	△		"	③	*			"
		3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산	△		"	③	*			"
		32. " " "에 관한 증명	△		"	③	*			"
		33.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 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공원법	③	*			동 9조 2항 4의나
		34.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		"	③	*			"
		35. 비행정침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	③	*			"
		36.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	③	*			"
		37. 공원녹지의 설치 및 관리	△		"	③	*			"

部署別 案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臨時	機關			固有	臨時	機關	
건설 과	토목 계	38. 공원인장료 등의 징수 사항	△			"	③	*			동 9조2항1의카
		39. 도로공사, 측량, 설계, 시공감독	△			건설공사시공 감리규정	③	○		↑	동 9조2항4의다
		40. 도로확장, 포장 공사, 설계, 시공감독	△			"	③	○		↑	"
		41. 사도 설치허가	△			도 로 법	③			*	"
		42. 사도설치 허가보고	△			"	③	*			"
		43. 사도설치 착공신고	△			"	③	*			"
		44. 사도대장 작성	△			"	③	*			"
		45. 사도준공 신고	△			"	③	*			"
		46.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			"	③	*			"
		47. 군도결정 및 고시	△			"	③	*			"
		48. 노선인정 폐지변경에 대한 인가신청	△			"	③	*			"
		49. 군도노선변경 및 폐지 공고	△			"	③	*			"
		50. 일반국도 교통량조사		△		도로교통법	③	*			동 9조2항1의카
		51. 도로보수계획 및 실적 보고	△			도로법(도로보 수유지령)	③	*			"
		52. 도로대장 작성	△			"	②	*			"
		53. 도로 편입용지 보상	△			토지수용법	③	*			"
		54. 도로공사 관급자재 수 급관리	△			도 로 법	③	*			"
		55. 도로노선 조정(변경제 지)	△			"	③	*			"
		56. 국, 지방도로 굴착점용 사업계획 수립	△			"	③		*		동 9조2항단서
		57.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		"	③		*		"
		58. 도로유지 시설물 설치		△		"	③		*		"
		59. 도로변 휴게소 설치		△		"	③		*		"
		60. 군도관리	△			"	③	*			동 9조2항4의차
		61. 도로표지판 정비	△			"	③	*			동 9조2항4의파
		62. 신호정보등 유지관리	△			"	③	*			"
		63. 도로 통행제한		△		도 로 교통법	③		*		동 9조2항단서
		64.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 료 징수	△			"	③	*			동 9조2항4의라
		65. 도로부지 점용허가	△			"	③	*			"
		66. 도로공사 및 굴착허가	△			"	③	*			"
		67. 도로파괴 응급복구	△			"	③	*			"
		68. 수도원 배치 및 관리	△			"	③	*			"
		69. 사도점용료 징수허가 사항보고	△			"	③	*			"
		70.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 담금 징수		△		도 로 법	③		*		동 9조2항단서

部 署 別 案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전 설 과	토 목 계	71. 차량운행 제한			△ 도로교통법	③			*	"
		72. 접도구역 지정 고시	△		"	③			*	"
		73. 접도구역내 불법공작물 단속			△ 도로법	③			*	"
		74. " " 공작물 설치 허가			△ "	③			*	"
		75. 접도구역 관리			△ "	③			*	"
		76. 하천에 관한 관리의 무 의 이전	△		하 천 법	③	*			동 9조2항4의아
		77.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 른 관계관 회의		△	"	③	*			"
		78. 소하천 정비사업 대 상 지구 선정		△	"	③	*			"
		79. " 정비계획 수립		△	"	③	*			"
		80. " 정비사업 기술 지도반 편성운영		△	"	③	*			"
		81.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 측량설계		△	"	③	*			"
		82. " 정비공사 현장 감독		△	"	③	*			"
		83. 지방준용하천공사 준 공검사		△	하 천 법	③			*	동 9조2항단서
		84. 공공하수도 인가신청	△		하 수 도 법	③	*			동 9조2항4의자
		85. " " 관리	△		"	③	*			"
		86. 공사시행 (부대공사)과 유지	△		"	③	*			"
		87. 경용공작물에 관한조사	△		"	②	*			"
		88. 공사시행자에 대한 공 사명령	△		"	③	*			"
		89. 비 관리청의 공사시행	△		"	③	*			동 9조2항4의나
		90. 수선유지 명령	△		"	③	*			"
		91.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		"	③	*			동 9조2항4의마
		92. 중방처리상의 유지관리	△		"	③	*			"
		93. 공공하수도 대장관리	△		"	②	*			동 9조2항4의자
		94. 하수도 점용허가	△		"	③	*			"
		95. " 사용료징수	△		"	③	*			"
		96. 배수시설의 검사	△		"	③	*			"
		97. 하수도 통계보고	△		"	③	*			"
		98.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		도시계획법시행령	③	*			동 9조2항4의다
		99. 토지분할 허가	△		지적법시행령	①			*	동 9조2항단서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四輪	機關			固有	四輪	機關	
건 설 과 계 획 계	1. 관광휴양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관광 사업법	③			*	동 9 조 2항단서
	2. " " 휴·폐업 신고			△	"	③			*	"
	3. 관광지역 정비사업 추진	△			"	③	*			동 9 조 2항 4의가
	4. 국토이용 개발계획 수립		△		국토이용관리법	③			*	동 9 조 2항단서
	5. " " 계획변경		△		"				*	"
	6. 도시계획구역의 국유재산용도폐지			△	국유재산법	③			*	"
	7. 산업기지 개발구역 관리			△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③ ③			*	"
	8.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작성			△	국토이용관리법	③			*	"
	9. 국도 및 지방도 확장 및 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			△		③			*	"
	10. 상수도 일반행정 및 종합 기획 조정	△				③	*			
	11. " 특별회계 운영	△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③	*			
	12. " 품질 및 자재 구입 관리	△			수도급수조례	③	*			
	13. 상수도 지방채매각	△			읍면상수도대 여금고운영조례	③	*			
	14. 읍면상수도 재정용자	△			"	③	*			
	15.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자 관리	△			상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	③	*			
	16. 상수도 사업인가 신청	△				③	*			
	17. " 확장공사	△				③	*			
	18. " 급수공사 시행승인	△			수도급수조례	③	*			
	19. 노후관 개조 및 배수관 포설(관리)	△			"	③	*			
	20. 급수계획 및 기타사항	△			"	③	*			
	21. 읍·면상수도 지도감독	△				③	*			
민 방 위 과 계	1. 시·군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			민방위기본법	③	*			동 9 조 2항 6의가
	2. 군·민방위 업무 추진 지침			△	"	③	*			"
	3. 민방위 행정의 기획조정	△			"	③	*			"
	4. 군민방위협의회 운영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③	*			
	5. 민방위 홍보			△	"	②	*			"
	6.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	"	③	*			"

部 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協助	機關			固有	協助	機關	
민방위과	민방위계	7. 민방위 상황실 운영			△	"					
		8. 인력동원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민방위기본법				*	동 9조2항단서
		9. " " 자원조사 보고			△	"	②			*	"
		10.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관리			△	"	③	*			동 9조2항6의가
		11. 시범 민방위대 육성			△	"	③	*			"
		12. 민방위대 검열 승인신청 및 실시			△	"	③	*			"
		13. 민방위 재해예방 및 복구			△	"	③	*			"
		14. 민방위 신규편 성대원 일제신고			△	"	②	*			"
		15. 학생민방위대 자원정비			△	"	③	*			"
		16. 민방위대 자원현황 보고			△	"	③	*			"
		17. 직장 민방위대 개편 및 해체			△	"	③	*			"
		18. 주민신고상(체제) 정비	△			"	②	*			"
		19. 민방위 사태하에 주민 통제 및 소산			△	"	②	*			"
		20. 민방위 동원			△	"	③			*	동 9조2항단서
		21. 민방위 장비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	민방위기본법	③	*			동 9조2항6의가
		22. 대피시설 관리지도			△	"	③	*			"
		23. 민방위 경보망 시설 및 운영관리			△	"	③	*			"
		24. 주민신고 통신 장비 설치			△	"	③	*			"
		25. 소방력 기준보강 계획			△	소방법시행령	②	*			"
		26. 소방계획의 수립			△	"	③	*			동 9조2항6의나
		27. 소방훈련			△	"	②	*			"
		28. 소방수리시설의 관리			△	"	③	*			"
		29.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			"	③	*			"
		30. " " 복부 및 교육훈련	△			"	②	*			"
		31. 불조심 강조기간의 실시	△			"	③	*			"
		32. 화재특별경계 계획시행	△			"	③	*			"
		33. 소방시설 시공신고 및 완공처리	△			"	③	*			"
		34. 소방시설 보완명령 및 지도감독	△			"	③	*			"
		35. 수압검사(충수)	△			"	③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狀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亞船	機關			固有	亞船	機關	
민방위과	민방위계	36. 위험물 주유취급소 완 공검사	△			"	③	*			동 9조 2항 6의나
		37. " 제조소 등의 허가·폐지	△			"	③	*			"
		38. " " " 위치 구조 등의 변경허가	△			"	③	*			"
		39. 위험물 제조소 등의 양도, 양수신고	△			"	③	*			"
		40. 소방검사 계획수립 및 실시	△			"	③	*			"
		41. 방화관리자의 업무지 도 감독	△			"	③	*			"
		42. " " 선·해임지도	△			"	③	*			"
		43. 건축허가시, 소방법처 측여부 심의협조	△			"	③	*			"
		44. 방역처리지도	△			"	③	*			"
		45. 무허가 위험물 등에 대 한 조치명령	△			"	③	*			"
		46. 화재진압	△			"	③	*			"
		47. 화재발생 보고	△			"	③	*			"
		4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			"	③	*			"
		49. 소방활동	△			"	③	*			"
		50. 소방응원	△			"	③	*			"
		51. 소방장비 유지관리	△			소방법시행령	③	*			"
		52. 율지연습 실시계획 수 립 및 실시		△		"	③		*		동 9조 2항 단서
병부계		1. 제일국민역 편입신고		△			③		*		동 9조 2항 단서
		2. 징병검사대상자 관리		△			③		*		"
		3. " " 통지서 교부 및 결과보고		△		병역법	③		*		"
		4. " " 기일연기원 처리 및 결과보고		△		"	③		*		"
		5. 재학생 질병검사 연기 원 처리 및 결과보고		△		"	③		*		"
		6. 병역수첩 재교부신청 경유진달		△		"	③		*		"
		7. 현역입영명령서 교부 및 결과보고		△		"	③		*		"
		8. " " 기일연기원 경유진달		△		"	③		*		"
		9. " 복무단축원 경유 진달		△		"	③		*		"
		10. 보충역 편입원 경유진달		△		"	③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形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 考
		固有	四捨	五入			固有	四捨	五入	
농 촌 지 도 소 계	1. 일반서무	△			농 업 기 계 화 속 진 법	③	*			동 9조 1항
	2. 영농기술 훈련	△				①	○	↑		동 9조 2항 3의차
	3. 농공기술 훈련	△				①	○	↑		"
	4. 농기계실수요자 현장교육	△				①	○	↑		"
	5. 농기계 순회수리	△				①	○	↑		"
	6. 농업기계 기술공보 및 교육	△				①	○	↑		"
	7. 새마을 영농기술자 육성	△				①	○	↑		"
	8. 명예지도사 운영	△				③	○	↑		"
작 물 계	1. 벼품종 비교전시포 설치 운영	△				①	*			동 9조 2항단서
	2. 벼안전 다수확시험포 설치운영	△				①	*			"
	3. 벼농사 개량보급	△				①	*			"
	4. 병충해 예찰 및 방제 통보	△				①	*			동 9조 2항 3의나
	5. 기본 예찰답 설치운영	△				①	*			"
	6. 수도 관찰포 조사	△				③	*			"
	7. 토양검정	△				③			*	동 9조 2항단서
	8. 농토배양 시범포 설치 및 농토배양 기술지도	△				①			*	"
	9. 시범단지 및 품종비교 전시포 설치운영	△				①			*	동 9조 2항단서
	10. 전작물 증산 기술지도	△				①			*	"
	11. 땅콩재배 기술지도	△				①			*	"
	12. 참깨 "	△				①			*	"
	13. 화훼원예 "	△				①			*	"
주 산 지 계	1. 채소원에 기술지도	△				①			*	동 9조 2항단서
	2. 과수 " "	△				①			*	"
	3. 가축사양 관리지도	△				①			*	"
	4. 자급사료 생산지도	△				①			*	"
	5. 잠업증산 기술지도	△				①			*	"
지 역 개 발 계	1. 새마을 청소년조직 운영지도	△			새마을청소년 학교운영지침	①	○	↑		동 9조 2항 3의가
	2. 농민후계자 육성	△				①	○		↑	"
	3. 농업 산학협동	△				③	○		↑	"
	4. 새마을 소득증대시범 지역 육성	△				①	*			"
	5. 응용 영양사업 지도	△				①			*	동 11 조의 7
	6.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운영	△				①	*			동 9조 2항 3의가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團體	機關			固有	團體	機關	
	7. 가정관리	△				③	*			동 11 조의 7
	8. 실선요원 지도		△			③	*			동 9 조 2 항 3 의가
보건 행정 소	1. 보건사무(예 산, 차량, 문서수발)		△			②	○	↑		동 9 조 2 항 2 의마
	2. 비밀문서수발 통제 및 관리			△		②	○		↑	"
	3. 보건증 발급		△		보사부령 754 호	③	○		↑	동 9 조 2 항 2 의아
	4.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		△		보건소법 6 조 1 항	③	○		↑	동 9 조 2 항 2 의마
	5. 보건진료소 설치		△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 14 조	①	○		↑	"
	6. 보건진료소 운영		△		" " 불 위한 특별조치법	①	○		↑	"
	7.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		" " (23 조)	③	○		↑	"
	8. 보건진료원 위촉		△		" " (16 조)	①	○		↑	"
	9. 보건지소 설치		△		보건지소설치조 례 730 호	①	○		↑	"
	10. 축탁의사 위촉			△	보건지소축탁의 사에 관한 업무 규정	①	○		↑	"
	11. 공중보건의사 근무 시 도감독		△			③	○		↑	동 9 조 2 항 2 의마
	12. 지역체육행사 의료지원		△			①	*			"
	13. 보건교육		△			②	○		↑	동 9 조 2 항 2 의가
	14. 의료진료 실적 및 각종 보고		△			③	○		↑	동 9 조 2 항 2 의마
	15. 국민영양 관리		△			①	○		↑	동 9 조 2 항 2 의가
	16. 일반진료	△			보건소법 4 조 6 항	②	*			동 9 조 2 항 2 의마
	17. X - 선 활 영		△			①	○		↑	"
가족 보건 계	1. 가족계획 이동시술		△			①			*	동 9 조 2 항 단서
	2. 가족계획 실천자		△			①			*	"
	3. 가족보건 사업평가		△			②			*	"
	4. 가족계획 사업 주민계몽		△			①			*	"
	5. 피임약제, 기구보급		△			①			*	"
	6. 불임시술자 지도계몽		△			①			*	"
	7. 수태조절 지도계몽		△			①			*	"
	8. 안전분만 조산 지도계몽		△			①	○		↑	동 9 조 2 항 2 의라
	9. 영·유아 건강관리 지도		△		모자보건법 6 조, 가족보건업무규 정 8 조	①	○		↑	"
	10. " " 등록관리		△		" 모자보건센터운 영에 관한규정	③	○		↑	"

部署別 室課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實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委託	機關			固有	委託	機關	
보 건 소	가족보건계	11. 모성건강관리 지도계몽	△		모자보건법 2조 8항	①	○		↑	동 9조 2항 2의라
	보건의계	12. 모자보건센터 관리운영	△		" , 모자보건센터운영에 관한 규정	③	○		↑	"
		1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상담지도	△		" "	①	○		↑	"
		14. 임신부 산전, 산후관리	△			①	○		↑	"
		15. 견해환자가정 방문지도 확인	△			①	○		↑	동 9조 2항 2의바
		16. " " 등록관리	△			①	○		↑	"
		17. " " 기록표 작성	△			③	○		↑	"
		18. 객담검사	△			①	○		↑	"
		19. 임신부 분만개조	△			①	○		↑	동 9조 2항 2의라
예 방 의 약 계		1. 제 1종 전염병 예방 시설 설치	△			①	○		↑	동 9조 2항 2의바
		2. 법정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			①	○		↑	
		3. 전염병 매개중간 숙주 동물포획 및 생식금지 명령	△			①	○		↑	
		4.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 소독 기타명령	△			①	○		↑	동 9조 2항 2의바
		5.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 동원	△			①	○		↑	"
		6. " 매개물건의 소지, 이동금지	△			①	○		↑	"
		7. 전염병 환자명부 작성 및 발생보고	△			③	○		↑	"
		8. 전염병환자 역학조사	△			①	○		↑	"
		9. 방역소독실시	△		전염병예방법 40조	①	○		↑	"
		10. 소독업 허가	△		"	③	○		↑	"
		11. 음료수 소독	△			①	○		↑	"
		12. 음료수 수질검사	△		음료수수질등에관한규칙 6조	①	○		↑	"
		13. 보건자 색출검사	△			①	○		↑	"
		14. 해외입주자 보건검사	△			①	○		↑	"
		15. 예방접종	△			①	○		↑	"
		16. 예방접종 증명서교부 및 공의	△		전염병예방법 20조	①	○		↑	"
		17. 나병진강진단 및 이동 진료	△		전염병예방법 8조 3항	①	○		↑	"

部 署 別	室 課 係	單 位 事 務 名	事務配分實態			關 係 法 規	再配分 理 由	再 配 分 方 向			備 考
			固有	亞船	機關			固有	亞船	機關	
보 건 의 약 소	예 방 의 약 계	18. 나환자 등록 및 보고		△			③	○		↑	동 9조2항2의바
		19. 부랑나환자 단속 및 관 리(전출입, 사망자 관리)		△		나병관리사업 지침	①	○		↑	"
		20. 기생충 검사용 채변검 사의회		△		기생충질환예 방법 6 조	①	○		↑	"
		21. 기생충환자 등록 및 치료		△			①	○		↑	"
		22. 성병검진 및 감염자 등 복관리		△		전염병예방법 8조2항	③	○		↑	"
		23. 성병 예방지도 계몽		△			②	○		↑	"
		24. 조산소지도의사 신고			△	의료법 30 조	②	○		↑	"
		25. 의료감시원 임용	△			의료법시행령	②	*			"
		26. 비영리의료기관 개설 허가			△	"	③	○		↑	동 9조2항2의마
		27. 의료기술소 개설신고			△	"	③	○		↑	"
		28.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	"	③	○		↑	"
		29. 안마기술소 개설신고			△		③	○		↑	"
		30.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	"	③			*	"
		31. 도서지역 순회 이동진 료		△		농어촌보건의료 특위헌특별조 치법	①	○		↑	동 9조2항2의바
		32. 약국개설등록			△		①	○		↑	동 9조2항2의마
		33. 약업자 행정처분(약 사면허증 반납 등)			△	약사법시행령	③	○		↑	"
		34. 약사지도감독			△	"	③	○		↑	"
		35. 약국제제품목신고			△	"	③	○		↑	"
		36.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갱신			△	약국및의약품 등의판매업설 치기준령	③	○		↑	"
		37. 약사감시원 임명	△		△	"	③	○		↑	"
		38. 대마취급자 허가				마약법시행령	③			*	동 9조2항단서
		39. 대마감시원 임명	△			"	③			*	"
		40. 마약취급자 면허			△	"	③			*	"
		41. 마약사범단속 및 압류			△	"	③			*	"
		42. 마약중독자 지도단속			△	"	③			*	"
		43. 마약감시원 임명			△	"	③			*	"
		44. 독극물 판매업 등록			△	독물및극물에 관한법률시행령	③			*	"
		45. 독극물 판매업 지도단속	△		△	독물및극물에 관한법률시행령	③			*	"
		46.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자 선정			△	약품및의약품 등의판매업설	③			*	"

部署別 室課	係	單位事務名	事務配分狀態			關係法規	再配分 理由	再配分方向			備考
			固有	四股	松關			固有	四股	松關	
보 건 소	예 방 의 약 계	47.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자 지정, 승인, 취소, 업무정지			△	치기준령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시행령	③			*	동 9조2항 단서
		48. 향 정신성 의약품폐 기명령			△	"	③			*	"
		49. " " 취급자 지정 현황보고			△	"	③			*	"
		50.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	"	③			*	"
		51. " " 감시 원 임명			△	"	③			*	"
		52. 의약품 봉합, 봉인, 검인, 수거 폐기			△	"	③			*	"

參 考 文 獻

1. 著 書

- 金雲泰 外, (1983)「韓國政治・行政의 體系」, 博英社.
- _____, (1982)「韓國政治論」, 博英社.
- 朴東緒, (1984)「韓國行政論」, 法文社.
- _____, (1986a)「韓國行政의 未來像」, 法文社.
- _____, 外, (1986b)「發展行政論」, 法文社.
- 孫在植, (1983)「現代地方行政論」, 博英社.
- 李漢彬, (1968)「社會變動과 行政」, 博英社.
- 鄭世煜, (1984)「地方行政學」, 法文社.
- 趙錫俊, (1983)「韓國行政學」, 博英社.
- 崔昌浩, (1983)「韓國地方行政의 再認識」, 三英社.
- 韓國地方行政研究所, (1985)「地方行政 機能分析에 관한 研究」
- 韓垣澤, (1980)「韓國地方行政論」,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 Lagroye, Jacques & Wright, Vincent, (1979) *Local Government in Britain and France*, George Allen & Unwin, London.
- Misra, R.P, (1981) *Rural Development: National Policies and Experiences*, Maruzen Asia.
- Richards, Peter, (1983) *The Local Government System*, George Allen & Unwin.
- Stanyer, Jeffrey, (1980) *Understanding Local Government*, Martin Robertson, Oxford.
- Weitz, Raanan, (1979)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Settlement Study Center, Rehovot.

2. 論文

- 金雲泰，(1976)“地方行政組織의 改革方案”，「地方行政」，6月號
- 申宗淳，(1978)“行政機構 改編과 地方行政 改善에 관한 考察”，
「行政論叢」，東國大學校。
- 安海均，(1983)“日本 行政改革의 最近動向”，「行政論叢（21卷2號）」서울大 行政大學院。
- _____，(1977)“行政需要變動에 따른 地方行政組織의 整備”，「地方行政」，9月號
- _____，(1971)“韓國農村社會 變動과 行政體制에 관한 分析的 研究”
「行政論叢（8卷）」서울大 行政大學院。
- _____，(1982)“行政決定權限의 配分과 委任에 관한 評價”，「行政論叢（20卷1號）」서울大 行政大學院。
- 吳錫泓，(1982)“行政改革의 問題選定 — 우리나라 行政改革의 一般課題—”，「行政論叢（20卷2號）」서울大 行政大學院。
- 鄭世煜，(1985)“2000年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韓國地方行政研究所。
- 崔昌浩，(1985)“2000年代 地方行政組織”，韓國地方行政研究所
- _____，(1977)“韓國에서의 行政需要 變動의 豫測과 그에 따른 地方行政組織 整備의 方向”，「行政研究」建國大學校。

研究報告 128

地方政府의 行政組織 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1986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①③①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회기동 4 - 102

登錄 1979年 5 月 25日 第 5 - 10號

電話 962 - 7311

印 刷 (株) 文 苑 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